

재 고 통 계 조 사 지 침

1 9 7 4

—= 차 레 =—

1. 조사개요	3
가. 조사목적	3
나. 조사의 법적근거	3
다. 조사내용	3
라. 조사대상 및 단위	3
마. 조사시기	6
바. 조사방법	6
2. 실사 및 면접	7
가. 실사	7
나. 면접	9
3. 조사품류 기입요령	11
가. 일반적인 유의사항	11
나. 항목별 기입요령	11
4. 검토 및 제출	16
가. 검토	16
나. 제출	16
부 록	19
재고통계조사 지정 품목 분류	21
도량형 단위 환산표	30
재고통계조사표	35

1. 조 사 개 요

가. 조사목적

이 조사는 국내의 주요물자에 대한 보유량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경기예측, 물가정책 및 물지수급 등의 계획 수립 또는 평가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한다.

나. 조사의 법적근거

이 조사는 통계법(법률 제980호 개정법률제 1215호)에 의하여 지정통계 제 호로 지정된 통계이다.

다. 조사내용

이 조사는 지정된 도매업체(무역업 포함)의 취급상품중 매월 지정된 품목에 대한 구입량, 출하량, 재고량과 종업원수 등을 조사한다.

라. 조사대상 및 단위

1) 조사대상

이 조사의 산업상의 조사범위는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의한 일반도매업 및 무역업이며 조사대상 사업체는 법인 및 종업원 10인 이상의 일반도매업체와 무역업을 영위하는 전사업체이다. 각 조사원이 담당할 조사대상 사업체는 각 조사구별 사업체 명부에 명시되어

있으며 별도 지시에 의하여 보완한다.

※ 산업분류상 도매와 소매업의 구분

가) 도매업

※ 도매업이란 주로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i) 소매업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 ii) 광공업, 운수통신업, 판공서, 학교, 병원 및 기타 산업용 사용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 iii) 광업 제조업 회사가 다른 장소에서 자기제품을 도매하는 경우
※ 제조와 판매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회사나 출장소 등은 관리 또는 주된 산업인 광업 및 제조업으로 분류하므로 도매업에 포함하지 않는다.

iv) 개인 또는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상품매매의 중개나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 도매업에 포함되는 사업체의 중요한 형태는 다음과 같다.

- i) 도매상 : 일반도매상 산업용 배급업 도매를 주로 하는 상
사회사·광공업회사의 도매사업소
- ii) 하청제조도매상 : 스스로는 상품을 만들지 않고 자기 소유의 원재료를 하청공장등에 지급해서 제품을 만들게 한후 이를 자기 명의로 도매하는 사업체
- iii) (대리상, 중개상) : 주로 수수료를 받고 상품매매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는 사업체

※ 그러나 대리점의 명칭을 가지고 실제로 상품의 대리업무는 하지 않고 별개의 경영으로 도매 또는 소매를 하는 경우는 일반도매업 또는 소매업으로 취급한다.

iv) 무역상 무역중개상 (오파상) :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을 사업으로 하는 경우와 중개를 사업으로 하는 경우

나) 소매업

소매업은 주로 개인용 가정용 소비를 위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조사단위

조사의 단위는 개개의 사업체 (점포) 이다. 여기서 사업체란 **「상품의 매매가 영업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개개의 물리적 장소」**를 말하며 하나의 구획을 차지하고 있는 장소이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별도로 취급한다.

가) 동일구내에 둘 이상의 사업체가 있을 때에는 경영주가 같은 사람인 경우는 하나의 단위로 취급하지만 경영주가 다르면 별개의 사업체로 취급한다. 여기서 동일구내라 함은 일반적으로 유타리 같은 것을 가진 장소로 관계자 이외에는 자유로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장소를 말한다.

동일구내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임금 및 경영장부가 같은 경우에만 하나의 사업체로 본다.

나) 가까운 거리의 두개 이상의 장소에서 경영을 하고 있을지라도 임금이나 경영장부가 같은 경우는 하나의 사업체로 본다.

이때 가까운 거리란 나란히 있거나 길 건너 마주보고 있는 것과 같은 극히 좁은 범위로 한정한다.

마. 조사시기

조사의 기준 시점은 매월 말이며 조사의 기준기간은 그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1개월로 한다.

바. 조사방법

면접식 타계주의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사업체는 우편 조사한다.

2. 실 사 및 면 접

가. 실사

1) 조사원은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개개의 사업체에 대하여 항상 그 위치를 비롯하여 사업체의 업종에 대한 특성, 동향 및 증업원수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주 및 경리책 입자와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사에 임해야 한다.

2) 조사원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담당 조사구내의 지정사업체를 순방하여 조사표의 기입을 완료하도록 할 것이며 응답자의 부재등 제사유로 인하여 조사표를 작성치 못하였거나 조사표 기입상에 잘못이 발견된 사업체는 10~12일까지 사이에 재 방문하여 조사표의 작성을 완료토록 한다.

3) 조사원은 별도 배부된 「조사기록부」에 다음 조사를 위하여 참고가 될 사항을 기록하여 두어야 하며 이 조사 기록부와 기타 사항을 참고로 하여 조사의 누락이나 오기 또는 잘못된 조사가 없이 조사표가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4) 관할 구역내에 신규사업체 및 사업체 이동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다음 요령에 의거 반드시 명시함과 아울러 별도의 「변동사항 보고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가) 응답불응 사업체

조사대상 사업체가 비협조적이거나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는 조사의 목적과 자료의 효율성을 이해시키고 비밀이 보장되는 점을 강조하여 계속 상대방의 협조를 촉구하여야 하며 2, 3

차 방문시에도 불응할 경우는 지도원을 경유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불확실한 신고를 하는 사업체

사업주나 대리인이 불확실한 신고를 하거나 허위신고를 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업체의 규모나 종업원수, 업종 및 전월사항을 참고하여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다) 폐업·전업·휴업 사업체

폐업 사업체에 대하여는 관할동장 및 지도원확인서를 첨부 보고하고 휴업인 경우에는 별도 지시가 없는한 계속 조사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라) 이전 사업체

조사대상 사업체가 이전하였을 경우에는 이웃이나 동사무소에 문의하는등 최선의 방법에 의하여 그 이전지를 찾아내도록 하여 하며 조사표 상에는 새로 이전된 곳의 소재지 전화번호등 모든 변경사항을 기입하고 적요란에 「이전」이라 표시한다.

- i) 담당조사구 내로 이전된 경우에는 계속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 ii) 자기가 담당하는 조사구 외로 사업체가 이전하였을 경우에는 효달에 한하여 조사표를 작성 제출한다.

마) 명칭변경사업체

조사대상사업체가 명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조사표상에 변경후 명칭을 기입하고 적요란에는 「명칭변경」이라 표시하여 제출할 것이며 사업체 명부도 변경된 내용을 수정 보완한다.

바) 신규사업체

i) 선택대상 사업체

관할 조사구내에 조사대상 사업체 명부에 누락된 법인 도매업체나 종업원 10인 이상의 도매업체 또는 무역업체가 발견될 시에는 「신규사업체 선택 보고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ii) 추가대상 사업체

추가대상 사업체에 대한 실사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사업체를 조사대상 사업체 명부에 추가하여 매월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대상 사업체 카-드 2매를 작성하여 1대는 지도원에게 1대는 중앙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면 접

본 조사는 사업체의 비밀 사항인 월중판매량, 구입량, 월말 재고량등을 조사하게 되므로 사업주의 협조를 얻기가 어려워 조사상 애로가 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조사대상처를 방문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특히 유의하여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 1) 조사원은 대상 사업체를 방문하여 사업주 또는 실무자와의 면담을 요청할 때에는 단정한 용모와 품행을 유지하고 응답자에게 좋은 인상을 주도록 해야 하며 정중한 태도로 자기 소개를 먼저 한 다음에 조사원증을 제시한다.
- 2) 인사가 끝나면 조사표를 제시하고 조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동시에 본 조사는 지정통계로서 통계법에 의하여 대상 사업

체는 신고의무가 있으며 비밀이 엄수된다는 것을 잘 설명하여야 한다.

- 3) 조사내용은 각 사업체 및 개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므로 방문객이나 손님이 있을 때는 그 자리에서 질문하여도 좋은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 4) 조사표에 기입된 내용 이외의 질문을 하거나 응답이 애매한 경우 유도질문을 해서는 안된다.
- 5) 조사내용은 타업체와 이해 관계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비밀을 타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3. 조사표류 기입요령

가. 일반적인 유의사항

지정된 품목이 계절에 따라 취급실적이 없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품목번호, 품목명 단위는 매월 보고한다. 단 사업체에서 앞으로 취급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경우 그 내용을 자세히 보고하여 조사중지를 받을 수 있다.

나. 항목별 기입요령

1) 사업체명 및 소재지

가) 사업체 명이라 함은 사업체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말하며 이는 사업체의 구체적인 명칭을 기입한다.

나) 일정한 사업체 명칭이 없을 때는 대표자(또는 사업주)의 성명만을 기입한다.

다) 사업체의 소재지는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실제 장소를 말하며 시도의 명칭부터 번지수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기입한다.

라) 사업체명 및 대표자 명은 정자로 된 한자를 기입하여야 한다.

마) 전화번호란을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며 누락시켜서는 안된다.

2) 조사구 및 사업체 번호

담당 사업체 명부에 부여된 조사구 번호와 사업체 번호를 별도로 지시가 없는한 고정시켜 기입한다.

3) 품목번호 및 품목명

가) 품목번호란에는 # 지정품목분류표 # 좌측에 있는 숫자를 기입한다.

4) 규격 및 단위

각 품목의 규격은 지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품목의 규격을 그대로 적으면 된다. 그러나 동일 명칭의 품목이라도 규격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는것은 규격별로 구분하여 기입하고 여러가지 규격품을 단일규격으로 환산 가능할 때에는 단일규격으로 환산하여 기입한다. 각 품목의 단위는 # 지정 품목분류표 # 에 지정된 단위를 사용하여 그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단위와 상이할 때는 지정된 단위로 환산하여 기입한다.

5) 월초 재고량 (전월말 재고량)

그달의 초일에 사업체에서 보유하였던 상품의 재고량 즉 전월에서 이월된 재고량을 말한다. 따라서 전월에 조사보고된 조사표상의 월말재고량과 금월의 월초 재고량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6) 월중 수(受)입량

그달중에 외부로 부터 현금 또는 외상으로 구입한 양을 말하며 무역업의 경우 수입품은 수입량을 말한다.

7) 출하량 (판매량등)

그달중에 실제로 그 사업체의 현물관리를 떠난 부분의 총량을

말한다.

즉 가) 외부에 판매한것 (외상판매포함)

나) 전본 또는 선물로서 증정한것

다) 그 사업체에서 사무용 또는 급여용으로 출고한것

라) 수출한것

등의 합계량을 말한다. 따라서 월말까지 출하하기로 계약된 경우라도 상품이 인도(출고)되지 않았으면 출하로 보지 않는다.

8) 과부족 보정량

그달중에 화재, 도난등의 재난에 의하여 결손 처분된 량을 말하며 판매한 제품중 반송등에 의하여 발생한 증감량도 이에 포함된다.

증감은 「+」와 「-」의 부호로 표시하며 적요란에 반드시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9) 월말재고량

본 월말 재고량은 재고 통계조사의 핵심 조사 항목이므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월말 재고량이란 그달의 말일에 그 사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체의 상품보유량을 말하며 여기에는 이미 판매되었으나 미출고된 부분도 포함된다.

따라서 자기소유 상품이던 타인소유 수탁품 미출고분등 상품이 상품대장(또는 물품대장 현품매장등)에 기재된 일체의 상품을 포함하며 대장이 없는 업체는 현물재고 위주로 파악한다.

한편 상품을 자기창고 이외의 타인창고(영업창고등)에 보관하고 있을 때에도 이를 전부 포함시켜야 한다.

단, 조사일기준 현재 수송도중에 있는것은 도착지에서 파악하고 수입의 경우만은 현물 도착후에 재고를 파악한다.

10) 구분란

제품이나 원재료를 박론하고 재고불자의 전조사품목은 동일품목이라 하더라도 국산과 수입품이 각각 별도로 있을 때에는 이를 별남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국산수입의 해당란에 「0」으로 표시한다.

11) 종업원

가 :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

■ 자영업주 ■란 사업체의 주인으로서 급여를 받지 않으면서 실제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 무급가족종사자 ■란 자영업주와 가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업체의 업무에 무급으로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주당 24시간 이상 종사한 자에 한함)

나 : 상용고용원

■ 상용고용원 ■이라 함은 일정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정 급여를 지급받고 고용된 자를 말하며 아래의 경우도 포함한다.

i) 법인 사업체에서 일정한 급여를 받는役員(예: 사장, 이사, 감사등)

그러나 이익 배당만 받는 주주는 제외한다.

ii) 자영 업주의 가족으로 일정한 급여를 받는자

iii) 일정 급여 또는 판매 수수료를 받는 의무사원 판매원 및 배달원

다) 임시고용원

※ 임시고용원이라 함은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급여를 받고 임시 또는 일일로 고용된 자를 말한다.

12) 적요란

가) 상품 재고량이 전월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증가 또는 감소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증감요인을 밝혀 기입하여야 한다.

나) 휴업, 폐업, 이전, 소재 불명등의 유고내용을 자세히 기입한다.

4. 검토 및 제출

가. 검토

접수된 조사표가 질의 조회나 재조사 지시를 받지 않도록 반드시 다음 내용을 철저히 검토한후 제출하여야 한다.

- 1) 조사 기준일 (년 월분) 조사구 및 사업체 번호등의 기입 누락여부
- 2) 품목명 및 품목번호가 『 지정 품목 분류표 』 에 지정된 대로 기입 되었나와 사업체별 지정상품 누락여부
- 3) 전월말 재고 (이미 제출된 조사표에 기재된것) 와 금월초 재고의 일치여부
- 4) 「 월초재고량 + 월중수입량 - 출하량 = 월말재고량 」 의 성립여부
- 5) 조사된 숫자의 증감이 전월과 비교하여 심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적요란에 기입하여야 한다.
- 6) 기타 기입 사항의 옳기 또는 누락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제출

- 1) 매 실사월의 조사표를 제출함에 있어서는 조사표 작성이 완료되는대로 5매 내지 10매씩 분할하여 제출하되 늦어도 그달의 15일까지는 담당조사표 전부가 지도원에게 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 2) 지도원은 이를 접수되는 대로 일괄 취합하여 중앙에 송부하되

담당구내 조사표 전부를 20일까지 중앙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기타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조사표 제출이 늦어지던 지역 사유서를 조사원은 지도원에게 지도원은 중앙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고통계 조사 지정품목 분류표 (유통부문)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611	일 반 도 매		6114401	식 빵	kg
6111	농 산 물		6114402	건 빵	"
6111101	소 맥	kg	6114403	비 스 켓 트	"
6111102	매 맥	"	6114404	라 면	"
6111103	옥 수 수	"	6114405	설 탕 과 자	"
6111104	콩	"	6114406	겉	"
6111901	교 구 마	"	6114901	분 유 및 연 유	"
6112	축 산 물		6114902	생 우 우	"
6112201	원 피	m ²	6114903	물고기및해산물 동 조 립 물	"
6113	수 산 물		6114904	냉 동 해 산 물	"
6113001	어 개 류	kg	6114905	마 아 가 린	"
6114	식 료 품		6114906	엿(물엿포함)	"
6114101	원 당	kg	6114907	식 용 포 도 당	"
6114102	설 탕	"	6114908	이 스 트	"
6114201	밀 가 루	포대(22kg입)	6114909	사 료	"
6114202	전 분	kg	6114910	우 지	"
6114301	정 제 염	"	6115	음 료 품	
6114302	된 장	"	6115101	주 정	kl
6114303	간 장	kl	6115102	소 주	"
6114304	구루타민산소다	kg	6115103	맥 주	"
6114305	인 공 감 미 료	"	6115104	청주(합성청주 포함)	"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6115105	누룩 (꼭자)	kg	6117008	B . T . X	kg
6115106	엿기름 (백아)	"	6117009	호 로 말 린	kg
6115201	사 이 다	kg	6117010	염 료	"
6115202	콜 라	"	6117011	카 바 이 트	"
6116	화 장 품		6117012	요 소 비 료	"
6116201	화 장 비 누	kg	6117013	석회질소비료	"
6116202	세 탁 비 누	"	6117014	용 성 인 비	"
6116203	세탁용합성세제	"	6117015	복 합 비 료	"
6116204	향 료	"	6117016	살 충 제	"
6116205	화 장 수	"	6117017	살 균 제	"
6116206	화 장 크 림	"	6117018	요 소 수 지	"
6116207	화 장 백 분	"	6117019	P . V . C	"
6116208	머 릿 기 림	"	6117020	페 인 트	ℓ
6116209	연차약 및 치분	"	6117021	와 니 스	"
6117	화 학 제 품		6117022	에 나 멜	"
6117001	황 산 (유산 98% 환산)	kg	6117023	락 카	"
6117002	염 소 (35% 환산)	"	6117024	그 리 세 린	kg
6117003	가 성 소 다 (100% 환산)	"	6117025	다이 나 마이트	"
6117004	소 다 회	"	6117026	도 화 선	m
6117005	암 모 니 아	"	6117027	뇌 판	개
6117006	암 추 산 소	kg	6117028	무 연 화 약	kg
6117007	아세틸렌가스	kg	6117029	양 초	갑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6117030	성냥 (대형)	갑	6118117	화학 섬유연사	kg
6117031	카 본 불 력	kg	6118201	면 직 물	m'
6117032	활 성 탄 소	"	6118202	순 본 견 직 물	"
6117033	인 쇄 용 잉 크	"	6118203	견 혼 방 직 물	"
6118	섬 유 품		6118204	순 소 방 직 물	"
6118101	월 면	kg	6118205	순 방 모 직 물	"
6118102	월 모	"	6118206	모 혼 방 직 물	"
6118103	면 사	"	6118207	재 생 섬유직물	"
6118104	순 소 모 사	"	6118208	순합성섬유직물	"
6118105	순 방 모 사	"	6118209	혼합합성섬유직물	"
6118106	혼 방 소 모 사	"	6118210	르 오 프	kg
6118107	아 마 사	"	6118211	어 망	"
6118108	나 이 론 사	"	6118212	갈 포 벽 지	m'
6118109	포 리 에스 텔 사	"	6119	신, 가방, 의복 및 장 식 품	
6118110	아 크 리 렉 사	"	6119101	남자용 가죽신	족
6118111	재 생 섬유방직사 (스포츠사및비스 코스인 견사포함)	"	6119102	여자용 가죽신	"
6118112	아 세 테 이 트 사	"	6119103	군화및가죽장파	"
6118113	혼합합성섬유방직사	"	6119104	고 무 신	"
6118114	생 사	"	6119105	고무장화및우화	"
6118115	견 방 사	"	6119106	운 동 파	"
6118116	어 망 사	"	6119201	비닐제 트렁크 (가죽제 포함)	개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6119202	핸 드 펍	"	6120301	중 광 석	%
6119301	베 리 야 스 외 의	대	6120302	중 석 광 석	S/T
6119401	철 계 우 산 및 약 산	개	6120303	금 광 석	kg
6119501	모 포	대	6120304	은 광 석	"
6119901	타 울	"	6120305	농 광 석	%
6119902	화 첨 사 약 말	족	6120306	연 광 석	"
6120	광 불 재 료		6120307	아 연 광 석	"
6120101	원 유	kg	6120308	모 리 브 레 님 광 석	kg
6120102	취 발 유	"	6120309	선 철	%
6120103	항 공 유	"	6120310	강 피	"
6120104	경 유	"	6120311	강 반 성 품	"
6120105	중 유	"	6120312	형 강	"
6120106	방 카 C 유	"	6120313	봉 강 (철 근)	"
6120107	등 유	"	6120314	선 재	"
6120108	윤 활 유	"	6120315	강 관	"
6120109	진 공 탐 저 유	"	6120316	강 관	"
6120110	액 화 석 유 개 스 (L. P. G)	"	6120317	주 철 관	"
6120111	나 프 사	"	6120318	가 단 주 철	"
6120112	아 스 팔 트	kg	6120319	기 계 용 주 물	"
6120113	루 핑 지	"	6120320	아 연 도 철 판	"
6120201	무 연 탄	%	6120321	석 도 철 판	"
6120202	각 중 연 탄	"	6120322	금 피	g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6120323	은 피	g	6121003	발 동 기	대
6120324	전 기 동	kg	6121004	티 켈 기 관 (선박 및 차 량 용제외)	"
6120325	연 피	"	6121005	보 일 러 (가정용제외)	"
6120326	아 연 피	"	6121006	인 력 탈 곡 기	"
6120327	구 리 환 및 관	"	6121007	동 력 탈 곡 기	"
6120328	알 미 늄 판	"	6121008	분 부 기	"
6120329	알미늄주물제품	"	6121009	경 운 기	"
6120401	석 회 석	%	6121010	선 반	"
6120402	교 령 토	"	6121011	압 출 기	"
6120403	납 석	"	6121012	프 레 스 기	"
6120404	인 상 흑 연	"	6121013	압 연 기 롤	kg
6120405	토 상 흑 연	"	6121014	절 삭 공 구	개
6120406	활 석 광 석	"	6121015	연 사 기	대
6120407	형 석 광 석	"	6121016	면 직 기	"
6120408	석 면	kg	6121017	견 직 기	"
6120409	유 황	"	6121018	환 편 직 기	"
6120410	석 고	"	6121019	형 편 직 기	"
6120411	인 광 석	"	6121020	종 광	개
6121	일반기계기구		6121021	샷 틀	대
6121001	공장용수공구	개	6121022	정 미 기	"
6121002	농 기 구 (경작용도구)	"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6121023	점 맥 기	대	6122012	자전거용타이어	본
6121024	팔 관인 쇠 기	#	6122013	재 생 타 이 어	#
6121025	연 탄 제 조 기	#	6123	정 밀 기 계 기 구	
6121026	동 력 펌 프 (양수기)	#	6123001	안 경 테	개
6121027	공 기 압 축 기	#	6123002	손 목 시 제	#
6121028	재 봉 틀	개	6123003	벽시계 (패종)	#
6121029	발 브	#	6123004	손목시계케이스	#
6121030	배 아 링	kg	6124	전기·통신계기구	
6121031	방 열 기	매	6124001	전 동 기	HP
6121032	식 유 스토브	개	6124002	변 압 기	KVA
6122	수송용기계기구		6124003	고 압 축 전 기	#
6122001	버 스	대	6124004	저 압 축 전 기	MP
6122002	승 용 차	#	6124005	정 류 기	대
6122003	트 렉	#	6124006	라되 오수 선기	#
6122004	삼 륙 화 륙 차	#	6124007	T·V 수상 기	#
6122005	자 동 차 엔진	#	6124008	브 라 운 판	개
6122006	자 동 차 용 스프링	개	6124009	녹 음 기	대
6122007	자 동 차 용 피스톤	#	6124010	레 코 드 판	매
6122008	자 전 거	대	6124011	전 화 기	대
6122009	모 터 싸 이 클	#	6124012	트 랜 지 스테	개
6122010	자 동 차 용 타이어	본	6124013	화 성 기	#
6122011	자 동 차 용 류 - 브	#	6124014	콘 벨트계 (전력용제외)	개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6124015	저항기(통신용)	개	6125008	판 유 리	상자
6124016	전 기 냉 장 고	대	6125009	벽돌(소성품)	대
6124017	선 풍 기	#	6125010	타 일	m²
6124018	적 산 전 력 제	#	6125011	내 화 벽 돌	%
6124019	에 어 콘 디 쇼 어	#	6125012	소 석 회	#
6124020	합성수지절연전선	kg	6125013	콘크리트전주	본
6124021	통신 및 전력 용 케이블	#	6125014	흙 관	#
6124022	백 열 전 구	개	6125015	콘크리트벽돌	대
6124023	형 광 전 구	#	6125016	콘크리트블럭	#
6124024	축 전 지	#	6125017	콘크리트기와	#
6124025	건 전 지	#	6125018	콘 크 리 트 판	본
6124026	소 키 트	#	6125019	석면슬레이트	m²
6124027	고 압 애 자	#	6126	가구철구및집기	
6124028	저 압 애 자	#	6126001	장농(찬장포함)	개
6125	건 축 재 료		6126002	경 네	#
6125001	원 목	m³	6126003	목 제 책 상	#
6125002	각 재	#	6126004	목 제 식 상	#
6125003	판 재	#	6126005	목 제 의 자	#
6125004	합 판	#	6126006	장 지 문	#
6125005	하 드 보 오 드	#	6126007	철 제 책 상	#
6125006	포트랜드시멘트	%	6126008	철 제 의 자	#
6125007	백 시 멘 트	#	6126009	철제케미네트	#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6126010	알루미늄 프레스 가공식기 및 용기	kg	6127015	은 박 지	kg
6126011	스테인레스틸식기	"	6128	철 물	
6126012	도 자 식 기	개	6128001	긴 축 용 샷 슈	개, kg
6126013	유 리 술 병	"	6128002	철 계수문 및 문	개
6126014	유 리 식 기	"	6128003	드 림 관	"
6126015	유 리 약 병	"	6128004	통 조 림 관	"
6126016	플라 스틱 제품	kg	6128005	혹 철 선	kg
6127	종이 및 종이 제품		6128006	나 동 선	"
6127001	필 포	kg	6128007	쇠 붓	"
6127002	신 둔 용 지	"	6128008	와 이어 로 오프	"
6127003	백 상 지	"	6128009	철사망(철사그물)	"
6127004	입해용지 및 필기 지	"	6128010	용 접 봉	"
6127005	크라프트지	"	6128011	알트 및 낫트	"
6127006	아 트 지	"	6128012	금속관이음쇠	"
6127007	박 엽 지	"	6128013	작크(지퍼)	"
6127008	권 연 지	"	6128014	금 교	개
6127009	판 지	"	6128015	라 이 타	"
6127010	플 판 지 권 지	"	6129	기타 일반도매업	
6127011	창 호 지	권	6129001	연 필	타
6127012	장 판 지	(2,000매) m'	6129002	불 펜	타
6127013	크라프트지내	매	6129003	만 연 필	"
6127014	플 판 지 상자	개, m'	6129004	교과서 및 서적	권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6129005	잡지및잡기간행물	권			
6129006	피 아 노	대			
6129007	올 겐	"			
6129008	나전질가공예제품	개			
6129009	경 른 모	kg			
6129010	가 발	개			
6129011	인 조 눈 섭	"			
6129012	인 형	"			
6129013	생 교 무	kg			
6129014	각종 고무 벨트	PLY			
6129015	고 무 호 오 스	m			
6129016	스 폰 지	m ²			
6129017	기계용가죽벨트	m/PLY			
6129018	철 타	kg			

4. 도량형 단위 환산표

길이

	척 (尺)	정 (町)	리 (里)	미 (米) (m)	촌 (寸) (in)	척 (呎) (ft)	마 (碼) (yds)	리 (哩)
척	1	0.00277	0.000077	0.30303	11.9305	0.994211	0.331403	0.000188
정	360	1	0.027777	109.09	4,294.99	357.916	119.306	0.067784
리	12,960	36	1	3,927.27	154,619	12,884.9	4,394.99	2.44033
미 (m)	3.3	0.009166	0.000254	1	39.3707	3.28089	1.09363	0.000621
촌 (in)	0.083818	0.00032	0.000006	0.025399	1	0.08333	0.27777	0.000015
피트 (ft)	1.00582	0.002793	0.00007	0.304974	12	1	0.33333	0.000189
마 (yds)	3.01746	0.008381	0.000232	0.914383	36	3	1	0.000568
리	5,310.73	14.752	0.409.779	1,609.31	63,360	5,280	1,760	1

중량

	톤 (噸)	관 (貫)	근 (斤)	그램 (g)	온스 (oz)	파운드 (lbs)	톤 (噸)	관 (貫)	근 (斤)
톤	1	0.001	0.00625	3.75	0.132277	0.008267	0.000003	0.000004	0.000004
관	1,000	1	6.25	3,750	132.277	8.26732	0.00369	0.004133	0.004133
근	160	0.16	1	600	21.1641	1.32277	0.00059	0.000661	0.000661
그램 (g)	0.266666	0.000266	0.001666	1	0.035273	0.002204	0.000009	0.000001	0.000001
온스 (oz)	7.55984	0.007559	0.047249	28.3495	1	0.0625	0.000027	0.000031	0.000031
파운드 (lbs)	120,958	0.120958	0.755988	453,592	16	1	0.000446	0.0005	0.0005
톤 (영)	270,946	307,946	1,693.41	1,016,047	35,840	2,240	1	1.12	1.12
톤 (미)	241,916	241,916	1,511.97	907,178	32,000	2,000	0.892857	1	1

용 적

	홉(合)	상(升)	두(斗)	석(石)	입방미(坪)	리터(ℓ)	계용(頃)	개롱(回)
홉	1	0.1	1.01	0.001	0.00018	0.12039	0.039682	0.047656
승	10	1	0.1	0.01	0.001803	1.8039	0.396185	0.476567
두	100	10	1	0.1	0.018039	18.039	3.96815	4.76567
석	1,000	100	10	1	0.18039	180.39	39.6815	47.6567
입방미(坪)	5,543.52	554.352	55.4352	5.54352	1	1,000	219.979	264.1866
리터(ℓ)	5,543.52	0.55435	0.05543	0.005543	0.001	1	0.219975	0.264186
개롱(頃)	25.2006	2.52006	0.252006	0.0252	0.004545	4.54596	1	1.201
개롱(回)	20.9833	2.09833	0.209833	0.209833	0.003785	3.78543	0.832699	1

가. 주요단위해설

1) Ppm : 용액중의 물질함량을 표시할 때 중량 백만분율을 표시하는 약호이다.

2) d (테니어, Denier) : 450 m의 장사(長絲)로 0.05 g이면 1 테니어임.

3) 'S (번수, 番數) : 장사 1파운드의 길이 즉 4,436,889야드를 전환인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됨.

$$(1) 4,436,889 / (\text{테니어} \times 840) = \text{면사 번수}$$

$$\therefore \text{테니어} = 5282 / \text{면사 번수}$$

(840야드는 I'S 면사의 길이)

$$(2) 4,436,889 / (\text{테니어} \times 560) = \text{소모사 번수}$$

$$\therefore \text{테니어} = 7,923 / \text{소모사 번수}$$

(560야드는 I'S 소모사의 길이)

$$(3) 4,436,889 / (\text{테니어} \times 256) = \text{방모사 번수}$$

$$\therefore \text{테니어} = 17,331.6 / \text{방모사 번수}$$

(256야드는 I'S 방모사의 길이)

소모사는 영국식으로는 560야드 1파운드의 것을 1번수라

함.

예컨대 32번수 단사(單絲)의 경우는 1/32'S, 쌍사(雙絲)

의 경우는 2/32'S로 됨.

4) 추(錘) : 조방기(組紡機), 정방기(精紡機), 연사기(攪絲機) 등 스핀들을 사용하는 기계의 양을 나타냄.

면방 # 링 # 정방기는 1일 16시간 가동으로 20번수를 0.5파

윤드정도 생산하는 능력을 가진, 소모율, 정방기로는 48 번수를
0.4파운드로 생산함.

5) 배수톤 (排水屯) : 배의 수면 밑의 체적과 동일한 체적을 가진
물의 중량 바닷물일 때는 $35f^3$ 민물일 때는 $36f^3$ 가 1 배수양
톤 균함의 크기를 표시하는데 사용된다.

6) D/W (Dead weight) : 화물을 만재한 상태에서 선박 자체의 무게
를 빼 중량 2,240 파운드를 1 중량톤으로 한다.

7) G/T (Gross Tonnage) : 배의 용적을 표시하는 단위로 선목 ×
길이 × 높이 의 f^3 1,000 f^3 를 1 G/T으로 한다.

8) 노트 (Knot) : 배가 1 시간에 1해리 (1,853 m)를 달리는 속력

9) S/P $\frac{1}{8}$ (Square Feet $\frac{1}{8}$ inch) : 갑판의 체적을 나타내는 단위로
서 F feet × I feet $\frac{1}{8}$ 인치의 체적을 말한다. 이를 m^3 로 환산하
면 $0.3048 m \times 0.3048 m \times 0.0254 m \times \frac{1}{8} = 0.00027 m^3$ 이다.

[주] 1. 1 세..... 1 치 × 1 치 × 12 자

2. 1 석..... 180 L

3. 1 근..... 1.3 lbs

4. 1 관..... 8.27 #

5. 1 인..... 400 #

6. 1 평..... 3.3 m^2

7. 1 평..... 1.5 평 방척

8. 목재..... 3 분판 1 평은 9 세

4 분판 # 12 세

5 분판 # 15 세

(재고통계조사 서식 4호)

재고통계조사

신규대상사업체 보고서

(1977 년 월분)

조사번호 ()
 보고서 ㉑

재고통계과장 귀하

사업 체명	대표 자명	소재지	전화 번호	조직형태		영업형태			종업원수	주요취급품목			영업 개시 년월일	비고
				법인	개인	일관	무역	자영업		상용	임시	계		

재고 통계 조사 지침

1975

— ≡ 차 레 ≡ —

1 . 조사개요.....	3
가 . 조사목적.....	3
나 . 조사내용.....	3
다 . 조사대상 및 단위.....	3
라 . 조사시기.....	6
마 . 조사방법.....	6
2 . 실사 및 면접.....	7
가 . 실사.....	7
나 . 면접.....	9
3 . 조사표류 기입요령.....	11
가 . 일반적인 유의사항.....	11
나 . 항목별 기입요령.....	11
4 . 검토 및 제출.....	15
가 . 검토.....	15
나 . 제출.....	15
부 록.....	17
1 . 문제점 및 유의사항.....	19
2 . 재고 통계조사 지정품목 분류표.....	35
3 . 도량형 환산표.....	42

1. 조사 개요

가. 조사 목적

이 조사는 국내의 주요 물자에 대한 보유량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경기 예측, 물가정책 및 물자수급 등의 계획 수립 또는 평가 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한다.

나. 조사의 법적 근거

이 조사는 통계법 (법률 제 980 호 개정 법률 제 1215 호)에 의하여 지정통계 제 26 호로 지정된 통계이다.

다. 조사 내용

이 조사는 지정된 도매업체의 취급 상품 중 매월 지정된 품목에 대한 구입량, 출하량, 재고량과 증업원 수 등을 조사한다.

라. 조사대상 및 단위

1) 조사 대상

이 조사의 산업상의 조사 범위는 한국 표준 산업분류에 의한 일반 도매업이며 조사 대상 사업체는 일반 도매업체 중에서 지정된 사업체이다.

각 조사원이 담당할 조사 대상 사업체는 각 조사구별 사업체 명부에 명시되어 있으며 별도 지시에 의하여 보완한다.

※ 산업 분류상 도매와 소매업의 구분

가) 도매업

* 도매업이란 주로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1) 소매업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ii) 광공업, 운수통신업, 관공서, 학교, 병원 및 기타 산업용 사용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iii) 광업 및 제조업체가 다른 장소에서 자기제품을 도매하는 경우

※ 제조와 판매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회사나 출장소 등은 관리 또는 주된 산업인 광업 및 제조업으로 분류하므로 도매업에 포함하지 않는다.

TV) 개인 또는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상품매매의 중개나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단 본 조사에서는 제외됨)

* 도매업에 포함되는 사업체의 중요한 형태는 다음과 같다.

i) 도매상: 일반도매상, 산업용배급업, 도매를 주로하는 상사회사, 광공업회사의 도매사업소

ii) 하청제조도매상: 스스로는 상품을 만들지 않고 자기 소유의 원재료를 하청공장등에 지급해서 제품을 만들게 한 후 이를 자기 명의로 도매하는 사업체

iii) 대리상, 중개상: 주로 수수료를 받고 상품매매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는 사업체(단 본 조사에서는 제외됨)

※그러나 대리점의 명칭을 가지고 실제로는 상품의 대리업부는 하지 않고 별개의 경영으로 도매를 하는 경우는 일반도매업으로 취급한다.

V) 무역상, 무역중개상(오파상):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을 사업으로 하는 경우와 중개를 사업으로 하는 경우(단

본 조사에서는 제외됨)

나) 소매업
소매업은 주로 개인용 가정용 소비를 위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조사단위

조사의 단위는 개개의 사업체(점포)이다. 여기서 사업체란 「상품의 매매가 영업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개개의 물리적 장소」를 말하며 하나의 구획을 차지하고 있는 장소이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별도로 취급한다.

가) 동일구내에 둘 이상의 사업체가 있을 때에는 경영주가 같은 사람인 경우는 하나의 단위로 취급하지만 경영주가 다르면 별개의 사업체로 취급한다. 여기서 동일구내라 함은 일반적으로 울타리 같은 것을 가진 장소로 관계자 이외에는 자유로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장소를 말한다.

동일구내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임금 및 경영장부가 같은 경우에만 하나의 사업체로 본다.

나) 가까운 거리의 두개 이상의 장소에서 경영을 하고 있을지라도 임금이나 경영장부가 같은 경우는 하나의 사업체로 본다.

이때 가까운 거리란 나란히 있거나 길 건너 마주보고 있는 것과 같은 극히 좁은 범위로 한정한다.

마. 조사시기

조사의 기준 시점은 매월 말이며 조사의 기준기간은 그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1개월로 한다.

바. 조사방법

면접식 타계주의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사업체는 우편 조사한다.

2. 실 사 및 면 접

가. 실사

1) 조사원은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개개의 사업체에 대하여 항상 그 위치를 비롯하여 사업체의 업종에 대한 특성, 동향 및 종업원수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주 및 판매책임자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조사에 임해야 한다.

2) 조사원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담당조사구내의 지정사업체를 순방하여 조사표의 기입을 완료하도록 할 것이며 응답자의 부재 등 제 사유로 인하여 조사표를 작성치 못하였거나 조사표 기입상에 잘못이 발견된 사업체는 10~12일까지 사이에 재 방문하여 조사표의 작성을 완료토록 한다.

3) 조사원은 별도 배부된 [조사기록부]에 다음 조사를 위하여 참고가 될 사항을 기록하여 두어야 하며 이 조사 기록부와 기타 사항을 참고로 하여 조사의 누락이나 오기 또는 잘못된 조사가 없이 조사표가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4) 관할 구역내에 신규사업체 및 사업체 이동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다음 요령에 의거 반드시 조사표 적요란에 명시함과 아울러 별도의 「변동사항 보고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가) 응답불응 사업체

조사대상 사업체가 반 협조적이거나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는 조사의

목적과 자료의 효율성을 이해시키고 비밀이 보장되는 점을 강조하여 계속 상대방의 협조를 촉구하여야 하며 2, 3차 방문시에도 불응할 경우는 지도원을 경유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불확실한 신고를 하는 사업체

사업주나 대리인이 불확실한 신고를 하거나 허위 신고를 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업체의 규모나 종업원수, 업종 및 전월사항을 참고하여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다) 폐업·전업·휴업 사업체

폐업 사업체에 대하여는 관할동장 및 지도원확인서를 첨부 보고하고 휴업인 경우에는 별도 지시가 없는한 계속 조사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라) 이전 사업체

조사대상 사업체가 이전하였을 경우에는 이웃이나 동사무소에 문의하는 등 최선의 방법에 의하여 그 이전지를 찾아내도록 하여야 하며 조사표 상에는 새로 이전된 곳의 소재지 전화번호등 모든 변경사항을 기입하고 적요란에 「이전」이라 표시한다.

1) 담당조사구 내로 이전된 경우에는 계속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ii) 자기가 담당하는 조사구 외로 사업체가 이전하였을 경우에는

그달에 한하여 조사표를 작성 제출한다.

마) 명칭변경사업체

조사대상사업체가 명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조사표상에 변경

후 명칭을 기입하고, 적요란에는 「명칭변경」이라 표시하여 제출할 것이며 사업체 명부도 변경된 내용을 수정 보완한다.

바) 신규사업체

i) 색출대상 사업체

관할 조사구내에 재고통계조사 대상품목 취급업체로서 조사대상 사업체 명부에 누락된 법인 도매업체나 종업원 5인 이상의 도매업체가 발견될 시에는 「신규사업체 색출 보고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ii) 추가대상 사업체

추가대상 사업체에 대한 실사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사업체를 조사대상 사업체 명부에 추가하여 매월 조사를 실시한다.

나. 면접

본 조사는 사업체의 비밀 사항인 월중판매량, 구입량, 월말 재고량등을 조사하게 되므로 사업주의 협조를 얻기가 어려워 조사상 애로가 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조사대상처를 방문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특히 유의하여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 1) 조사원은 대상 사업체를 방문하여 사업주 또는 실무자와의 면접을 요청할 때에는 단정한 용모와 품행을 유지하고 응답자에게 좋은 인상을 주도록 해야 하며 정중한 태도로 자기 소개를 먼저 한 다음에 조사원증을 제시한다.
- 2) 인사가 끝나면 조사표를 제시하고 조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 동시에 본 조사는 지정통계로서 통계법에 의하여 대상 사업체는
신교의무가 있으며 비밀이 엄수된다는 것을 잘 설명하여야 한다.
- 3) 조사내용은 각 사업체 및 개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므로 방문
객이나 손님이 있을 때는 그 자리에서 질문하여도 ~~좋은~~지의 여부
를 확인한다.
- 4) 조사표에 기입될 내용이외의 질문을 하거나 응답이 애매한 경우
유도질문을 해서는 안된다.
- 5) 조사내용은 타 업체와 이해 관계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비밀을
타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3. 조사표류 기입요령

가. 일반적인 유의사항

1) 지정된 품목이 계절에 따라 취급실적이 없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품목번호, 품목명 단위는 매월 보고한다. 단 사업체에서 앞으로 취급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경우 그 내용을 자세히 보고하여 조사증지를 받을 수 있다.

2) 대상사업체에서 기대상품목외에 새로운 지정품목을 취급할 때는 이것도 추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나. 항목별 기입요령

1) 조사구 및 사업체 번호

담당 사업체 명부에 부여된 조사구 번호와 사업체 번호를 별도로 지시가 없는 한 고정시켜 기입한다.

2) 사업체명 및 소재지

가) 사업체 명이라 함은 사업체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말하며 이는 사업체의 구체적인 명칭을 기입한다.

나) 일정한 사업체 명칭이 없을 때는 대표자(또는 사업주)의 성명만을 기입한다.

다) 사업체의 소재지는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실제 장소를 말하며 시도의 명칭부터 번지수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기입한다.

라) 사업체명 및 대표자 명은 정자로 된 한자를 기입하여야 한다.

마) 전화번호란을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며 누락시켜서는 안된다.

3) 조직형태

해당란에 0 표한다.

(이 때 법인우: 등기부에 법인 등기가 된 업체를 말한다)

4) 품목번호 및 품목명

품목번호란에는 「지정품목분류표」좌측에 있는 숫자를 기입한다.

5) 규격 및 단위

각 품목의 규격은 지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품목의 규격을 그대로 적으면 된다. 그러나 동일 명칭의 품목이라도 규격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은 규격별로 구분하여 기입하고 여러가지 규격품을 단일규격으로 환산 가능할 때에는 단일규격으로 환산하여 기입한다. 각 품목의 단위는 「지정품목분류표」에 지정된 단위를 사용하며 그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단위와 상이할 때는 지정된 단위로 환산하여 기입한다.

6) 월초 재고량 (전월말 재고량)

그달의 초일에 사업체에서 보유하였던 상품의 재고량 즉 전월에서 이월된 재고량을 말한다. 따라서 전월에 조사보고된 조사표상의 월말재고량과 금월의 월초 재고량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7) 월중 구입량

그달중에 외부로 부터 현금 또는 외상으로 구입한 량과 타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량을 말한다.

8) 월중 출하량 (판매량등)

그달중에 실제로 그 사업체의 현물관리를 떠난 부분의 총량을 말한다.

즉 가) 외부에 판매한 것(외상판매 포함)

나) 기본 또는 선물로서 증정한 것

다) 그 사업체에서 사무용 또는 급여용으로 출고한 것 등의 합계량을 말한다. 따라서 월말까지 출하하기로 계약된 경우라도 상품이 인도(출고)되지 않았으면 출하로 보지 않는다.

9) 과부족 보정량

그달중에 화재, 도난등의 재난에 의하여 결손 처분된 량을 말하며 판매한 제품중 반송 등에 의하여 발생한 증감량도 이에 포함된다. 증감은 「+」와 「-」의 부호로 표시하며 적요란에 반드시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10) 월말재고량

본 월말 재고량은 재고 통제조사의 핵심 조사 항목이므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월말 재고량이란 그달의 말일에 그 사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체의 상품보유량을 말하며 여기에는 이미 판매되었으나 미출고된 부분도 포함된다.

따라서 자기소유 상품이던 타인소유 수탁품 미출고분등 상품이 상품대장(또는 물품대장 현물대장 등)에 기재된 일체의 상품을 포함하며 대장이 없는 업체는 현물재고 위주로 파악한다.

한편 상품을 자기 창고 이외의 타인창고(영업창고 등)에 보관하고 있을 때에도 이를 전부 포함시켜야 한다.

단, 조사기준일 현재 수송도중에 있는 것은 도착지에서 파악한다.

11) 종업원

가: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

■ 자영업주 ■란 사업체의 주인으로서 급여를 받지 않으면서 실제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 무급가족종사자 ■란 자영업주와 가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업체의 업무에 무급으로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주당 24시간 이상 종사한 자에 한함)

조직형태가 개인인 경우 반드시 무급가족 종사자가 1인이상 존재함을 명심해야 한다.

나: 상용고용원

■ 상용고용원 ■이라 함은 일정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정 급여를 지급받고 고용된 자를 말하며 아래의 경우도 포함한다.

i) 법인 사업체에서 일정한 급여를 받는 역원(예: 사장, 이사, 감사등)

그러나 이익 배당만 받는 주주는 제외한다.

ii) 자영업주의 가족으로 일정한 급여를 받는 자

① 일정 급여 또는 판매 수수료를 받는 의무사원 판매원 및 배달원

다) 임시고용원

■ 임시고용원 ■이라 함은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급여를 받고 임시 또는 일일로 고용된 자를 말한다.

12) 적요란

가) 상품 재고량이 전월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증가 또는 감소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증감요인을 밝혀 기입하여야 한다.

나) 휴업, 폐업, 이전, 소재불명 등의 유고내용을 자세히 기입한다.

4. 검토 및 제출

가. 검토

접수된 조사표가 질의 조회나 재조사 지시를 받지 않도록 반드시 다음 내용을 철저히 검토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 1) 조사 기준일(년 월분) 조사구 및 사업체 번호 등의 기입누락 여부
- 2) 품목명 및 품목번호가 「지정품목 분류표」에 지정된 대로 기입되었나와 사업체별 지정상품 누락여부
- 3) 전월말 재고(이미 제출된 조사표에 기재된 것)와 금월초 재고의 일차 여부
- 4) 「월초재고량+월중구입량-출하량=월말재고량」의 성립여부
- 5) 조사된 숫자의 증감이 전월과 비교하여 심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적요란에 기입하여야 한다.
- 6) 기타 조직형태의 기입여부, 산업분류의 기입여부

나. 제출

- 1) 매 실사월의 조사표를 제출함에 있어서는 조사표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5매 내지 10매씩 분할하여 제출하되 늦어도 그달의 15일까지는 담당조사표 전부가 지도원에게 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 2) 지도원은 이를 접수되는 대로 일괄 취합하여 중앙에 송부하되 담당구내 조사표 전부를 20일까지 중앙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기타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조사표 제출이 늦어지면 지면 사유서를 조사원은 지도원에게 지도원은 중앙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록

1. 문제점 및 유의 사항
2. 재고 통계조사 지정품목 분류표
3. 도량형 환산표

I. 문제점 및 유의사항

6114. 식료품

1. 밀가루의 지정단위는 "포대"가 아니고 "kg"이다. 1포대당 용량이 24kg, 22kg, 10kg, 3kg, 1kg등 다양한 바 반드시 kg으로 환산보고할 것이며 민수용뿐만 아니라 관수용도 포함 조사한다.
2. 건빵, 비스킷, 검, 설탕과자의 지정단위는 조사의 편의상 금액으로 조사한다. 이때 금액의 기준은 구입량, 출하량, 재고량 모두 구입 가격으로 조사해야 하며 조사단위는 "천원"으로 보고한다.
3. 설탕과자에는 캔디, 드롭프스, 캐러멜, 젤리, 웨하스, 종합선물(각종포함), 초코렛 등이 포함된다.
4. 분유 및 연유에 청정유나 시유(복장우유)를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청정유라 함은 원유를 냉각시킨 다음 저유를 거쳐 여과시킨 것을 말하며, 시유는 생우유를 살균처리한 원상 그대로의 우유이며, 연유는 생우유를 탈수 농축시킨 것으로 시유와 구별되며, 분유는 완전 탈수시킨 분말된 것이다.
5. 해산물 통조림에 축산물 통조림(쇠고기 등)이나 농산물 통조림(과일통조림 등)은 제외하고 수산물 통조림만 조사한다.
6. 냉동 해산물에 냉장이나 빙장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냉동 해산물은 일반적으로 -20°C 이하의 저온으로 급냉각시켜 해산물 자체

를 열게 하여 냉장 창고에 보관하는 것이며 냉장은 냉동을 시키지 않고 냉장창고에 보관되는 것이다. 또 빙장은 해산물과 얼음을 혼합하여 부패(변질)를 방지하는 것이다.

7. 통조림과 냉동 해산물의 지정 단위는 **kg** 이므로 관 (Can) 또는 상자 (CS) 로 보고해서는 안된다.
8. 식빵에는 전량도 포함해야 한다.
9. 된장에는 춘장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춘장은 중화요리에 사용하는 검은 빛깔이다.
10. 엿에는 물엿도 포함되며 단위는 kg 으로 보고한다.
11. 마가린에는 쇼팅도 포함되며 버터는 제외한다.
12. 이스트는 생이스트와 건조이스트 (Dry-yeast) 가 있는데 이를 모두 포함 조사한다.
13. 제재염에는 정제염도 포함 조사한다.
14. 구루타민산소다와 인공감미료는 별개의 품목이다. 구루타민산소다는 미원이나 미풍 등을 말하며 인공감미료에는 당원, 사카린 등이 포함된다.

6115 음료품

1. 소주에는 포도주 인삼주 및 과실주 등은 포함시키지 말 것이며 과실주는 별개의 품목으로 조사하되 포도주, 법주, 인삼주 등이 포함된다.

2. 청량음료는 사이다, 콜라 외에 환타, 오란씨 등도 있으니 각각 별개의 품목으로 조사할 것
3. 소주, 주정, 청주, 사이다, 콜라, 환타, 오란씨, 맥주의 ~~적용~~ 단위는 kl 이다. 그러므로 사업체에서 # 상자# 혹은 # 병#으로 응답할 경우에는 이를 kl 로 환산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1 \ell = 1,000 \text{ ml} (1,000 \text{ cc})$

예

1. 소 주

가. 소주 2홉들이 (360 ml)

1상자는 40 병이므로 $360 \text{ ml(cc)} \times 40 \text{ 병} = 14,400 \text{ ml} = 14.4 \ell$ 임

나. 소주 4홉들이 (640 ml)

1상자는 24 병이므로 $640 \text{ ml} \times 24 \text{ 병} = 15,360 \text{ ml} = 15.36 \ell$ 임

2. 맥 주

가. 맥주대형 (640 ml)

1상자는 24 병이므로 $15,360 \text{ ml} = 15.36 \ell$ 임

나. 맥주중형 (500 ml)

1상자 = 20 병 = $10,000 \text{ ml} = 10 \ell$ 임

다. 맥주소형 (343 ml)

1상자 = 24 병 = $8,232 \text{ ml} = 8.232 \ell$ 임

3. 청 주

가. 청주대형 (1*8 ℓ)

1상자 = 10 병 = $18,000 \text{ ml} = 18 \ell$ 임

나. 청주중형 (640 ml)

1 상자 = 25 병 = 16,000 ml = 16 ℓ 임

다. 청주중형 (620 ml)

1 상자 = 25 병 = 15,500 ml = 15.5 ℓ 임

4. 콜라 , 사이다 , 환타 , 오란씨

콜라 , 사이다 , 환타 , 오란씨는 제품에 따라 1 병당 용량이 190 ml ,
236 ml , 340 ml , 770 ml 들이가 있고 1 상자당 12 병 들이와 24 병
들이로 다양하니 환산에 착오없도록 유의할 것

6116 의약품 및 화장품

1. 화장품류별 조사할 때는 단위를 지정단위 「천원」으로 하여야 하며
개(個)라든가 타(打) kg 등으로 보고해서는 안된다.
2. 향수는 향료에서 제외한다.
3. 화장수에는 「밀크로손」을 포함하여서는 안되며 「스킨로손」만 포함
하여 조사한다.
4. 화장크림에는 바니싱크림 , 콜드크림 , 영양크림 등 각종 고풍크림을 전부
포함하여 조사한다.
5. 화운데이손은 화장분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6. 머릿기름에는 폼마드와 「헤어오일」(Hair Oil)도 포함시켜야 한다.
7. 분말세탁비누는 세탁비누에 포함하며 세탁용 합성세제는 그 형태가
분말이건 , 고형이건 , 액체가건 모두 합하여 조사한다.

6117 화학제품

1. 황산(유산), 염산, 가성소다는 지정된 농도로 환산 조사하여야 한다. 즉, 황산에는 98%, 3%, 40% 등이 있는데 98%로 환산 보고하여야 하며 염산은 35%, 100% 등이 있는데 35%로 환산 보고할 것. 가성소다는 40%, 46%, 97%, 100% 등이 있는데 100%로 환산 보고할 것.
2. 압축산소는 지정단위가 m^3 인바 본으로 거래될 경우 m^3 로 환산 보고한다. 1本 = 7 m^3
3. 아세치렌 가스는 kg 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본(本) 또는 m^3 은 반드시 kg 으로 환산 보고할 것.
4. 페인트에는 수성페인트와 유성페인트가 있는바 모두 포함 조사한다.
5. 염료에는 직접염료, 산성염료, 유화염료, 형광염료등 그 종류가 다양하므로 이를 전부 포함하여 조사한다.
6. 성냥은 대형(450개회 정도임)을기준으로 하여 조사한다.

6118 섬유품

1. 혼방합성섬유방적사(화학섬유방적사)는 섬유화학공정을 통하여 나프사를 원료로 생성된 일체의 섬유 즉, 재생섬유, 반합성섬유를 제외한 섬유로 된 Fiber와 Filament 및 일체의 화학섬유가 방적할 수 있도록 제공정을 완료한 실(糸)의 상태를 말한다.
2. 순소모사: 비교적 길고 잘 간추려진 섬유로서 짧은 섬유를 제거한 실이다. 이때 짧은 섬유는 순방모사가 된다.

3. 순소모직물: 순소모사로 짠 직물, 고급지로서 신사복, 숙녀복에 사용한다.
4. 순방모사: 장섬유를 간추리고 난 나머지 단섬유를 칭하며 합성섬유사가 10% 정도 포함된 것도 순방모사로 조사한다.
5. 순방모직물: 순방모사로 짠 직물, 저급지로서 모포, 겨울용 오바, 홈스방에 사용한다.
6. 모혼방직물: 모직물과 타직물이 혼방되었을 때를 말한다.
7. 혼방합성섬유직물: 2개 이상의 섬유가 혼방되어 제조된 직물중 합성섬유가 50% 이상 차지하였을 때를 말한다. (단, 모와 혼방일때 60% 이상, 견과 혼방일때 70% 이상)
8. 각종 화학 섬유 연사: 2단사 이상을 꼬아 만든 실로서 합사(꼬지않고 합해놓은 실)와 다르다.
9. 면직물에는 광목(소창포함), 내광목, 옥광목, 당목, 면범포, 포플린, 융, 면부지를 포함한다. (단 골텐은 제외)
10. 섬유제품 중 지정단위가 m^2 로 되어있는 품목은 사업체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단위가 "Yds" "마" Roll 등 다양하므로 반드시 m^2 로 환산 보고한다.
 예: 1. 갈포벽지 1 Roll = 6,6885 m^2
 2. 직물폭이 36 인치 길이 1yd는 $0.9144 m \times 0.9144^m = 0.8361 m^2$ 가 된다.
11. 지정품목 중 사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별명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순합성섬유직물 : 나이론 , 다후다 , Jensey , 앙고라 , 포리텍스 , 케미 칼 ,
 트리코트

순견본직물 : 폴치기원단 , 시보리원단 , 양단

재생섬유직물 : 인견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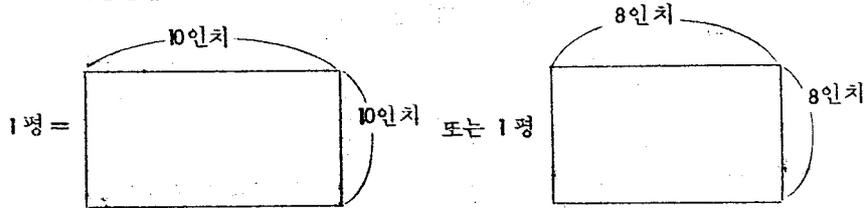
합성섬유방직사 : Stretch 사 , Nylon 사 , Filament 폴리에스텔사 , 테포런을
 직사 , 카시미론사 , 아크릴릭사 , 中細糸 (단 Fiber 는 제외)

6119 신 , 가방 , 의복 및 장신품

1. 소가죽은 원피가 아니고 원피를 가방이나 신발 등을 만들기 위하여
 일정한 가공단계를 거친 상태를 말한다 . 사업체에서 단위를 평 (坪)
 또는 매 (枚) 로 사용하더라도 m^2 로 환산 보고한다 .

1 평 = 가로 10 인치 × 세로 10 인치 = $0.0645 m^2$

• 단위원산법



사방 10 인치 = $0.0645 m^2$

사방 8 인치 = $0.0413 m^2$

1 枚 = 30 - 40 평

1 枚 = $3.3 m^2$ (30 평)

1 枚 = $3.7 m^2$ (40 평)

2. 비닐제 트렁크류의 경우 그 규격이 다양하므로 용적이 792 평방인치 (보통 12인치×11인치×6인치) 이상의 크기만을 조사하며 학생용 책가방이나 서류가방, 여행용가방은 "가방"으로 조사한다. 이에는 직물제 가방도 포함 조사한다.
3. 핸드백에는 구슬백, 지갑 등은 제외되며 피혁이나 합성피혁, P.V.C 를 원자재로 만든 제품만 포함한다.
4. 타올 ; 일반세면용타올(가로 80cm×세로 33cm정도) 1매 (= 0.3㎡) 정도로서 제반타올제품도 포함한다. 단 시트카바 등 큰 타올은 별도로 보고하되 규격란에 규격을 기입할 것
5. 화섬사양말 : 순면, 순모, 양말은 제외하고 화섬사 60%이상의 혼방사로 된 양말은 포함된다. 또한 펜터스타킹, 스타킹도 화섬사양말에 포함 조사한다.
6. 메리야스외의 (Sweater 포함) 중 Y-Shirts, Nylon내의, 이너랙스, 부라우스, 동내의, 스텍스등은 제외한다.
7. 운동화에는 훈련화(통일화), 노동화등은 포함되고 방한화는 제외한다.

6120 광물재료

1. 휘발유에는 고급휘발유와 보통휘발유가 있는 바 구분치 말고 통합하여 조사할 것
2. 방카 A, B 유는 중유에 포함 조사해야 되며 경유 중유도 중유에 포함 조사한다.
3. 윤활유에는 구리스를 제외할 것이며 윤활유 1ℓ = 20ℓ 로 환산된다.

4. 액화 석유가스 (L.P.G)는 프로판가스와 부탄가스를 통합하여 조사할 것이며, 프로판가스 $1\text{ kg} = 1.97\text{ l}$
부탄가스 $1\text{ kg} = 1.73\text{ l}$ } 로 환산한다.
5. 봉강에는 철근, 환강, 환철, 각강, 반원강 등이 모두 포함된다.
6. 강판에는 상수도판, 구조판 등이 포함된다.
7. 알미늄주물제품 (주물을 부어 만든 것)은 알미늄프레스가공식기 및 용기 (알미늄판으로 만든 것)와 별개의 대상품목이니 구별하여 조사한다.
8. 아연도철 판은 박판에 아연을 도금한 것이며 (일명합석), 석도철 판은 강판의 양면에 주석을 도금한 것으로 특별강연강의 박판임.
9. 아연도 철 판의 규격별 중량은 다음과 같으니 환산에 참고할 것

$$0.23\text{ mm} = 3.34\text{ kg}$$

$$0.45\text{ mm} = 6.32\text{ kg}$$

$$0.25\text{ mm} = 3.5\text{ kg}$$

$$0.55\text{ mm} = 7.69\text{ kg}$$

$$0.30\text{ mm} = 4\text{ kg}$$

$$0.70\text{ mm} = 9.7\text{ kg}$$

$$0.33\text{ mm} = 4.73\text{ kg}$$

$$0.91\text{ mm} = 12.34\text{ kg}$$

$$0.35\text{ mm} = 5\text{ kg}$$

6121 일반기계기구

1. 합마, 드라이버는 공장용 수공구에 포함되며 송곳은 제외한다.
2. 석유 스토브 (난로)는 곤로와 구별되어야 하며 스토브만을 조사하고 곤로는 제외한다.

3. 발동기는 석유 및 경유발동기만 조사하고 디젤발동기는 제외한다.
4. 분무기는 농업용 등집식 어깨거리형(배낭형) 자동 및 수동식분무기와 죽담형 등 농업용을 조사하며 곤충(파리, 모기)을 제거하기 위한 소형분무기(가정용펌프), 페인트용, 세탁소에서 사용하는 스프리건 등은 제외한다.
5. 절삭공구에서 쇠틀날과 종이나 유리 혹은 목공용 칼은 제외한다.
6. 동력펌프에는 자동식펌프와 양수기(수리관개용)를 포함 조사하며 수동식펌프(우물용)는 제외한다.
7. 발브는 건축용, 기계용, 공업용만 포함 조사하고 자동차부속용발브가이드, 엔진발브, 타이어튜브발브 및 수도꼭지는 제외한다.
8. 베어링은 볼베어링, 롤베어링, 스피드베어링 등 전부를 포함조사하나 자동차용메탈베어링, 엔진베어링, 유니버살조인트 등은 제외한다.
9. 농업용 수공구는 금속제만 조사한다. 삽, 괭이, 호미, 쟁기, 쇠스랑, 곡괭이 등

6122 수송용 기계기구

1. 자동차용 스프링에는 시트(의자)용 스프링을 제외하여야 하며 완충장치로서 차체하부에 부착되는 스프링만 조사하여야 한다. 이에 는 평형스프링과 코일형스프링이 있다.

2. 자전거는 완제품, 조립품 및 부속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완제품에 조립품을 포함조사 하며 부속품중 차체는 자전거로 간주하여 조사하여야 하고 자전거용 타이어가 독립된 상품으로 있을 때는 이를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
3. 리어카링은 자전거용 타이어에서 제외한다.

6123 정밀기계기구

1. 손복시계, 궤종시계, 등은 각각 구분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전기시계, 전자시계 등은 궤종시계에 포함 조사하고 탁상시계 및 특수용 시계 (잠수 기록용 시계) 등은 제외한다.
2. 안경테에는 선날라스테도 포함 조사 한다.

6124 전기통신기계기구

1. 전기스토브에는 전기콘로를 제외하여 조사한다.
2. 전기냉장고에서 아이스박스나 냉동기 등은 제외한다.
3. 백열전구는 15 W 이상의 조명용 전구만을 조사할 것이며 아래와 같은 소형전구는 제외한다.

- ①자동차용 전구 ②자전거용 전구 ③장식용 전구 ④두전구 ⑤영사용 전구
⑥사진용 전구 ⑦항공기용 전구 ⑧전자제산기용 전구 ⑨기타 특수용 소형전구

4. 형광전구에는 직관 및 환형이 있는 바 양자를 포함 조사하되 다음것은 제외한다.

- ①네온사인 ②가스방전관 및 구 ③헬륨, 알곤가스 ④크세논 등 가스방전관

5. 전화기에는 체신 1호인 표준형 전화기 뿐만 아니라 수출용인 장식용 전화기 등도 조사하되 단, 인터폰이나 무전기 등은 제외한다.

6. 라디오에는 트랜지스터 라디오, 진공관라디오, 카 (Car) 라디오 뿐만 아니라 신개발품인 디지털클럭라디오도 포함 조사한다.

6125 건축재료

1. 판유리는 지정규격인 2mm로 환산 보고하여야 한다. 만약 3mm,

100평, 200 상자를 2mm로 환산하면 $200 \times \frac{3}{2} = 300$ 상자로 환산된다.

2. 타일은 일반적으로 사업체에서는 "평"을 쓰고 있으나 이를 지정단위인 m^2 로 환산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text{ 평} = 3.3 \text{ m}^2$$

3. 석면스레이트는 일반적으로 사업체에서 단위를 "환산매수"로 사용하고 있으니 지정단위인 m^2 로 환산 보고하여야 한다.

$$\text{환산매수 } 1 \text{ 매} = 1.1 \text{ m}^2$$

환산매수 3매가 1평이므로 환산매수 ÷ 3매 × 3.3 m^2 으로 환산할 것.

4. 벽돌 (소성품)은 각종 적벽돌을 전부 포함하여야 하며 휘장연와 (오지벽

물)도 포함 조사할 것.

5. 합판은 규격이 다양한 바

다음 요령으로 환산한다.

규격			1매당 m^2	좌기두께의 1 \sqrt{F} 당 m^2
가로(F)	세로(F)	두께 (mm)		
4	8	3.2	0.0095232	0.0002976
3	6		0.0053568	
4	8	3.6	0.00107136	0.0003348
3	6		0.0060264	
4	8	4	0.011904	0.000372
3	6		0.006696	
4	8	6	0.017857	0.000558
3	6		0.010044	

6126 가구 천구 및 집기

1. 철제품과 목제품을 구분하여 기입한다.
2. 탁자, 티 테이블 등은 식상에 포함한다.
3. 학생용 책걸상은 규격란에 반드시 기입한다.

4. 비닐장판, 치솔 등 각종 비닐제품(요소수지제품)은 6126016 프라스틱 제품에 포함 조사한다.
5. 알미늄 프레스 가공식기 및 용기는 알미늄, 주물제품과 혼동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물제품은 알미늄피를 녹여 부어서 만든 것으로 보통 두껍지만 깨지는 성질의 것으로 양은솔, 두꺼운 주전자, 바케스 및 밥그릇 등이며 프레스 제품은 깨지기 보다는 찌그러지는 것으로 두께가 얇고 주로 ~~노~~란 칠을 한 것이다.

6127 종이 및 종이제품

1. 신문용지와 백상지는 일반적으로 사업체에서 갱지와 모조지로 호칭되고 있는 바 지정품목명인 신문용지와 백상지로 보고할 것
2. 인쇄용지 및 필기용지를 중질지 또는 로투지로 부르는 경향이 있으나 지정품목 명칭을 사용하여 보고할 것이며 노트는 별개 품목이니 독립해서 보고할 것
3. 창호지의 지정단위는 "권"이며 1권은 2,000매 이다.
4. 판지를 마니라판지, 백판지, 회색판지 등 여러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구분치 말고 이들을 총칭해서 판지로 조사한다.

6128 철 물

1. 철선에는 경강선, 세선연선 등 특수한 용도로 만든 강한 철선을 포함하며 비철금속으로 된 ACSR (알미늄선), 진유선 등은 제외됨.
2. 쇠못에는 철선으로 만든 것은 모두 포함시키나 나사못, 황동못, 나무못 등의 특수못은 제외한다.
3. 철사망이라 함은 철사로 망을 뜬 것을 말하여 가시철망 (유자철선 철조망), 스토프망, 선풍기망, 방충망 등은 제외한다.
4. 금속관 이음쇠에서 리벨트는 제외한다.
5. 볼트 및 너트에서 와샤는 제외한다.

6129 기타 일반도매업

1. 연필에는 각종 연필을 모두 포함하여 조사하며 색연필도 포함 조사한다.

환산예를 보면

$$1 \text{ 타} = 12 \text{ 자루} \Rightarrow 12 \text{ 타 (打)} = 1 \text{ Gross} = 144 \text{ 자루}$$

2. 스폰지의 지정단위는 m^3 이나 사업체에서 "평"이나 기타의 단위로 쓰고 있더라도 반드시 m^3 로 환산 보고한다. 환산이 불가능할 때는 규격을 자세히 기입한다.

3. 고무호스의 지정단위는 m 이나 사업체에서 권 (卷) 으로 보고 하더라도 반드시 m 로 환산하도록 한다.

$$1 \text{ 권은 } 50 \text{ 척 (尺)} = 15.15 \text{ m}$$

4. 각종 고무벨트 (V형고무벨트, 평고무벨트, 콘베아벨트)의 지정단위는 *km*이다.

그러므로 사업체에서 자 (尺) 또는 *m*로 보고 하더라도 반드시 *km*로 환산 보고한다.

5. 기계용 가죽벨트의 지정단위는 *km*이다. 대상처에서 자 (尺) 나 Ply를 사용하더라도 *km*로 환산 보고한다.

II. 재고통계조사지정품목분류표 (유통부문)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6114	식 료 품		6114905	마아가린	kg
6114102	설탕	kg	6114906	엿 (물엿 포함)	"
6114201	밀가루	"	6114907	식용포도당	"
6114202	전분	"	6114908	이스트	"
6114301	제재염	"	6114909	사료	"
6114302	된장	"			
6114303	간장	kg	6115	음 료 품	
6114304	구루타민산소다	kg	6115101	주정	ℓ
6114305	인공감미료	"	6115102	소주	"
6114401	식빵	천원	6115103	맥주	"
6114402	건빵	"	6115104	청주 (합성청주포함)	"
6114403	비스켓	"	6115105	과실주	"
6114404	라면	kg	6115201	사이다	"
6114405	설탕과자	천원	6115202	콜라	"
6114406	검	"	6115203	오렌지	"
6114901	분유 및 연유	kg	6115204	환타	"
6114903	물고기 및 해산물 통조림	"			
6114904	병동해산물	"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6116 의약품 및 화장품			6117007	아세틸렌 가스	kg
			6117010	염 료	"
			6117011	카바이트	"
6116101	의약품 (한약제외)	천원	6117016	살충제	"
6116201	화장비누	kg	6117017	살균제	"
6116202	세탁비누	"	6117020	페인트	ℓ
6116203	세탁용 합성세제	"	6117021	와니스	"
6116204	향 료	천원	6117022	에나멜	"
6116205	화장수	"	6117023	락 카	"
6116206	화장크림	"	6117024	그리세린	kg
6116207	화장백분	"	6117025	다이나마이트	"
6116208	머릿기름	"	6117026	도화선	m
6116209	연치약 및 차분	"	6117027	뇌 관	개
6117 화 학 제 품			6117029	양 초	갑
6117001	황산 (유산98%환산)	kg	6117030	성 냥(대형)	"
6117002	염산 (35%환산)	"	6117033	인쇄용 잉크	kg
6117003	가성소다	"	6118 섬 유 품		
6117004	소다회	"	6118102	솜	kg
6117006	압축산소	m ³	6118103	면 사	"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6118104	순소모사	kg	6119	신, 가방, 의복 및 장식품	
6118105	순방모사	"			
6118106	혼방소모사	"			
6118108	나이론사	"			
6118109	포리에스텔사	"			
6118110	아크리릭사	"			
6118111	재생섬유방직사 (스프사 및 비 스코스인건사 포 함)	"			
6118112	아세 테이트사	"			
6118113	혼방합성 섬유방직사	"			
6118116	어망사	"			
6118117	화학섬유연사	"			
6118201	면직물	m ²	6119104	고무신	족
6118202	순본건직물	"	6119105	교우장화및우화	"
6118203	건혼방직물	"	6119106	운동화	"
6118204	순소모직물	"	6119107	소가죽	m ²
6118205	순방모직물	"	6119108	프라스틱신	족
6118206	모 혼방직물	"	6119201	비닐제드렁크 (가죽제포함)	개
6118207	재생섬유직물	"	6119202	핸드백	"
6118208	순합성 섬유직물	"	6119203	가방(학생용포함)	"
6118209	혼방합성섬유직물	"	6119301	메리야스외의	개
6118210	로오프	kg	6119501	모 포	"
6118211	어 망	"	6119901	타 홀	"
			6119902	화섬사양말	족
			6119903	이 불	개
			6120	광 물 재 료	
			6120102	휘발유	kg
			6120103	항공유	"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6120104	경 유	ℓ	6121	일반기계기구	
6120105	중 유	"			
6120106	방카C유	"	6121001	공장용수공구	개
6120107	등 유	"	6121002	농기구(경작용도구)	"
6120108	윤활유	"	6121003	발동기	대
6120110	액화석유가스 (L.P.G)	"	6121006	인력탈곡기	"
6120312	형 강	"	6121007	동력탈곡기	"
6120313	봉강(철근)	"	6121008	분두기	"
6120315	강 판	"	6121014	절삭공구	개
6120316	강 판	kg	6121026	동력펌프(양수기)	대
6120317	주철판	"	6121028	재봉틀	"
6120320	아연도철판	"	6121029	발 브	"
6120321	석도철판	"	6121030	베아링	개
6120324	전기동	"	6121032	석유스도브	개
6120325	연 괴	"	6122	수송용 기계기구	
6120326	아연괴	"			
6120327	구리판 및 판	"	6122006	자동차용 스프링	개
6120328	알미늄판	"	6122007	자동차용피스톤	"
6120329	알미늄주물제품	"	6122008	자전거	대
			6122010	자동차용 타이어	본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6122011	자동차용튜브	본	6124009	녹음기	대
6122012	자전거용 타이어	"	6124010	레코트관	매
6122013	재생 타이어	"	6124011	전화기	대
6123	정밀기계기구		6124014	콘덴서 (진력용제외)	개
			6124015	저항기 (통신용)	"
			6124016	진기냉장고	대
			6124017	선풍기	"
			6124018	전기스토브	"
			6124019	에어콘디셔너	"
6123001	안경테	개	6124020	합성수 지절 연전선	kg
6123002	손목시계	"	6124021	통신 및 전력용케이블	"
6123003	벽시계 (패종)	"	6124022	백열전구	개
6123005	이화학기구	천원	6124023	형광전구	"
6123006	의료기구	"	6124024	축전지	"
6124	전기·통신기계기구		6124025	건전지	"
			6124026	소킷트	"
			6124027	전 축	대
			6124001	전동기	HP
			6124002	변압기	KVA
			6124003	고압축전기	"
			6124004	저압축전기	MP
			6124006	라디오수신기	대
6124007	T.V수상기	"			
6124008	브라운관	개	6125001	각 재	m ³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6125002	관 재	m ³	6126010	알미늄 프레스가공	천원
6125004	합 관	"		식기 및 용기	
6125005	하드보오드	"	6126011	스텐레스스틸식기	"
6125006	시멘트	%	6126012	도자식기	"
6125007	백시멘트	"	6126014	유티식기	"
6125008	관유리	상 자	6126016	프라스틱제품	"
6125009	벽돌 (소성품)	개			
6125010	타 일	m ²	6127	종이 및 종이제품	
6125012	소석회	%			
6125014	흙 관	본	6127002	신문용지	kg
6125019	석면슬레이트	m ²	6127003	백상지	"
			6127004	인쇄 용지 및 필카용지	"
6126	가구 건구 및 집기		6127005	크라프트지	"
			6127006	아트지	"
6126002	침 대	개	6127007	박엽지	"
6126003	목제책상	"	6127009	판 지	"
6126004	목제식상	"	6127011	창호지	권
6126005	목제의자	"	6127012	장판지	m ²
6126007	철제책상	"	6127012	화장지	kg
6126008	철제의자	"			
6126009	철제캐비닛	"	6128	철 물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6128001	건축용 샷슈	개	6129001	연 필	타
6128005	철 선	kg	6129002	불 팬	"
6128006	나동선	"	6129003	만 연 필	개
6128007	쇠못	"	6129004	공과서 및 서적	천원
6128008	와이어로오프	"	6129005	잡지및정기간행물	"
6128009	철사망(철사그물)	"	6129014	각종 고무벨트	km
6128010	용접봉	"	6129015	고무 호오스	m
6128011	볼트 및 너트	"	6129016	스폰지	m ²
6128012	금속관이음쇠	"	6129017	기계용가죽벨트	km
6129	기타 일반 도매업		6129018	소화기	개
			6129019	노 트	권

Ⅲ. 도량형 단위 환산표

길이

	척 (尺)	정 (町)	리 (里)	미터 (米)	촌 (寸)	척 (尺)	마 (碼)	리 (里)
척	1	0.00277	0.000077	0.30303	11.9305	0.94211	0.331403	0.000188
정	360	1	0.027777	109.09	4,294.99	357,916	119,306	0.067784
리	12,960	36	1	3,927.27	154,619	12,884.9	4,394.99	2.44033
미터 (米)	3.3	0.009166	0.000254	1	39.3707	3.28089	1.09363	0.000621
촌 (寸)	0.083818	0.000232	0.000006	0.025399	1	0.08333	0.27777	0.000015
피트 (ft)	1.00582	0.002793	0.00007	0.304974	12	1	0.33333	0.000189
마 (碼)	3.01746	0.008381	0.000232	0.914383	36	3	1	0.000568
리	5,310.73	14.752	0.409.779	1,609.31	63,360	5,280	1,760	1

중량

	톤 (噸)	파 (貫)	근 (斤)	근 (斤)	근 (斤)	근 (斤)	근 (斤)	근 (斤)	근 (斤)	파운드 (lbs)	돈 (兩)	돈 (兩)	돈 (兩)
톤	1	0.001	0.00625	3.75	0.132277	0.008267	0.000003	0.000004					
파	1,000	1	6.25	3,750	132.277	8.26732	0.00369	0.004133					
근	160	0.16	1	600	21.1641	1.32277	0.00059	0.000661					
근 람 (斤)	0.26666	0.00266	0.00166	1	0.035273	0.001214	0.00009	0.000001					
돈 스 (兩)	7.55984	0.07559	0.47249	28.3495	1	0.0625	0.000027	0.000031					
파운드 (lbs)	120,958	0.120958	0.755988	453,592	16	1	0.000446	0.0005					
돈 (兩)	270,946	307,946	1,693.41	1,016,047	35,840	2,240	1	1.12					
돈 (兩)	241,916	241,916	1,511.97	907,178	32,000	2,000	0.892857	1					

	홉(合)	승(升)	두(斗)	석(石)	입방미(坪)	리터(ℓ)	계승(坪)	개롱(町)
홉	1	0.1	1.01	0.001	0.00018	0.12039	0.039682	0.047656
승	10	1	0.1	0.01	0.001803	1.8039	0.396185	0.476567
두	100	10	1	0.1	0.018039	18.039	3.96815	4.76567
석	1,000	100	10	1	0.18039	180.39	39.6815	47.6567
입방미(坪)	5,543.52	554.352	55.4352	5.54352	1	1.000	219.979	264.1866
리터(ℓ)	5.54352	0.55435	0.05543	0.005543	0.001	1	0.219975	0.264186
개롱(町)	25.2006	2.52006	0.252006	0.0252	0.004545	4.54596	1	1.201
개롱(町)	20.9833	2.09833	0.209833	0.209833	0.003785	3.78543	0.832699	1

가. 주요단위해설

1) Pfm : 용액중의 물질함량을 표시할 때 중량 백분율을 표시하는 약호이다.

2) d (테니어, Denier) : 450 m의 장사(長絲)로 0.05 g이면 1 테니어임.

3) 'S (번수·番數) : 결사 1파운드의 길이 즉 4,436,889야드를 전환인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됨.

$$(1) 4,436,889 / (\text{테니어} \times 840) = \text{면사 번수}$$

$$\therefore \text{테니어} = 5282 / \text{면사 번수}$$

(840야드는 I'S 면사의 길이)

$$(2) 4,436,889 / (\text{테니어} \times 560) = \text{소모사 번수}$$

$$\therefore \text{테니어} = 7,923 / \text{소모사 번수}$$

(560야드는 I'S 소모사의 길이)

$$(3) 4,436,889 / (\text{테니어} \times 256) = \text{방모사 번수}$$

$$\therefore \text{테니어} = 17,331.6 / \text{방모사 번수}$$

(256야드는 I'S 방모사의 길이)

소모사는 영국식으로는 560야드 1파운드의 것을 1번수라 함.

예컨대 32번수 단사(單絲)의 경우는 1/32'S, 쌍사(雙絲)의 경우는 2/32'S로 됨.

4) 추(錘) : 조방기(組紡機), 정방기(精紡機), 연사기(撚絲機) 등 스핀들을 사용하는 기계의 양을 나타냄.

면방 ㉠ 링 ㉡ 정방기는 1일 16시간 가동으로 20번수를 0.5과

윤도정도 생산하는 능력을 가진, 소모율, 정방기로는 48 번수를
0.4파운드로 생산함.

5) 배수톤(排水噸) : 배의 수면 길의 체적과 동일한 체적을 가진
물의 중량 바닷물일 때는 $35f^3$ 민물일 때는 $36f^3$ 가 1 배수양
톤 균함의 크기를 표시하는데 사용된다.

6) D/W(Dead weight) : 화물을 만재한 상태에서 선박자체의 무게
를 뺀 중량 2,240파운드를 1 중량톤으로 한다.

7) G/T(Gross Tonnage) : 배의 용적을 표시하는 단위로 선목×
길이×높이의 f^3 1,000 f^3 를 1 G/T으로 한다.

8) 노트(Knot) : 배가 1시간에 1해리(1,853 m)를 달리는 속력

9) S/F $\frac{1}{8}$ (Square Feet $\frac{1}{8}$ inch) : 함판의 체적을 나타내는 단위로
서 1 feet × 1 feet $\frac{1}{8}$ 인치의 체적을 말한다. 이를 $\#$ 로 환산하
면 $0.3048 m \times 0.3048 m \times 0.0254 m \times \frac{1}{8} = 0.0027 \#$ 이다.

- [주] 1. 1 세----- 1 치 × 1 치 × 12 자
2. 1 석----- 130 L
3. 1 근----- 13 lbs
4. 1 관----- 8.27 #
5. 1 인----- 400 #
6. 1 평----- 3.3 #
7. 1 평----- 1.5 평방척
8. 목재----- 3 분판 1 평은 9 세
 4 분판 # 12 세
 5 분판 # 15 세

재고통계조사지침

1 9 7 6

차 례

1. 조사개요	1
가. 조사목적	1
나. 조사의 법적근거	1
다. 조사내용	1
라. 조사대상 및 단위	1
마. 조사시기	4
2. 실사 및 면접	5
가. 실사	5
나. 면접	7
3. 조사표류 기입요령	9
가. 일반적인 유의사항	9
나. 항목별 기입요령	9
4. 검토 및 제출	15
가. 검토	15
나. 제출	15
부 록	17
I. 문제점 및 유의사항	17
II. 재고통계조사 지정품목 분류표	36
III. 도량형 환산표	43
IV. 재고통계 조사표	49

1. 조사 개요

가. 조사목적

이 조사는 국내의 주요 물자에 대한 보유량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경기 예측, 불가정책 및 물자수급 등의 계획 수립 또는 평가 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한다.

나. 조사의 법적 근거

이 조사는 통계법(법률 제 980호 개정 법률 제 1215호)에 의하여 지정통계 제 26호로 지정된 통계이다.

다. 조사내용

이 조사는 지정된 도매업체의 취급 상품 중 매월 지정된 품목에 대한 구입량, 출하량, 재고량과 종업원 수 등을 조사한다.

라. 조사대상 및 단위

1) 조사대상

이 조사의 산업상의 조사 범위는 한국 표준 산업분류에 의한 일반 도매업이며 조사 대상 사업체는 일반 도매업체 중에서 지정된 사업체이다.

각 조사원이 담당할 조사 대상 사업체는 각 조사구별

사업체 명부에 명시되어 있으며 별도 지시에 의하여 보완한다.

※ 산업 분류상 도매와 소매업의 구분

가) 도매업

* 도매업이란 주로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i) 소매업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ii) 광공업, 운수통신업, 관공서, 학교, 병원 및 기타 산업용 사용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iii) 광업 및 제조업체가 다른 장소에서 자기제품을 도매하는 경우

* 제조와 판매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회사나 출장소등은 관리 또는 주된 산업인 광업 및 제조업으로 분류하므로 도매업에 포함하지 않는다.

iv) 개인 또는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상품매매의 중개나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단 본 조사에서는 제외됨)

* 도매업에 포함되는 사업체의 중요한 형태는 다음과 같다.

i) 도매상 : 일반도매상, 산업용배급업, 도매를 주로하는 상사회사, 광공업회사의 도매사업소

ii) 하청제조도매상 : 스스로는 상품을 만들지 않고 자기 소유의 원재료를 하청공장등에 지급해서 제품을 만들게 한 후 이를 자기 명의로 도매하는 사업체

iii) 대리상, 중개상 : 주로 수수료를 받고 상품매매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는 사업체 (단 본 조사에서는 제외됨)

※그러나 대리점의 명칭을 가지고 실재는 상품의 대리업무는 하지 않고 별개의 경영으로 도매를 하는 경우는 일반도매업으로 취급한다.

iv) 무역상, 무역중개상 (오파상) :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을 사업으로 하는 경우와 중개물 사업으로 하는 경우 (단 본 조사에서는 제외됨)

나) 소매업

소매업은 주로 개인용 가정용 소비를 위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조사단위

조사의 단위는 개개의 사업체 (점포) 이다. 여기서 사업체란 “ 상품의 매매가 영업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개개의 물리적 장소 ” 를 말하며 하나의 구획을 차지하고 있는 장소이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별도로 취급한다.

가) 동일구내에 둘 이상의 사업체가 있을 때에는 경영주가 같은 사람인 경우는 하나의 단위로 취급하지만 경영주가 다르면 별개의 사업체로 취급한다. 여기서 동일구내라 함은 일반적으로 불타리 같은 것을 가진 장소로 관계자 이외에는 자유로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장소를 말한다.

동일구내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임금 및 경영장부가 같은 경우에만 하나의 사업체로 본다.

나) 가까운 거리의 두개이상의 장소에서 경영을 하고 있을지라도 임금이나 경영장부가 같은 경우는 하나의 사업체로 본다.

이때 가까운 거리란 나란히 있거나 길 건너 마주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극히 좁은 범위로 한정한다.

마. 조사시기

조사의 기준 시점은 매월 말이며 조사의 기준기간은 그달의 1일 부터 말일까지의 1개월로 한다.

바. 조사방법

면접식 타계주의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사업체는 우편 조사한다.

2. 실 사 및 면 접

가. 실사

1) 조사원은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개개의 사업체에 대하여 항상 그 위치를 비롯하여 사업체의 업종에 대한 특성, 동향 및 종업원수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주 및 판매 책임자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조사에 임해야 한다.

2) 조사원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담당조사구내의 지정사업체를 순방하여 조사표의 기입을 완료하도록 할 것이며 응답자의 부재 등 제 사유로 인하여 조사표를 작성치 못하였거나 조사표 기입상에 잘못이 발견된 사업체는 10~12일까지 사이에 재 방문하여 조사표의 작성을 완료토록 한다.

3) 조사원은 별도 배부된 「조사기록부」에 다음 조사를 위하여 참고가 될 사항을 기록하여 두어야 하며 이 조사기록부와 기타 사항을 참고로 하여 조사의 누락이나 오기 또는 잘못된 조사가 없이 조사표가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4) 관할 구역내에 신규사업체 및 사업체 이동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다음 요령에 의거 반드시 조사표 적요란에 명시함과 아울러 별도의 "변동사항 보고서식"에 의하

여 보고하여야 한다.

가) 응답불응 사업체

조사대상 사업체가 비협조적이거나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는 조사의 목적과 자료의 효율성을 이해시키고 비밀이 보장되는 점을 강조하여 계속 상대방의 협조를 촉구하여야 하며 2, 3차 방문시에도 불응할 경우는 지도원을 경유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불확실한 신고를 하는 사업체

사업주나 대리인이 불확실한 신고를 하거나 허위신고를 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업체의 규모나 종업원수, 업종 및 전월사항을 참고하여 정확한 조사자 되도록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다) 폐업·전업·휴업 사업체

폐업 사업체에 대하여는 관할동장 및 지도원 확인서를 첨부 보고하고 휴업인 경우에는 별도 지시가 없는한 계속 조사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라) 이전사업체

조사대상 사업체가 이전하였을 경우에는 이웃이나 동사무소에 문의하는등 최선의 방법에 의하여 그 이전지를 찾아내도록 하여야 하며 조사표상에는 새로 이전된 곳의 소재지·전화번호등 모든 변경사항을 기입하고 적

요란에 "이전"이라 표시한다.

i) 담당조사구 내로 이전된 경우에는 계속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ii) 자기가 담당하는 조사구 외로 사업체가 이전하였을 경우에는 그달에 한하여 조사표를 작성 제출한다.

마) 명칭변경사업체

조사대상 사업체가 명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조사표상에 변경 후 명칭을 기입하고 적요란에는 "명칭변경"이라 표시하여 제출할 것이며 사업체 명부도 변경된 내용을 수정 보완한다.

바) 신규사업체

i) 색출대상 사업체

관할 조사구내에 재고통계조사 대상품목 취급업체로서 조사대상 사업체 명부에 누락된 법인 도매업체나 종업원 5인 이상의 도매업체가 발견될 시에는 "신규사업체 색출 보고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ii) 추가대상 사업체

추가대상 사업체에 대한 실사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사업체를 조사대상 사업체 명부에 추가하여 매월 조사를 실시한다.

나. 년접

본 조사는 사업체의 비밀 사항인 월중판매량, 구입량, 월말 재고량등을 조사하게 되므로 사업주의 협조를 얻기가 어려워 조사상 애로가 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조사대상처를 방문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특히 유의하여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 1) 조사원은 대상 사업체를 방문하여 사업주 또는 실무자와의 면접을 요청할 때에는 단정한 용모와 품행을 유지하고 응답자에게 좋은 인상을 주도록 해야 하며 정중한 태도로 자기 소개를 먼저한 다음에 조사원증을 제시한다.
- 2) 인사가 끝나면 조사표를 제시하고 조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동시에 본 조사는 지정통계로서 통계법에 의하여 대상 사업체는 신고의무가 있으며 비밀이 엄수된다는 것을 잘 설명하여야 한다.
- 3) 조사내용은 각 사업체 및 개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므로 방문객이나 손님이 있을 때는 그 자리에서 질문하여도 좋은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 4) 조사표에 기입될 내용이외의 질문을 하거나 응답이 애매한 경우 유도질문을 해서는 안된다.
- 5) 조사내용은 타업체와 이해 관계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비밀을 타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3. 조사표류 기입요령

가. 일반적인 유의사항

1) 지정된 품목이 계절에 따라 취급실적이 없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품목번호, 품목명 단위는 매월 보고한다. 단 사업체에서 앞으로 취급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경우 그 내용을 자세히 보고하여 조사중지를 받을 수 있다.

2) 대상사업체에서 기대상품복외에 새로운 지정품목을 취급할 시는 이것도 추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나. 항목별 기입요령

1) 조사구 및 사업체 번호

담당 사업체 명부에 부여된 조사구 번호와 사업체 번호를 별도 지시가 없는한 고정시켜 기입한다.

2) 사업체명 및 소재지

가) 사업체명이라 함은 사업체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말하며 이는 사업체의 구체적인 명칭을 기입한다.

나) 일정한 사업체 명칭이 없을 때는 대표자(또는 사업주)의 성명만을 기입한다.

다) 사업체의 소재지는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실제 장소를 말하며 시도의 명칭부터 번지수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기입한다.

라) 사업체명 및 대표자명은 정자로 된 한자를 기입하여야 한다.

마) 전화번호란을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며 누락시켜서는 안된다.

3) 조직 형태

해당란에 0 표 한다.

(이 때 법인은 등기부에 법인 등기가 된 업체를 말한다.)

4) 품목번호 및 품목명

품목번호란에는 "지정품목분류표" 좌측에 있는 숫자를 기입한다.

5) 규격 및 단위

각 품목의 규격은 지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품목의 규격을 그대로 적으면 된다. 그러나 동일 명칭의 품목이라도 규격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은 규격별로 구분하여 기입하고 여러가지 규격품을 단일규격으로 환산 가능할 때에는 단일규격으로 환산하여 기입한다. 각 품목의 단위는 "지정품목분류표"에 지정된 단위들 사용하며 그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단위와 상이할 때는 지정된 단위로 환산하여 기입한다.

6) 월초 재고량(전월말 재고량)

그달의 초일에 사업체에서 보유하였던 상품의 재고량을 전월에서 이월된 재고량을 말한다. 따라서 건월에 조사보고된 조사표상의 월말재고량과 금월의 월초재고량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7) 월중 구입량

그달중에 외부로부터 현금 또는 외상으로 구입한량과 타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양을 말한다.

8) 월중 출하량(판매량등)

그달중에 실제로 그 사업체의 현물관리를 떠난 부분의 총량을 말한다.

가) 외부에 판매한 것(외상판매포함)

나) 전본 또는 선물로서 증정한 것.

다) 그 사업체에서 사무용 또는 급여용으로 출고한 것 등의 합계량을 말한다. 따라서 월말까지 출하하기로 계약된 경우라도 상품이 인도(출고)되지 않았으면 출하로 보지 않는다.

9) 과부족 보정량

그달중에 화재, 도난등의 재난에 의하여 결손 처분된

량을 말하며 판매한 제품중 반송 등에 의하여 발생한 증감량도 이에 포함된다. 증감은 「+」와 「-」의 부호로 표시하며 적요란에 반드시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10) 월말재고량

본 월말재고량은 재고 통계조사의 핵심 조사 항목이므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월말재고량이란 그달의 말일에 그 사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체의 상품보유량을 말하며 여기에는 이미 판매되었으나 미출고된 부분도 포함된다.

따라서 자기소유 상품이던 타인소유 수탁품 미출고분등 상품이 상품대장 (또는 물품대장, 현품대장 등)에 기재된 일체의 상품을 포함하며 대장이 없는 업체는 현물재고 위주로 파악한다.

한편 상품을 자기 창고 이외의 타인창고 (영업창고등)에 보관하고 있을 때에도 이를 전부 포함시켜야 한다.

단, 조사기준일 현재 수송도중에 있는 것은 도착지에서 파악한다.

11) 종업원

가 :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

「자영업주」란 사업체의 주인으로서 급여를 받지 않으면서 실제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무급가족종사자”란 자영업주와 가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업체의 업무에 무급으로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주당 24 시간 이상 종사한 자에 한함)
조직형태가 개인인 경우 반드시 무급가족 종사자가
1 인 이상 존재함을 명심해야 한다.

나 : 상용고용원

“상용고용원”이라 함은 일정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정 급여를
지급받고 고용된 자를 말하며 아래의 경우도 포함
한다.

i) 법인 사업체에서 일정한 급여를 받는役員(예 :
사장, 이사, 감사등)

그러나 이익 배당만 받는 주주는 제외한다.

ii) 자영 업주의 가족으로 일정한 급여를 받는 자

iii) 일정 급여 또는 판매 수수료를 받는 의무사원
판매원 및 배달원

다 : 임시고용원

“임시고용원”이라 함은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
하여 급여를 받고 임시 또는 일일로 고용된 자를
말한다.

12) 적요란

가) 상품 재고량이 전월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증가 또는 감소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증감요인을 밝혀 기입하여야 한다.

나) 휴업, 폐업, 이전, 소재불명 등의 유고내용을 자세히 기입한다.

4. 검토 및 제출

가. 검토

접수된 조사표가 결의 조회나 재조사 지시를 받지 않도록 반드시 다음 내용을 철저히 검토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 1) 조사 기준일 (년 월분) 조사구 및 사업체 번호 등의 기입누락 여부
- 2) 품목명 및 품목번호가 “ 지정품목 분류표 ”에 지정된 대로 기입되었나와 사업체별 지정상품 누락여부
- 3) 전월말 재고(이미 제출된 조사표에 기재된 것)와 금월초 재고의 일치 여부
- 4) 「 월초재고량 + 월중구입량 - 출하량 초과부족 보정량 = 월말 재고량」의 성립 여부
- 5) 조사된 숫자의 증감이 전월과 비교하여 심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적요란에 기입하여야 한다.
- 6) 기타 조직형태의 기입여부, 산업분류의 기입여부

나. 제출

- 1) 매 실사일의 조사표를 제출함에 있어서는 조사표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5매 내지 10매씩 분할하여 제출하되 늦

어도 그달의 15일까지는 담당조사표 전부가 지도원에게 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지도원은 이를 접수되는 대로 일괄 취합하여 중앙에 송부하되 담당구내 조사표 전부를 20일까지 중앙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조사표 제출이 늦어지면 지연 사유서를 조사원은 지도원에게 지도원은 중앙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록

1. 문제점 및 유의사항

6114 식료품

1. 밀가루의 지정단위는 “포대”가 아니고 “kg”이다.
1포대당 용량이 24kg, 22kg, 10kg, 3kg, 1kg 등 다양한 바 받드시 kg으로 환산보고할 것이며 민수용 뿐만 아니라 관수용도 포함 조사한다.
2. 식빵, 건빵, 비스킷, 껌, 설탕과자의 지정단위는 조사의 편의상 금액으로 조사한다. 이때 금액의 기준은 구입량, 출하량, 재고량, 모두 구입 가격으로 조사해야 하며 조사단위는 “천원”으로 보고한다.
3. 설탕과자에는 캔디, 드롭프스, 캐러멜, 젤리, 웨하스, 종합선물(각종포함), 초코렛 등이 포함된다. 단 스넥류(새우깡, 고구마깡, 양과깡)강정 유과, 다식, 정과등은 제외한다.
4. 분유 및 연유에 청정유나 시유(목장우유)를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청정유라 함은 원유를 냉각시킨 다음 저유를 거쳐 여과시킨 것을 말하며, 시유는 생우유를 살균처리한 원상 그대로의 우유이며, 연유는 생우유를 탈수 농축시킨 것

으로 시유와 구별되며, 분유는 완전 탈수시킨 분말된 것이다.

5. 해산물 통조림, 축산물 통조림(쇠고기 등) 농산물 통조림(과일 통조림 등)은 각각 구분하여 조사한다.
6. 냉동 해산물에 냉장이나 빙장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냉동 해산물은 일반적으로 -20°C 이하의 저온으로 급냉 각시켜 해산물 자체를 얼게하여 냉장 창고에 보관하는 것이며 냉장은 냉동을 시키지 않고 냉장창고에 보관되는 것이다. 또 빙장은 해산물과 얼음을 혼합하여 부패(변질)를 방지하는 것이다.
7. 통조림과 냉동 해산물의 지정단위는 "kg"이므로 관(Can) 또는 상자(C/S)로 보고해서는 안된다.
8. 식빵에는 전빵도 포함해야 한다.
9. 된장에는 춘장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춘장은 중화요리에 사용하는 검은 빛깔이다.
10. 엿에는 물엿도 포함되며 단위는 kg으로 보고한다.
11. 마가린에는 쇼팅도 포함되며 버터는 제외한다.
12. 이스트는 생이스트와 건조이스트(Dry-yeast)가 있는데 이를 모두 포함 조사한다.
13. 재제염에는 정제염도 포함 조사한다(단 천일염은 제외한다)

14. 구루타민산소다와 인공감미료는 별개의 품목이다. 구루타민산소다는 미원이나 미풍 등을 말하며 인공감미료에는 당원, 사카린 등이 포함된다.
15. 라면에는 쇠고기라면, 짜장면, 육계장라면, 해장국라면, 시락면 등이 포함되고 기름에 튀기지 않은 냉면, 하이면과 스낵류인 라면땅, 꼬빼이 등은 제외된다.

6115 음료품

1. 소주에는 포도주, 인삼주 및 과실주 등은 포함시키지 말 것이며, 과실주는 별개의 품목으로 조사하되 포도주, 법주, 인삼주, 로주, 곶감주, 매실주 등이 포함된다.
2. 청량음료는 사이다, 콜라 외에 환타, 오란씨 등도 있으니 각각 별개의 품목으로 조사할 것
3. 소주, 주정, 청주, 사이다, 콜라, 환타, 오란씨, 맥주의 지정 단위는 l 이다. 그러므로 사업체에서 “상자” 혹은 “병”으로 응답할 경우에는 이를 l 로 환산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1 l = 1,000 ml (1,000 cc)$

예

1. 소 주

가. 소주 2홉들이 (360 ml)

$$1 \text{ 상자는 } 40 \text{ 병이므로 } 360 \text{ ml (cc)} \times 40 \text{ 병} = 14,400 \text{ ml} \\ = 14.4 \text{ l 임.}$$

나. 소주 4홉들이 (640 ml)

$$1 \text{ 상자는 } 24 \text{ 병이므로 } 640 \text{ ml} \times 24 \text{ 병} = 15,360 \text{ ml} \\ = 15.36 \text{ l 임.}$$

2. 맥 주

가. 맥주대형 (640 ml)

$$1 \text{ 상자는 } 24 \text{ 병이므로 } 640 \text{ ml} \times 24 \text{ 병} = 15,360 \text{ ml} = 15.36 \text{ l 임.}$$

나. 맥주중형 (500 ml)

$$1 \text{ 상자} = 20 \text{ 병} = 10,000 \text{ ml} = 10 \text{ l 임.}$$

다. 맥주소형 (343 ml)

$$1 \text{ 상자} = 24 \text{ 병} = 8,232 \text{ ml} = 8.232 \text{ l 임.}$$

3. 청 주

가. 청주대형 (1.8 l)

$$1 \text{ 상자} = 10 \text{ 병} = 18,000 \text{ ml} = 18 \text{ l 임.}$$

나. 청주중형 (640 ml)

$$1 \text{ 상자} = 25 \text{ 병} = 16,000 \text{ ml} = 16 \text{ l 임.}$$

다. 청주중형 (620 ml)

$$1 \text{ 상자} = 25 \text{ 병} = 15,500 \text{ ml} = 15.5 \text{ l 임.}$$

4. 콜라, 사이다, 환타, 오란씨

콜라, 사이다, 환타, 오란씨는 제품에 따라 1병당 용량이 190ml, 236ml, 340ml, 770ml들이고 1상자당 12병 들이와 24병 들이로 다양하니 환산에 착오없도록 유의할 것.

6116 의약품 및 화장품

1. 화장품류를 조사할 때는 단위를 지정단위 "kg"으로 하여야 하며 개(個)라든가 금액 등으로 보고해서는 안 된다.
2. 향수는 화장용만 조사하고 식품용 향료는 제외한다.
3. 화장수에는 "밀크로손"을 포함하여서는 안되며 "스킨로손"만 포함하여 조사한다.
4. 화장크림에는 바니싱크림, 쿨드크림, 영양크림 등 각종 고형크림을 전부 포함하여 조사한다.
5. 화운데이손은 화장분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6. 머릿기름에는 포마드와 "헤어오일" (Hair Oil)도 포함시켜야 한다.
7. 분말세탁비누는 세탁비누에 포함하며 세탁용 합성세제는 그 형태가 분말이건, 고형이건, 액체가건 모두 합하여 조사한다.

6117 화학제품

1. 황산 (유산), 염산, 가성소다는 지정된 농도로 환산 조사하여야 한다. 즉, 황산에는 98%, 35%, 40% 등이 있는데 98%로 환산 보고하여야 하며 염산은 35%, 100% 등이 있는데 35%로 환산 보고할 것. 가성소다는 40%, 46%, 97%, 100% 등이 있는데 100%로 환산 보고할 것.
2. 압축산소는 지정단위가 m^3 인바 本으로 거래될 경우 m^3 로 환산 보고한다. 1本 = $7 m^3$
3. 아세치렌 가스는 kg 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本 (本) 또는 m^3 은 반드시 kg 으로 환산 보고할 것.
4. 페인트에는 수성 페인트와 유성 페인트가 있는바 모두 포함 조사한다.
5. 염료에는 직접염료, 산성염료, 유화염료, 형광염료등 그 종류가 다양하므로 이를 전부 포함하여 조사한다.
6. 설량은 대형 (450개피 정도임)을 기준으로 하여 조사한다.

6118 석유제품

1. 혼방합성석유방적사 (화학석유방적사) 는 석유화학 공정을

통하여 나프사를 원료로 생성된 일체의 섬유 즉, 재생섬유
반합성섬유를 제외한 섬유로 된 Fiber와 Filament 및
일체의 화학섬유가 방적할 수 있도록 제공정을 완료한
실(糸)의 상태를 말한다.

2. 순소모사 : 비교적 길고 잘 간추려진 섬유로서 짧은 섬유를 제거한 실이다. 이때 짧은 섬유는 순방모사가 된다.
3. 순소모직물 : 순소모사로 짠 직물, 고급지로서 신사복, 숙녀복에 사용한다.
4. 순방모사 : 장섬유를 간추리고 난 나머지 단섬유를 칭하며 합성섬유사가 10% 정도 포함된 것도 순방모사로 조사한다.
5. 순방모직물 : 순방모사로 짠 직물, 저급지로서 모포, 겨울용 오바, 홈스방에 사용한다.
6. 모혼방직물 : 모직물과 타직물이 혼방되었을 때를 말한다.
7. 혼방합성섬유직물 : 2개 이상의 섬유가 혼방되어 제조된 직물중 합성섬유가 50% 이상 차지하였을 때를 말한다.
(단, 모와 혼방일때 60% 이상, 견과 혼방일때 70% 이상)
8. 각종 화학섬유연사 : 2단사 이상을 꼬아 만든 실로서 합사(꼬지않고 합해놓은 실)와 다르다.
9. 면직물에는 광목(소창포함), 내광목, 옥광목, 당목, 면범포, 포플린, 융, 면복지를 포함한다. (단 골텐은 제외)

10. 섬유제품 중 지정단위가 m 로 되어있는 품목은 사업체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단위가 “Yds” “마” Roll 등 다양하므로 반드시 m 로 환산 보고한다.
 예 : 1. 직물폭이 36인치 길이 1yd는 $0.9144m \times 0.9144m = 0.8361m^2$ 가 된다.

11. 지정품목 중 사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별명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순합성섬유직물 : 나이론, 다후다, Jensey, 양교라, 폴리테스, 케미 칼, 트리코트

순견본직물 : 훌치기원단, 시보리원단

재생섬유직물 : 인견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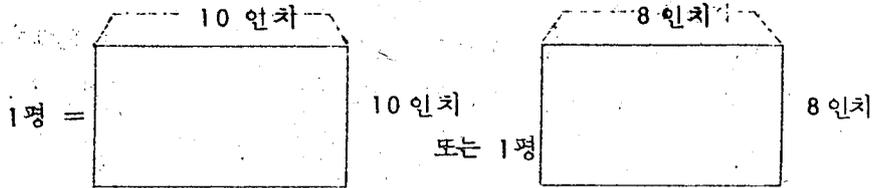
합성섬유방직사 : Stretch 사, Nylon 사, Filament 폴리 에스텔사, 테포린울직사, 카시미론사, 아크리릭사, 中細糸 (단 Fiber 는 제외)

6119 신, 가방, 의복 및 장신품

1. 소가죽은 원피가 아니고 원피를 가방이나 신발 등을 만들기 위하여 일정한 가공단계를 거친 상태를 말한다. 사업체에서 단위를 평 (坪) 또는 매 (枚) 로 사용하더라도 m^2 로 환산 보고한다.

$$1 \text{ 평} = \text{가로 } 10 \text{ 인치} \times \text{세로 } 10 \text{ 인치} = 0.0645 m^2$$

*단위환산법



사방 10 인치 = 0.0645 m²

사방 8 인치 = 0.0413 m²

1 枚 = 30 - 40 평

1 枚 = 3.3 m² (30 평)

1 枚 = 3.7 m² (40 평)

2. 비닐계 트렁크류의 경우 그 규격이 다양하므로 용적이 792 평방인치 (보통 12인치×11인치×6인치) 이상의 크기만을 조사하며 학생용 책가방이나 서류가방, 여행용가방은 "가방"으로 조사한다.

이에는 직물계 가방도 포함, 조사한다.

3. 핸드백에는 구슬백, 지갑 등은 제외되며 피혁이나 합성 피혁, P.V.C를 원자재로 만든 제품만 포함한다.

4. 타올; 일반세면용타올 (가로 80cm×세로 33cm 정도)

1매 (= 0.3 m²) 정도로서 제반타올제품도 포함한다. 단 시트카바 등 큰 타올은 별도로 보고하되 규격란에 규격을 기입할 것

5. 화섬사양말; 순면, 순모양말은 제외하고 화섬사 60% 이상

의 혼방사로 된 양말은 포함된다. 또한 팬티스타킹 및 스타킹도 화섬사양말에 포함 조사한다.

6. 메리야스외의 (Sweater 포함) 중 Y-Shirts, Nylon내의, 이너랙스, 부라우스, 동내의, 스텍스 등은 제외한다.

7. 운동화에는 훈련화 (통일화), 노동화등은 포함되고 방한화는 제외한다.

8. 플라스틱신에는 케미슈즈, 샌달, 스리퍼 등이 포함된다.

6120 광물재료

1. 휘발유에는 고급휘발유와 보통휘발유가 있는 바 구분치 말고 통합하여 조사할 것

2. 방카 A.B유는 중유에 포함 조사해야 되며 경질 중유도 중유에 포함 조사한다.

3. 윤활유에는 구리스를 제외할 것이며 윤활유 1 Pℓ=20ℓ로 환산된다.

4. 액화 석유가스 (L.P.G)는 프로판가스와 부탄가스를 통합하여 조사할 것이며,

프로판가스 1kg = 1.97ℓ
부탄가스 1kg = 1.73ℓ } 로 환산한다.

5. 봉강에는 철근, 환강, 환철, 각강, 반원강 등이 모두 포함된다.

6. 강판에는 상수도관, 구조판 등이 포함된다.
7. 알루미늄주물제품(주물을 부어 만든 것)은 알루미늄프레스 가공식기 및 용기(알루미늄판으로 만든 것)와 별개의 대 상품목이니 구별하여 조사한다.
8. 아연도철판은 박판에 아연을 도금한 것이며(일명합석), 석도철판은 강판의 양면에 주석을 도금한 것으로 특별극 연강의 박판임.
9. 아연도 철판의 규격별 중량은 다음과 같으니 환산에 참고할 것

0.23mm=3.34kg	0.45mm=6.32kg
0.25mm=3.5kg	0.55mm=7.69kg
0.30mm=4kg	0.70mm=9.7kg
0.33mm=4.73kg	0.91mm=12.34kg
0.35mm=5kg	

6121 일반기계가구

1. 합마, 드라이버는 공장용 수공구에 포함되며 송곳은 제외한다.
2. 석유 스토브(난로)는 곤로와 구별되어야 하며, 스토브만을 조사하고 곤로는 제외한다.

3. 발동기는 석유 및 경유발동기만 조사하고 디젤발동기는 제외한다.
4. 분무기는 농업용 등 집식 어깨거리형 (배낭형) 자동 및 수동식 분무기와 족담형 등 농업용을 조사하며 곤충 (파리, 모기) 을 제거하기 위한 소형분무기 (가정용펌프), 페인트 용, 세탁소에서 사용하는 스프리건, 등은 제외한다.
5. 절삭공구에서 쇠톱날과 종이나 유리 혹은 목공용 칼은 제외한다.
6. 동력펌프에는 자동식펌프와 양수기 (수리판개용) 를 포함 조사하며 수동식펌프 (우물용) 는 제외한다.
7. 발브는 건축용, 기계용, 공업용만 포함 조사하고 자동차 부속용 발브가이드, 엔진발브, 타이어튜브발브 및 수도꼭지는 제외한다.
8. 베어링은 볼베어링, 롤베어링, 스톱베어링 등 전부를 포함조사하나 자동차용 메탈베어링, 엔진베어링, 유니버살조인트 등은 제외한다.
9. 농기구 (경작용도구) 수공구는 금속제만 조사한다. 삽, 괭이, 호미, 쟁기, 쇠스랑, 곡괭이 등

6122 수송용 기계기구

1. 자동차용 스프링에는 시트(의자)용 스프링을 제외하여야 하며 완충장치로서 차체하부에 부착되는 스프링만 조사하여야 한다. 이에는 평형스프링과 코일형스프링이 있다.
2. 자전거는 완제품, 조립품 및 부속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완제품에 조립품을 포함조사 하며 부속품중 차체는 자전거로 간주하여 조사하여야 하고 자전거용 타이어가 독립된 상품으로 있을 때는 이를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
3. 리어카용 타이어는 자전거용 타이어에서 제외한다.

6123 정밀기계기구

1. 손목시계, 패종시계, 탁상시계 등은 각각 구분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전자시계는 패종시계에 포함 조사하되 별란으로 조사기록하고 특수용 시계(잠수 기록용 시계, 전기시계) 등은 제외한다.
2. 안경테에는 선글라스테도 포함 조사한다.

6124 전기통신기계기구

1. 전기스토브에는 전기콘로를 제외하여 조사한다.
2. 전기냉장고에는 아이스박스나 냉동기 등은 제외한다.
3. 백열전구는 15 W 이상의 조명용 전구만을 조사할 것이며, 아래와 같은 소형전구는 제외한다.
 - ① 자동차용 전구 ② 자전거용 전구 ③ 장식용 전구
 - ④ 두전구 ⑤ 영사용 전구 ⑥ 사진용 전구
 - ⑦ 항공기용 전구 ⑧ 전자계산기용 전구
 - ⑨ 기타 특수용 소형전구
4. 형광전구에는 직관 및 환형이 있는 바 양자를 포함 조사하되 다음것은 제외한다.
 - ①네온싸인 ②가스방전관 및 구 ③헬륨, 알곤가스
 - ④크세논 등 가스방전관
5. 전화기에는 체신 1호인 표준형 전화기 뿐만 아니라 수출용인 장식용 전화기 등도 조사하되 단, 인터폰이나 무전기 등은 제외한다.
6. 라디오에는 트랜지스터 라디오, 진공관 라디오, 카 (Car) 라디오 뿐만 아니라 신개발품인 디지털클럭라디오도 포함 조사한다.

6125 건축재료

1. 판유리는 지정규격인 2mm로 환산 보고하여야 한다.

만약 3mm, 100평, 200상자를 2mm로 환산하며

$200 \times \frac{3}{2} = 300$ 상자로 환산된다.

2. 타일은 일반적으로 사업체에서는 “평”을 쓰고 있으나 이를 지정단위인 m²로 환산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평 = 3.3 m²

3. 석면스레이트는 일반적으로 사업체에서 단위를 “환산매수”로 사용하고 있으니 지정단위인 m²로 환산 보고하여야 한다.

환산매수 1매 = 1.1 m²임.

환산매수는 모든 종류의 스테트를 소골스레이트(대골, 용마루)로 환산한 매수인 바 환산매수 1매당 1.1 m²를 곱해주면 된다.

4. 벽돌(소성품)은 각종 적벽돌을 전부 포함하여야 하며 휘장연와(오지벽돌)도 포함 조사할 것,

5. 합판은 규격이 다양한 바

다음 요령으로 환산한다.

규격			1매당 m^2	좌기 두께의 1 S/F당 m^2
가로 (F)	세로 (F)	두께 (mm)		
4	8	3.2	0.0095232	0.0002976
3	6		0.0052568	
4	8	3.6	0.00107136	0.0003348
3	6		0.0060264	
4	8	4	0.011904	0.000372
3	6		0.006696	
4	8	6	0.017857	0.000558
3	6		0.010044	

6. 각재, 판재, 합판, 하드보드 등은 지정단위가 m^2 인바 才, 매, B/F, S/F 등으로 조사치 말고 m^2 으로 환산보고 할 것. $1\text{才} \approx 0.00334m^2$, $1m^2 \approx 300\text{才}$,
 $1m^2 \approx 300\text{才}$, $1\text{B/F} = 0.002359m^2$
 $1m^2 = 423.77\text{B/F}$

6126 가구 건구 및 집기

1. 철제품과 목제품을 구분하여 기입한다.
2. 탁자, 티테이블 등은 식상에 포함한다.
3. 학생용 책걸상은 규격란에 반드시 기입한다.

4. 플라스틱 제품은 6126016 플라스틱 식기 및 용기, 6126017 플라스틱제 필립, 6126018 비닐장판, 6126019 플라스틱레저, 6126020 스티라스틱 파이프 및 관으로 구분조사한다.

5. 알루미늄 프레스 가공식기 및 용기는 알루미늄 주물제품과 혼동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물제품은 알루미늄 피를 녹여 부어서 만든 것으로 보통 두껍지만 깨지는 성질의 것으로 양은솔, 두꺼운주전자, 바케스, 및 밥그릇 등이며 프레스 제품은 깨지기 보다는 찌그러지는 것으로 두께가 얇고 주로 노란 칠을 한 것이다.

6127 종이 및 종이제품

1. 신문용지와 백상지는 일반적으로 사업체에서 갱지와 모조지로 호칭되고 있는바 지정품목명인 신문용지와 백상지로 보고할 것
2. 인쇄용지 및 필기용지를 중질지 또는 로루지로 부르는 경향이 있으나 지정품목 명칭을 사용하여 보고할 것이며 노트는 별개 품목이니 독립해서 보고할 것
3. 창호지의 지정단위는 "권"이며 1권은 2,000매 이다.
4. 판지를 마니라판지, 백판지, 회색판지 (등 여러가지로 구

분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구분치 말고 이들을 총칭해서 판지로 조사한다.

6128 철 물

1. 철선에는 경강선, 세선연선 등 특수한 용도로 만든 강한 철선을 포함하며 비철금속으로 된 ACSR(알미늄선), 진유선 등은 제외됨.
2. 쇠못에는 철선으로 만든 것은 모두 포함시키나 나사못, 황동못, 나무못 등의 특수못은 제외한다.
3. 철사망이라 함은 철사망, 망을 뜬것을 말하며 가시철망(유자철선 철조망), 스토프망, 선풍기망, 방충망 등은 제외한다.
4. 금속판 이음쇠에서 리벨트는 제외한다.
5. 볼트 및 너트에서 와샤와 리벨트를 제외한다.

6129 기타 일반도매업

1. 연필에는 각종 연필을 모두 포함하여 조사하며 색연필도 포함 조사한다.

환산 예를 보면

1 타 = 12 자루, 12 타(打) = 1 Gross = 144 자루

2. 스폰지의 지정단위는 m^3 이니 사업체에서 “평”이나 기타의 단위로 쓰고 있더라도 반드시 m^3 로 환산 보고한다. 환산이 불가능할 때는 규격을 자세히 기입한다.
3. 고무호스의 지정단위는 m 이니 사업체에서 권(卷)으로 보고하더라도 반드시 m 로 환산하도록 한다.

$$1 \text{ 권은 } 50 \text{ 척 (尺)} = 15.15 \text{ m}$$

4. 각종 고무벨트 (V형 고무벨트, 평고무벨트, 콘베아벨트)의 지정단위는 1,000 ply 이다.
- 그러므로 사업체에서 자(尺) 또는 m 로 보고하더라도 반드시 1,000 ply 로 환산 보고한다.

$$1 \text{ ply} = 0.33 \text{ m} / \text{ply}$$

1 ply 는 길이 1 자, 폭 1 인치, 두께 1.4 mm 이다.

5. 기계용 가죽벨트의 지정단위는 m / ply 이다.

$$1 \text{ m} / \text{ply} = \text{폭 } 1 \text{ 인치} \times \text{두께 } 1.4 \text{ mm} \times \text{길이 } 1 \text{ m 이다.}$$

Ⅱ . 재고 통계 조사 지정 품목 분류표 (유통부문)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6114	식 료 품		6114904	냉동해산물	kg
6114102	설탕	kg	6114905	마아가린	"
6114201	밀가루	"	6114906	엿 (물엿포함)	"
6114202	전분	"	6114907	식용포도당	"
6114301	제재염	"	6114908	이스트	"
6114302	된장	"	6114909	사료	"
6114303	간장	kg	6114910	농산물통조림	"
6114304	구루타민산소다	kg	6114911	축산물통조림	"
6114305	인공감미료	"	6115	음 료 품	
6114401	식빵	천원	6115101	주정	ℓ
6114402	전빵	"	6115102	소주	"
6114403	비스킷	"	6115103	맥주	"
6114404	라면	kg	6115104	청주 (합성청주포함)	"
6114405	설탕과자	천원	6115105	과실주	"
6114406	점	"	6115201	사이다	"
6114901	분유 및 연유	kg	6115202	콜라	"
6114903	물고기 및 해산물 통조림	"			

품목번호	품목명	단위	품목번호	품목명	단위
6115203	오란씨	ℓ	6117006	압축산소	m ³
6115204	환 타	"	6117007	아세틸렌 가스	kg
6115205	미린다	"	6117010	염 료	"
6116 의약품 및 화장품			6117011	카바이트	"
6116101	의약품 (한약제외)	천원	6117016	살충제	"
6116201	화장비누	kg	6117017	살균제	"
6116202	세탁비누	"	6117020	페인트	ℓ
6116203	세탁용 합성세제	"	6117021	와니스	"
6116204	향 수	"	6117022	에나멜	"
6116205	화장수	"	6117023	락 카	"
6116206	화장크림	"	6117024	그리세린	kg
6116207	화장백분	"	6117025	다이아마이트	"
6116208	머릿기름	"	6117026	도화선	m
6116209	연치약 및 차분	"	6117027	뇌 관	개
6117 화 학 제 품			6117030	성냥	갑
6117001	황산 (유산 98% 환산)	kg	6117033	인쇄용 잉크	kg
6117002	염산 (35% 환산)	"	6118	섬 유 품	
6117003	가성소다	"	6118102	솜	kg
6117004	소다회	"	6118103	면 사	"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6118104	순소모사	kg	6118210	로오프	kg
6118105	순방모사	"	6118211	어 망	"
6118106	혼방소모사	"	6119 신, 가방, 의복 및 장식품		
6118108	나이론사	"	6119104	고무신	족
6118109	포리에스텔사	"	6119105	고무장화및 우화	"
6118110	아크리릭사	"	6119106	운동화	"
6118111	재생섬유방적사 (스포츠사 및 비스코스인견사 포함)	"	6119107	소가죽	m
6118112	아세 테이트사	"	6119108	프라스 틱신 (센달, 캐미 슈즈, 스리퍼 포함)	족
6118113	혼방합성 섬유 방적사	"	6119201	비닐제 드렁크 (가죽제포함)	개
6118116	어망사	"	6119202	핸드백	"
6118117	화학섬유연사	"	6119203	가방 (학생 용 포함)	"
6118201	면직물	m	6119301	베리야스외의	매
6118202	순본견직물	"	6119501	모 포	"
6118203	견혼방직물	"	6119901	타 울	"
6118204	순소모직물	"	6119902	화섬사양말	족
6118205	순방모직물	"	6119903	이 불	매
6118206	모혼방직물	"			
6118207	재생섬유직물	"			
6118208	순합성 섬유 직물	"			
6118209	혼방합성 섬유 직물	"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6120	광 물 재 료		6120329	알미늄주물제품	kg
6120102	휘발유	kl	6121	일반기계기구	
6120103	항공유	"	6121001	공장용수공구	개
6120104	경 유	"	6121002	농기구(경작용도구)	"
6120105	중 유	"	6121003	발동기	대
6120106	방카c유	"	6121006	인력탈곡기	"
6120107	등 유	"	6121007	동력탈곡기	"
6120108	윤활유	"	6121008	분무기	"
6120110	액화석유가스 (L.P.G)	"	6121014	절삭공구	개
6120312	형 강	kg	6121026	동력펌프(양수기)	대
6120313	봉강(철근)	"	6121028	개봉틀	"
6120315	강 관	"	6121029	발 브	개
6120316	강 관	"	6121030	베어링	kg
6120317	주철판	"	6121032	석유스토브	"
6120320	아연도철판	"	6122	수송용 기계기구	
6120321	석도철판	"	6122006	자동차용 스프링	개
6120324	전기동	kg	6122007	자동차용 피스톤	"
6120325	연 피	"	6122008	자전거	대
6120326	아연피	"	6122010	자동차용 타이어	본
6120327	구리판 및 관	"	6122011	자동차용튜브	"
6120328	알미늄판	"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6122012	자전거용타이어	본	6124014	콘 벤서 (전력용제외)	개
6122013	재생 타이어	"	6124015	지항기(통신용)	"
6123	정밀기계기구		6124016	전기냉장고	대
			6124017	선 풍기	"
6123001	안경테	개	6124018	전기스토브	"
6123002	손독시계	"	6124019	에어콘디셔너	"
6123003	벽시계(패종)	"	6124020	합성수지절연전선	kg
6123004	탁상시계	"	6124021	통신및전력용케이블	"
6124	전기·통신기계기구		6124022	백열전구	개
			6124023	형광전구	"
6124001	전 동 기	HP	6124024	축전기	"
6124002	변압기	KVA	6124025	건전지	"
6124003	고압축전기	"	6124026	소켓트	"
6124004	저압축전기	MF	6124027	전 축	대
6124006	라디오수신기	대	6124028	세탁기	"
6124007	T.V수상기	"	6125	건축재료	
6124008	브라운관	개			
6124009	녹음기	대	6125001	각 재	m
6124010	레코트판	매	6125002	판 재	"
6124011	전화기	대	6125004	합 판	"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6125005	하드보드	m ²	6126014	유리식기	개
6125006	시멘트	M ²	6126016	프라스틱식기및용기	kg
6125007	백시멘트	"	6126017	프라스틱제 필립	"
6125008	판유리	상자	6126018	버닐장판	"
6125009	벽돌 (소성품)	매	6126019	프라스틱레저	"
6125010	타 일	m ²	6126020	프라스틱파이 및 판	"
6125012	소석회	M ²			
6125014	흙 관	본	6127	종이 및 종이 제품	
6125019	석면슬레이트	m ²			
6126	가구건구 및 집기		6127002	신문용지	kg
6126003	목제책상	개	6127003	백상지	"
6126004	목제식당	"	6127004	인쇄용지및필기용지	"
6126005	목제의자	"	6127005	크라프트지	"
6126007	철제책상	"	6127006	아트지	"
6126008	철제의자	"	6127007	박엽지	"
6126009	철제캐비넷	"	6127009	판 지	"
6126010	알미늄프레스 가공 식기 및 용기	kg	6127011	창호지	권 2,000매
6126011	스텐레스스틸식기	"	6127012	장판지	m ²
6126012	도자식기	개	6127012	화장지	kg
			6128	철 물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6128001	건축용 샷슈	개	6129001	연 필	타
6128005	철 선	kg	6129002	볼 펜	"
6128006	나동선	"	6129003	만연필	개
6128007	쇠 못	"	6129004	교과서 및 서적	권
6128008	와이어로오프	"	6129005	잡지및정기간행물	권
6128009	철사망(철사그물)	"	6129014	각종 고무벨트	1,000ply
6128010	용접봉	"	6129015	고무 호오스	m
6128011	볼트 및 너트	"	6129016	스폰지	m ²
6128012	금속관이음쇠	"	6129017	기저용카죽벨트	m/ply
6129	기타 일반 도매업		6129019	노 트	권

III. 도량형 환산표

길이

	척 (尺)	정 (町)	리 (里)	미 (米)	촌 (寸)	척 (尺)	마 (Ma)	리 (里)
척	1	0.00277	0.000077	0.30803	11.9805	0.994211	0.381403	0.000188
정	360	1	0.027777	109.09	4,294.99	357,916	119,306	0.067784
리	12,960	36	1	3,927.27	154,619	12,884.9	4,394.99	2.44033
미 (m)	3.3	0.009166	0.000254	1	39.3707	3.28089	1.09363	0.000621
촌 (in)	0.083818	0.000232	0.000006	0.025399	1	0.08333	0.27777	0.000015
피트 (ft)	1.00582	0.002798	0.00007	0.804974	12	1	0.33333	0.000189
마 (Yds)	3.01746	0.008381	0.000232	0.914383	36	3	1	0.000568
리	5,810.73	14.752	0.409.779	1,609.31	63,360	5,280	1,760	1

	돈 (噸)	관 (貫)	근 (斤)	그램 (g)	온스 (oz)	파운드 (lbs)	돈 (鎰)	돈 (兩)
돈	1	0.001	0.00625	3.75	0.132277	0.008267	0.000003	0.000004
관	1,000	1	6.25	3,750	132.277	8.26782	0.00869	0.004188
근	160	0.16	1	600	21.1641	1.32277	0.00059	0.000661
그램 (g)	0.266666	0.000266	0.001666	1	0.035273	0.002204	0.000009	0.000001
온스 (oz)	7.55984	0.007559	0.047249	28.3495	1	0.0625	0.000027	0.000031
파운드 (lbs)	120,958	0.120958	0.755988	453,592	16	1	0.000446	0.0005
돈 (鎰)	270,946	307,946	1,693.41	1,016,047	35,840	2,240	1	1.12
돈 (兩)	241,916	241,916	1,511.97	907,178	32,000	2,000	0.892857	1

	흡 (습)	승 (卍)	투 (卍)	석 (石)	임방미 (㎡)	리 터 (ℓ)	개롱(영)	개롱(미)
흡	1	0.1	1.01	0.001	0.00018	0.18089	0.089682	0.047656
승	10	1	0.1	0.01	0.001803	1.8039	0.896185	0.476567
투	100	10	1	0.1	0.018039	18.039	8.96815	4.76567
석	1,000	100	10	1	0.18039	180.39	89.6815	47.6567
임방미 (㎡)	5,548.52	554,852	55,485.2	5,548.52	1	1,000	219,979	264,1866
리 터 (ℓ)	5,548.52	0.55485	0.05548	0.005548	0.001	1	219,975	0.264186
개롱 (영)	25.2006	2.52006	0.252006	0.0252	0.004545	4.54596	1	1,201
개롱 (미)	20.9833	2.09833	0.209833	0.209833	0.003785	3.78543	0.882699	1

가. 주요단위해설

- 1) ppm : 용액중의 물질함량을 표시할 때 중량 백만분율을 표시하는 약호이다.
- 2) d (테니어, Denier) : 450 m의 장사(長絲)로 0.05g이면 테니어임.
- 3) 's (빈수·番數) : 견사 1파운드의 길이 즉 4,436.889 야드를 전환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됨.

(1) $4,436,889 / (\text{테니어} \times 840) = \text{면사 빈수}$

$\therefore \text{테니어} = 5282 / \text{면사 빈수}$

(840야드는 I's 면사의 길이)

(2) $4,436,889 / (\text{테니어} \times 560) = \text{소모사 빈수}$

$\therefore \text{테니어} = 7,923 / \text{소모사 빈수}$

(560야드는 I's 소모사의 길이)

(3) $4,436,889 / (\text{테니어} \times 256) = \text{방모사 빈수}$

$\therefore \text{테니어} = 17,331.6 / \text{방모사 빈수}$

(256야드는 I's 방모사의 길이)

소모사는 영국식으로는 560야드 1파운드의 것을 1빈수라함.

예컨대 32빈수 단사(單絲)의 경우는 $1/32's$.

쌍사(雙絲)의 경우는 $2/32's$ 로 됨.

4) 추 (錘) : 조방기 (粗紡機), 정방기 (精紡機), 연사기 (捻絲機) 등 스핀들을 사용하는 기계의 양을 나타냄.

면방 "링" 정방기는 1일 16시간 가동으로 20번수를 0.5파운드정도 생산하는 능력을 가짐, 소모울, 정방기로는 48번수를 0.4파운드로 생산함.

5) 배수톤 (排水屯) : 배의 수면 밑의 체적과 동일한 체적을 가진 물의 중량 바닷물일 때는 $35 f^3$ 민물일 때는 $36 f^3$ 가 1배수량 톤 균함의 크기를 표시하는데 사용된다.

6) D/W (Dead weight) : 화물을 만재한 상태에서 선박자체의 무게를 뺀 중량 2,240파운드를 1중량톤으로 한다.

7) G/T (Gross, Tonnage) : 배의 용적을 표시하는 단위로 선폭×길이×높이의 f^3 1,000 f^3 를 1G/T으로 한다.

8) 노트 (Knot) : 배가 1시간에 1해리 (1,853 m)를 달리는 속력

9) S/F $\frac{1}{8}$ (Square Feet $\frac{1}{8}$ inch) : 합판의 체적을 나타내는 단위로서 1feet×1feet $\frac{1}{8}$ 인치의 체적을 말한다. 이를 m^3 로 환산하면 $0.3048m \times 0.3048m \times 0.0254m \times \frac{1}{8} = 0.00027 m^3$ 이다.

- [주] 1. 1세 1 치 × 1 치 × 12자
 2. 1석 180L
 3. 1근 1.3 D o s
 4. 1판 8.27 "
 5. 1인 400 "
 6. 1평 3.3 m²
 7. 1평 1.5 평방척
 8. 목재 3 분판 1 평은 9 세
 4 분판 " 12 세
 5 분판 " 15 세

재고통계조사지침

1977

1. 조사 개요	3
가. 조사목적	3
나. 현행	3
다. 조사의 법적근거	3
라. 조사의 범위	3
마. 조사내용	3
바. 조사결과보고	3
사. 조사대상 및 단위	4
아. 조사시기	6
자. 조사방법	6
2. 실사 및 면접	7
가. 실사	7
나. 면접	9
3. 조사서류 기입요령	10
가. 일반적인 유의사항	10
나. 항목별 기입요령	10
4. 검토 및 제출	14
가. 검토	14
나. 제출	14

부록 I.	문계점 및 유의사항	19
부록 II.	재고통계조사 지정품목 분류표	34
부록 III.	도량형 환산표	40
부록 IV.	재고통계 조사표	45

I. 조 사 개 요

가. 조사목적

이 조사는 국내의 주요물자에 대한 보유량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경기 예측, 물가정책 및 물자수급 등의 계획 수립 또는 평가 자료를 제공함에 있다.

나. 연혁

1973. 11월 재고통계과 신설로 74. 1월부터 유통 부문 (도매업 부문) 의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왔으며 75. 8월 조사통계국 직제개편으로 상업통제과에서 흡수, 실시하고 있다.

다. 조사의 법적근거

이 조사는 통계법 (법률 제 980 호 개정법률 제 1215 호) 에 의하여 지정통계 제 26호로 지정된 통계이다.

라. 조사범위

한국표준 산업분류 61 도매중 611 일반도매업체중에서 법인 및 종업원 5인이상인 사업체

마. 조사내용

이 조사는 지정된 도매업체의 취급 상품중 매월 지정된 품목에 대한 구입량, 출하량, 재고량과 종업원 수 등을 조사한다.

바. 조사결과 보고

1) 물량통계표 작성

업종별, 품목별, 지역별 등의 물량통계표를 계표과와 협의하여 매월작성 이용기관에 송부.

2) 지수작성

물량통계 자료를 기초로 업종 및 품목별 판매업자 구입, 출하 및 채고지수 작성

사. 조사대상 및 단위

1) 조사대상

이 조사의 산업상의 조사 범위는 한국 표준 산업분류에 의한 일반 도매업이며 조사 대상 사업체는 일반 도매업체 중에서 지정된 사업체이다. 각 조사원이 담당할 조사 대상 사업체는 각 조사구별 사업체 명부에 명시되어 있으며 별도 지시에 의하여 보완 한다.

※ 산업 분류상 도매와 소매업의 구분

가) 도매업

* 도매업이란 주로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i) 소매업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ii) 광공업, 운수통신업, 관공서, 학교, 병원 및 기타 산업용 사용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iii) 광업 및 제조업체가 다른 장소에서 자기제품을 도매하는 경우

* 제조와 판매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회사나 출장소등은 관리 또는 주된 산업인 광업 및 제조업으로 분류하므로 도매업에 포함하지 않는다.

iv) 개인 또는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상품매매의 중개나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단 본 조사에서는 제외됨)

* 도매업에 포함되는 사업체의 중요한 형태는 다음과 같다.

i) 도매상: 일반도매상, 산업용배급업, 도매를 주로하는 상사회사, 광공업회사의 도매사업소

ii) 하청제조도매상: 스스로는 상품을 만들지 않고 자기 소유의 원재료를 하청공장 등에 지급해서 제품을 만들게 한후 이를 자기 명의로 도매하는 사업체

iii) 대리상, 중개상: 주로 수수료를 받고 상품매매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는 사업체 (단 본 조사에서는 제외됨)

※ 그러나 대리점의 명칭을 가지고 실제로는 상품의 대리업무는 하지않고 별개의 경영으로 도매를 하는 경우는 일반도매업으로 취급한다.

iv) 무역상, 무역중개상(오파상):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을 사업으로 하는 경우와 중개를 사업으로 하는 경우 (단 본 조사에서는 제외됨)

나) 소매업

소매업은 주로 개인용 가정용 소비를 위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조사단위

조사의 단위는 개개의 사업체(점포)이다. 여기서 사업체란 "상품의 매매가 영업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개개의 물리적 장소"를 말하며 하나의 구획을 차지하고 있는 장소이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별도로 취급한다.

가) 동일구내에 둘 이상의 사업체가 있을 때에는 경영주가 같은 사람인 경우는 하나의 단위로 취급하지만 경영주가 다른 별개의 사업체로 취급한다. 여기서 동일구내라 함은 일반적으로 울타리 같은 것을 가진 장소로 관계자 이외에는 자유로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장소를 말한다. 동일구내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임금 및 경영장부가 같은 경우에만 하나의 사업체로 본다.

나) 가까운 거리의 두개 이상의 장소에서 경영을 하고 있을지라도 임금이나 경영장부가 같은 경우는 하나의 사업체로 본다. 이때 가까운 거리란 나란히 있거나 길 건너 마주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극히 좁은 범위로 한정한다.

아. 조사시기

조사의 기준 시점은 매월 말이며 조사의 기준기간은 그달의 1일 부터 말일까지의 1개월로 한다.

자. 조사방법

면접식 타계주의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사업체는 우편 조사한다.

2. 실 사 및 면 접

가. 실사

1) 조사원은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개개의 사업체에 대해서 그 위치를 비롯하여 사업체의 업종에 대한 특성, 동향 및 종업원수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주 및 판매책임자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조사에 임해야 한다.

2) 조사원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담당조사구내의 지정사업체를 순방하여 조사표의 기입을 완료하도록 할 것이며 응답자의 부재등에 사유로 인하여 조사표를 작성치 못하였거나 조사표 기입상에 잘못이 발견된 사업체는 10~12일까지 사이에 재 방문하여 조사표의 작성을 완료토록 한다.

3) 조사원은 별도 배부된 「조사기록부」에 다음 조사를 위하여 참고가 될 사항을 기록하여 두어야 하며 이 조사기록부와 기타 사항을 참고로 하여 조사의 누락이나 오기 또는 잘못된 조사가 없이 조사표가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4) 관할 구역내에 신규사업체 및 사업체 이동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다음 요령에 의거 반드시 조사표 적요란에 명시함과 아울러 별도의 「변동사항 보고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가) 응답불응 사업체

조사대상 사업체가 비협조적이거나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는 조사의 목적과 자료의 효율성을 이해 시키고 비밀이 보장되는 점을 강조하여 계속 상대방의 협조를 촉구하여야 하며 2, 3차 방문시에도 불응할 경우는 지도

원을 경유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불확실한 신고를 하는 사업체

사업주나 대리인이 불확실한 신고를 하거나 허위신고를 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업체의 규모나 종업원수 업종 및 전월사항을 참고하여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다) 폐업, 전업, 휴업 사업체

폐업 사업체에 대하여는 관할동장 및 지도원 확인서를 첨부 보고하고 휴업인 경우에는 별도 지시가 없는한 계속 조사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라) 이전사업체

조사대상 사업체가 이전하였을 경우에는 이웃이나 동사무소에 문의하는등 최선의 방법에 의하여 그 이전지를 찾아내도록 하여야 하며 조사 표상에는 새로 이전된 곳의 소재지 전화번호등 모든 변경사항을 기입하고 적요란에 "이전"이라 표시한다.

1) 담당조사구 내로 이전된 경우에는 계속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11) 자기가 담당하는 조사구 외로 사업체가 이전하였을 경우에는 그달에 한하여 조사표를 작성 제출한다.

마) 명칭변경사업체

조사대상 사업체가 명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조사표상에 변경 후 명칭을 기입하고 적요란에는 "명칭변경"이라 표시하여 제출할 것이며 사업체 명부도 변경된 내용을 수정 보완한다.

바) 신규사업체

1) 색출대상 사업체

관할 조사구내에 재고통계조사 대상품목 취급업체로서 조사대상

사업체 명부에 누락된 법인 도매업체나 종업원 5인 이상의 개인 도매업체가 발견될 시에는 「신규사업체 색출 보고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1) 추가대상 사업체

추가대상 사업체에 대한 실사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사업체를 조사대상 사업체 명부에 추가하여 매월 조사를 실시한다.

나. 면접

본 조사는 사업체의 비밀 사항인 월중판매량, 구입량, 월말 재고량등을 조사하게 되므로 사업주의 협조를 얻기가 어려워 조사상 애로가 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조사대상처를 방문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특히 유의하여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 1) 조사원은 대상사업체를 방문하여 사업주 또는 실무자와의 면접을 요청할 때에는 단정한 용모와 품행을 유지하고 응답자에게 좋은 인상을 주도록 해야 하며 정중함 태도로 자기 소개를 먼저한 다음에 조사원 중을 제시한다.
- 2) 인사가 끝나면 조사표를 제시하고 조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동시에 본 조사는 지정통계로서 통계법에 의하여 대상 사업체는 신고의무가 있으며 비밀이 엄수 된다는 것을 잘 설명하여야 한다.
- 3) 조사내용은 각 사업체 및 개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므로 방문객이나 손님일 때는 그 자리에서 질문하여도 좋은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 4) 조사표에 기입될 내용의외의 질문을 하거나 응답이 애매한 경우 유도 질문을 해서는 안된다.
- 5) 조사내용은 타업체와 이해 관계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비밀을 타업체 부설해석원 안된다.

3. 조사표류 기입요령

가. 일반적인 유의사항

- 1) 지정된 품목이 계절에 따라 취급실적이 없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품목번호, 품목명 당위는 매월 보고한다. 단 사업체에서 앞으로 취급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경우 그 내용을 자세히 보고하여 조사중지를 받을 수 있다.
- 2) 대상사업체에서 기 대상품목외에 새로운 지정품목을 취급할 시는 이것도 추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나. 항목별 기입요령

1) 조사구 및 사업체 번호

담당 사업체 명부에 부여된 조사구 번호와 사업체 번호를 별도 지시가 없는한 고정시켜 기입한다.

2) 사업체명 및 소재지

가) 사업체명이라 함은 사업체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말하며 이는 사업체의 구체적인 명칭을 기입한다.

나) 일정한 사업체 명칭이 없을 때는 대표자(또는 사업주)의 성명만을 기입한다.

다) 사업체의 소재지는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실제 장소를 말하며 시도의 명칭부터 번지수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기입한다.

라) 사업체명 및 대표자명은 정자로 된 한자를 기입하여야 한다.

마) 전화번호란을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며 누락시켜서는 안된다.

3) 조직형태

해당란에 0표 한다.

(이 때 법인은 등기부에 법인 등기가 된 업체를 말한다.)

4) 품목번호 및 품목명

품목번호란에는 「지정품목분류표」 좌측에 있는 숫자를 기입한다.

5) 규격 및 단위

각 품목의 규격은 지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품목의 규격을 그대로 적으면 된다. 그러나 동일 명칭의 품목이라도 규격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은 규격별로 구분하여 기입하고 여러가지 규격품을 단일규격으로 환산 가능할 때에는 단일규격으로 환산하여 기입한다. 각 품목의 단위는 「지정품목분류표」에 지정된 단위를 사용하며 그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단위와 상이할 때는 지정된 단위로 환산하여 기입한다.

6) 월초 재고량(전월말 재고량)

그달의 초일에 사업체에서 보유하였던 상품의 재고량 즉 전월에서 이월된 재고량을 말한다. 따라서 전월에 조사보고된 조사표상의 월말재고량과 금월의 월초재고량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7) 월중 구입량

그달중에 외부로부터 현금 또는 외상으로 구입한 량과 타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량을 말한다.

8) 월중 출하량(판매량등)

그달중에 실제로 그 사업체의 현물관리를 떠난 부분의 총량을 말한다.
즉 가) 외부에 판매한 것(외상판매포함)

나) 건본 또는 선물로서 증정한 것.

다) 그 사업체에서 사무용 또는 급여용으로 출고한 것 등의 합계량을 말한다. 따라서 월말까지 출하하기로 제약된 경우라도 상품이 인도(출고)되지 않았으면 출하로 보지 않는다.

9) 과부족 보정량

그달중에 화재, 도난등의 재난에 의하여 결손 처분된 량을 말하며 판매한 제품중 반송 등에 의하여 발생한 증감량도 이에 포함된다. 증감은 「+」와 「-」의 부호로 표시하여 적요란에 반드시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10) 월말재고량

본 월말재고량은 재보 통제조사의 핵심 조사 항목이므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월말 재고량이란 그달의 말일에 그 사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체의 상품 보유량을 말하며 여기에는 이미 판매되었으나 미출고된 부분도 포함된다.

따라서 자기소유 상품이던 타인소유 수탁품 미출고분등 상품이 상품대장(또는 물품대장 현품대장 등)에 기재된 일체의 상품을 포함하며 대장이 업는 업체는 현물재고 위주로 파악한다.

한편 상품을 자기 창고 이외의 타인창고(영업창고등)에 보관하고 있을 때에도 이를 전부 포함시켜야 한다.

단, 조사 기준일 현재 수송도중에 있는 것은 도착지에서 파악한다.

11) 종업원

가: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

「자영업주」란 사업체의 주인으로서 급여를 받지 않으면서 실제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무급가족 종사자」란 자영업주와

가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업체의 업무에 무급으로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주당 24 시간 이상 종사한 자에 한함)

조직형태가 개인인 경우 반드시 무급가족 종사자가 1인 이상 존재함을 명심해야 한다.

나 : 상용고용원

• 상용고용원 • 이라 함은 일정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정 급여를 지급받고 고용된 자를 말하며 아래의 경우도 포함한다.

1) 법인 사업체에서 일정한 급여를 받는役員 (예 : 사장, 이사, 감사등)

그러나 이익 배당만 받는 주주는 제외한다.

11) 자영 업주의 가족으로 일정한 급여를 받는 자

111) 일정 급여 또는 판매 수수료를 받는 의무사원 판매원 및 배달원

다 : 임시고용원

• 임시고용원 • 이라 함은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급여를 받고 임시 또는 일일로 고용된 자를 말한다.

12) 적요란

가) 상품 재고량이 전월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증가 또는 감소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증감요인을 밝혀 기입하여야 한다.

나) 휴업, 폐업, 이전, 소재불명 등의 유고내용을 자세히 기입한다.

4. 검 토 및 제 출

가. 검 토

접수된 조사표가 질의 조회나 재조사 귀사를 받지 않도록 반드시 다음 내용을 철저히 검토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 1) 조사 기준일(년 월분) 조사구 및 사업체 번호 등의 기업누락 여부
- 2) 품목명 및 품목번호가 「지정품목 분류표」에 지정된대로 기입되었나와 사업체별 지정상품 누락여부
- 3) 전월말 재고(이미 제출된 조사표에 기재된 것)와 금월초 재고의 일치 여부
- 4) 「월초재고량 + 월중구입량 - 출하량 + 과부족 보정량 = 월말재고량」의 성립 여부
- 5) 조사된 숫자의 증감이 전월과 비교하여 심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적요란에 기입하여야 한다.
- 6) 기타 조직형태의 기입여부, 산업분류의 기입여부

나. 제 출

- 1) 매 실사일의 조사표를 제출함에 있어서는 조사표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5매 내지 10매씩 분할하여 제출하되 늦어도 그달의 15일까지는 담당조사표 전부가 파도원엘로 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 2) 지도원은 이를 접수되는 대로 일괄 취합하여 중앙에 송부하되 담당구내 조사표 전부를 20일까지 중앙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조사표 제출이 늦어지면 지연 사유서를 조
사원을 지도원에게, 지도원은 중앙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록

부 록 I . 문제점 및 유의사항

6111 농산물 및 음식료품 도매업

1. 밀가루의 지정단위는 "포대"가 아니고 "kg"이다.
1 포대당 용량이 24kg, 22kg, 10kg, 3kg, 1kg 등 다양한 바 반드시 kg으로 환산보고할 것이며 민수용 뿐만 아니라 관수용도 포함 조사 한다.
2. 식빵, 전빵, 비스켓, 견, 설탕, 과자의 지정 단위는 조사의 편의상 금액으로 조사한다. 이때 금액의 기준은 구입량, 출하량, 재고량, 모두 투입 가격으로 조사해야 하며 조사단위는 "천원"으로 보고한다.
3. 설탕과자에는 캔디, 드롭프스, 캐러멜, 젤리, 웨하스, 종합선물(각종포함), 초코렛등이 포함된다. 단 스낵류(새우깡, 고구마깡, 양파깡)강정유과, 다식, 정과등은 제외한다.
4. 분유 및 연유에 청정유나 시유(목장우유)를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멸균유라 함은 원유를 냉각시킨 다음 저유를 거쳐 여과시킨것을 말하며, 시유는 생우유를 살균처리한 원상 그대로의 우유이며, 연유는 생우유를 탈수 농축시킨 것으로 시유와 구별되며, 분유는 완전 탈수시킨 분말된 것이다.
5. 해산물 통조림, 축산물 통조림(쇠고기등) 농산물 통조림(과일통조림) 등은 각각 구분하여 조사한다.
6. 냉동 해산물에 냉장이나 빙장을 포함 시켜서는 안된다. 냉동 해산물은 일반적으로 -20°C 이하의 저온으로 급냉각시켜 해산물 자체를 얼게하여 냉장창고에 보관하는 것이며 냉장은 냉동을 시키지 않고 냉장창고에 보관되는 것이다. 또 빙장은 해산물과 얼음을 혼

합하여 부패(변질)를 방지하는 것이다.

7. 통조림과 병동 해산물의 지정단위는 "kg"이므로 관(Can) 또는 상자(C/S)로 보고 해서는 안된다.
8. 식빵에는 쯤빵도 포함해야 한다.
9. 된장에는 춘장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춘장은 중화요리에 사용하는 검은 빛깔이다.
10. 엷에는 물엷도 포함되며 단위는 kg으로 보고 한다.
11. 마가린에는 쇼팅도 포함되며 버터는 제외한다.
12. 이스트는 생 이스트와 건조이스트(Dry-yeast)가 있는데 이를 모두 포함 조사한다.
13. 재체염에는 정제염도 포함 조사한다. (단 천일염은 제외한다)
14. 구루타민산소다와 인공감미료는 별개의 품목이다. 구루타민산소다는 미원이나 미풍 등을 말하며 인공감미료에는 당원, 사카린 등이 포함된다.
15. 라면에는 쇠고기라면, 짜장면, 육계장라면, 해장국라면, 서락면 등이 포함되고 기름에 튀기지 않은 냉면, 하이면과 스낵류인 라면땅, 쏘파이 등은 제외된다.
16. 소주에는 포도주, 인삼주 및 과일주 등은 포함시키지 말 것이며, 과일주는 별개의 품목으로 조사하되 포도주, 벌주, 인삼주, 로주, 교량주, 매실주 등이 포함된다.
17. 청량음료는 사이다, 콜라 외에 환타, 오란씨, 미린다 등 기타 음료수는 주스에 포함하여 조사할 것.
18. 소주, 주정, 청주, 맥주, 사이다, 콜라, 주스의 지정 단위는 l이다. 그러므로 사업체에서 "상자" 혹은 "병"으로 응답할 경우에는

이들ℓ로 환산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1ℓ = 1,000 ml (1,000 cc)

예

1. 소 주

가. 소주 2홉들이 (360 ml)

1상자는 40병이므로 $360 \text{ ml(cc)} \times 40 \text{ 병} = 14,400 \text{ ml} = 14.4 \text{ ℓ}$ 임.

나. 소주 4홉들이 (640 ml)

1상자는 24병이므로 $640 \text{ ml} \times 24 \text{ 병} = 15,360 \text{ ml} = 15.36 \text{ ℓ}$ 임.

2. 맥 주

가. 맥주 대형 (640 ml)

1상자는 24병이므로 $15,360 \text{ ml} = 15.36 \text{ ℓ}$ 임.

나. 맥주 중형 (500 ml)

1상자 = 20병 = $10,000 \text{ ml} = 10 \text{ ℓ}$ 임.

다. 맥주 소형 (343 ml)

1상자 = 24병 = $8,232 \text{ ml} = 8.232 \text{ ℓ}$ 임.

3. 청 주

가. 청주 대형 (1,8ℓ)

1상자 = 10병 = $18,000 \text{ ml} = 18 \text{ ℓ}$ 임.

나. 청주 중형 (640 ml)

1상자 = 25병 = $16,000 \text{ ml} = 16 \text{ ℓ}$ 임.

다. 청주 소형 (620 ml)

1상자 = 25병 = $15,500 \text{ ml} = 15.5 \text{ ℓ}$ 임.

4. 콜라, 사이다, 환타, 오란씨

콜라, 사이다, 환타, 오란씨는 제품에 따라 1병당 용량이 190 ml, 236 ml, 340 ml, 770 ml, 들이가 있고 1상자당 12병 들이와 24병 들이로 다양하나 환산에 착오 없도록 유의할 것.

6112 섬유 및 의류도매업

1. 혼방합성섬유 방적사(화학섬유방적사)는 섬유화학 공정을 통하여 나프샤를 원료로 생성된 일체의 섬유 즉, 재생섬유, 반합성섬유를 제외한 섬유로 된 Fiber 와 Filament 및 일체의 화학섬유가 방적할수 있도록 제공정을 완료한 실(糸)의 상태를 말한다.
2. 순소모사 : 비교적 길고 잘 간추려진 섬유로서 짧은 섬유를 제거한 실이다. 이때 짧은 섬유는 순방모사가 된다.
3. 순소모직물 : 순소모사로 짠 직물, 고급저로서 신사복, 숙녀복에 사용한다.
4. 순방모사 : 장섬유를 간추리고 난, 나머지 단섬유를 쳐하며 합성섬유사가 10% 정도 포함된 것도 순방모사로 조사한다.
5. 순방모직물 : 순방모사로 짠 직물, 저급저로서 모포, 저울용 오바, 홈스팡에 사용한다.
6. 모혼방직물 : 모직물과 ~~화~~ 직물이 혼방되었을 때를 말한다.
7. 혼방합성섬유직물 : 2개 이상의 섬유가 혼방되어 제조된 직물중 합성섬유가 50% 이상, 차지하였을 때를 말한다.
(단, 모와 혼방일때 60%이상, ~~화~~ 직물과 혼방일때 70%이상) 이한다.
8. 각종 화학섬유연사 : 2단사 이상을 꼬아 만든 실로서 합사(꼬지 않고 합해놓은 실)와 다르다.

9. 편직물에는 광목(소창포함), 내광목, 육광목, 당목, 면범포, 포플린, 용, 면복지를 포함한다. (단, 골멘은 제외)

10. 섬유제품 중 지정단위가 m^2 로 되어있는 품목은 사업체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단위가 "Yds" "마" "Roll" 등 다양하므로 반드시 m^2 로 환산 보고한다.

예1 : 직물폭이 36인치 길이 1yds 는 $0.9144 m \times 0.9144 = 0.8361 m^2$ 가 된다.

11. 지정품목 중 사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별명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순합성섬유직물 : 나이론, 다후다, Jersey, 양고라, 폴리텍스, 케미칼, 트리코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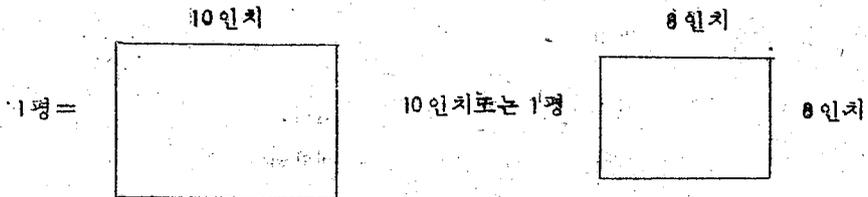
순견본직물 : 롤치기원단, 시보리원단

재생섬유직물 : 인견양단

합성섬유방적사 : Stretch사, Nylon사, Filament 포리에스텔사, 웨포럼울직사, 카시미론사, 아크리릭사, 中細糸 (단 Fiber는 제외)

12. 소가죽은 원피가 아니고 원피를 가방이나 신발등을 만들기 위하여 일정한 가공단계를 거친 상태를 말한다. 사업체에서 단위를 평(坪) 또는 매(枚)로 사용하더라도 m^2 로 환산 보고한다.

1평 = 가로 10인치 × 세로 10인치 = $0.0645 m^2$
※ 단위환산법



사방 10 인치=0.0645 m²

1 매=30-40 평 (坪)

1 매=3.7 m² (40 평)

(枚)

사방 8 인치=0.0413 m²

1 매=3.3 m² (30 평)

(枚)

13. 비닐제 트랭크류의 경우 그 규격이 다양하므로 용적이 792 평방인치 (보통 12 인치×11 인치×6 인치) 이상의 크기만을 조사하며 학생용 책가방이나 서류가방, 여행용가방은 "가방"으로 조사한다.

이에는 직물제 가방도 포함. 조사한다.

14. 핸드백에는 구슬백, 지갑 등은 제외되며 피혁이나 합성피혁, P, V, C 를 원자재로 만든제품만 포함한다.

15. 타올, 일반세면용타올 (가로 80cm×세로 33cm정도)

1매 (=0.3 m²) 정도로서 제반타올제품도 포함한다. 단, 시트카바 등 큰 타올을 별도로 보고하되 규격란에 규격을 기입할 것.

16. 화섬사양말: 순면, 순모양말은 제외하고 화섬사 60% 이상의 혼방사로 된 양말은 포함된다. 또한 팬티스타킹 및 스타킹도 화섬사양말에 포함 조사한다.

17. 메리야스 외의 (Sweater 포함) 중 Y-Sweaters, Nylon 패쉬, 이너텍스, 부라우스, 동내의, 스텝스 등은 제외한다.

18. 운동화에는 훈련화 (통일화), 노동화 등은 포함되고 방한화는 제외한다.

19. 프라스틱신에는 캐미슈즈, 샌달, 스리퍼 등이 포함된다.

6113 전기기기 도매업

1. 전기스토브에는 전기곤로를 제외하여 조사한다.

2. 전기냉장고에는 아이스 박스나 냉동기 등은 제외한다.

3. 백열전구는 15 W이상의 조명용 전구만을 조사할 것이며, 아래와 같은 소형전구는 제외한다.

- 1) 자동차용 전구 2) 자전거용 전구 3) 장식용 전구
- 4) 두전구 5) 영사용 전구 6) 사진용 전구
- 7) 항공기용 전구 8) 전자계산용 전구 9) 기타 특수용 소형전구

4. 형광전구에는 직관 및 환형이 있는바 양자를 포함 조사하되 다음 것은 제외한다.

- 1) 네온싸인 2) 가스방전관 및 구
- 3) 헬륨, 알곤가스 4) 크세논등 가스방전관

5. 전화기에는 체신 1호인 표준형 전화기뿐만 아니라 수술용인, 장식용 전화기등도 조사하되 단, 인터폰이나 무전기 등은 제외한다.

6. 라디오에는 트랜지스터 라디오, 진공관 라디오, 카(car) 라디오 뿐만 아니라 신개발품인 디지털합성라디오도 포함 조사한다.

6.1.14 의약품 및 화학제품 도매업

- 1. 화장품류를 조사할 때는 단위를 지정단위 "kg"으로 하여야 하며 개(個) 리든가 금액등으로 보고해서는 안된다.
- 2. 향수는 화장용만 조사하고 식품용 향료는 제외한다.
- 3. 화장수에는 "밀크로손"을 포함하여서는 안되며 "스킨로손"만 포함하여 조사한다.
- 4. 화장크림에는 바니싱크림, 콜드크림, 영양크림등 각종 고풍크림을 전부 포함하여 조사한다.
- 5. 화운데이손은 화장팩분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 6. 머릿기름에는 포마드와 "헤어오일"(Hair oil)도 포함시켜야 한다.

7. 분말세탁비누는 세탁비누에 포함하며 세탁용 합성세제는 그 형태가 분말이건, 고형이건, 액체가건 모두 합하여 조사한다.
8. 황산(유산), 염산, 가성소다는 지정된 농도로 환산 조사하여야 한다. 즉. 황산에는 98%, 35%, 40% 등이 있는데 98%로 환산 보고하여야 하며 염산은 35%, 100% 등이 있는데 35%로 환산 보고할 것. 가성소다 40%, 46%, 97%, 100% 등이 있는데 100%로 환산 보고할 것.
9. 압축산소는 지정단위가 m³인바 본(本)으로 거래될 경우 m³로 환산 보고 한다. 1本=7m³
10. 아세치렌 가스는 kg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원(原) 또는 m³를 반드시 kg으로 환산 보고할 것.
11. 페인트에는 수성페인트와 유성페인트가 있는 바 모두 포함 조사한다.
12. 염료에는 직접염료, 산성염료, 유화염료, 형광염료등 그 종류가 다양하므로 이를 전부 포함하여 조사한다.
13. 성냥은 대형(450개외 정도임)을 기준으로 하여 조사한다.
14. 휘발유에는 고급휘발유와 보통휘발유가 있는바 구분치 말고 통합하여 조사할 것.
15. 방카 A,B 유는 중유에 포함 조사해야 되며 경질 중유도 중유에 포함 조사한다.
16. 윤활유에는 구리스를 제외할 것이며 윤활유 1Pℓ = 20ℓ 로 환산 된다.
17. 액화 석유가스(L.P.G)는 프로판가스와 부탄가스를 통합하여 조사할 것이며

프로판가스 1kg=1.97ℓ
 부탄가스 1kg=1.73ℓ } 로 환산한다.

6115 기계 도매업

1. 발동기는 석유 및 경유발동기만 조사하고 디젤 발동기는 제외한다.
2. 분무기는 농업용 등짐식, 어깨거리형(배낭형), 자동 및 수동식 분무기와 족담형등 농업용을 조사하며 곤충(파리, 모기)를 제거하기 위한 소형 분무기(가정용 펌프), 페인트용, 세탁소에서 사용하는 스프리건 등은 제외한다.
3. 동력펌프에는 자동식 펌프와 양수기(수리관개용)를 포함 조사하며 수동식 펌프(우물용)는 제외한다.
4. 발브는 건축용, 기계용, 공업용만 포함 조사하고 자동차 부속용 발브 가이드, 엔진발브, 타이어튜브발브 및 수도꼭지는 제외한다.
5. 베어링은 볼베어링, 롤베어링, 스라스트베어링등 전부를 포함 조사하나 자동차용 메탈베어링, 엔진베어링, 유니버살조인트 등은 제외한다.
6. 농기구(경작용 도구)수공구는 금속제만 조사한다. 삽, 팽이, 호미, 쟁기, 쇠스랑, 곡괭이 등
7. 안경테에는 선글라스테도 포함 조사한다.
8. 고무호스의 지정단위는 m 이니 사업체에서 권으로 보고 하더라도 반드시 m 로 환산하도록 한다.
1 권은 50 척(尺) = 15.15 m
9. 각종 고무벨트(V형고무벨트, 평고무벨트, 콘베아벨트)의 지정단위는 1,000 PLY 이다. 그러므로 사업체서 자(尺) 또는 m 로 보고 하더라도 반드시 1,000 PLY 로 환산 보고한다.
1 PLY = 0.33 m /PLY
1 PLY 는 길이 1자, 폭 1인치, 두께 1.4 mm 이다.
10. 기계용 가죽벨트의 지정단위는 m /PLY 이다.

1 m/FLY = 폭 1 인치 × 두께 1.4 mm × 길이 1 m 이다.

6116 철물 및 가정용 기기 도매업

1. 알미늄 주물제품(주물을 부어 만든 것)은 알미늄 프레스 가공식기 및 용기(알미늄판으로 만든 것)와 별개의 대상품목이니 구별하여 조사한다.
2. 합마, 드라이버는 공장용 수공구에 포함되며 송곳은 제외한다.
3. 석유스토브(난로)는 콘로와 구별되어야 하며, 스토브만을 조사하고 콘로는 제외한다. 단, 전기스토브는 별개 대상 품목이니 구별하여 조사한다.
4. 절삭공구에서 쇠틱날과 종이나 유리 혹은 목공용 칼은 제외한다.
5. 알미늄 프레스 가공식기 및 용기는 알미늄 주물제품과 혼동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물제품은 알미늄괴를 녹여 부어서 만든 것으로 보통 두껍지만 깨지는 성질의 것으로 양은술, 두꺼운 주전자, 바케스 및 밥그릇 등이며 프레스 제품은 깨지기 보다는 찌그러지는 것으로 두께가 얇고 주로 노란칠을 한 것이다.
6. 금속판 이음쇠에서 리벨트는 제외한다.
7. 볼트 및 너트에서 와사와 리벨트를 제외한다.

6117 건축재료 도매업

1. 판유리는 지정 규격인 2 mm 로 환산 보고하여야 한다.
만약 3 mm, 100 평, 200 상자를 2 mm로 환산하면
 $200 \times \frac{3}{2} = 300$ 상자로 환산된다.

2. 타일은 일반적으로 사업체에서는 "평"을 쓰고 있으나 이를 지정 단위인 m^2 로 환산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text{ 평} = 3.3 m^2$$

3. 석면스레이트는 일반적으로 사업체에서 단위를 "환산매수"로 사용하고 있으니 지정단위인 m^2 로 환산보고하여야 한다.

$$\text{환산매수 } 1 \text{ 매} = 1.1 m^2 \text{ 임.}$$

환산매수는 모든 종류의 스테트를 소골스레이트(대골, 용마루)로 환산할 매수인 바 환산매수 1매당 $1.1 m^2$ 를 곱해주면 된다.

4. 벽돌(소성품)은 각종 적벽돌을 전부 포함하여야 하며 휘장연와(오지벽돌)도 포함 조사할 것.

5. 합판은 규격이 다양한 바, 다음 요령으로 환산한다.

규격			1 매 당 m^2	과기 두께의 1 S/F 당 m^2
가로(F)	세로(F)	두께(mm)		
4	8	3.2	0.0095232	0.0002976
3	6		0.0053568	
4	8	3.6	0.0010136	0.0003348
3	6		0.0060264	
4	8	4	0.011904	0.000372
3	6		0.006696	
4	8	6	0.017857	0.000558
3	6		0.010044	

6. 각재, 판재, 합판, 하드보드 등은 지정단위가 m^2 인바 才, 매, B/F, S/F 등으로 조사치 말고 m^2 으로 환산 보고할 것.

$$1 \text{ 才} \approx 0.00334 \text{ m}^2, 1 \text{ m}^2 \approx 300 \text{ 才},$$

$$1 \text{ m}^2 \approx 300 \text{ 才}, 1 \text{ B/F} = 0.002359 \text{ m}^2$$

$$1 \text{ m}^2 = 423.77 \text{ B/F}$$

6118 금속 도매업

1. 봉강에는 철근, 환강, 환철, 각강, 반원강 등이 모두 포함된다.
2. 강판에는 상수도관, 구조관 등이 포함된다.
3. 아연도 철판은 박판에 아연을 도금한 것이며(일명 합석)석도철판을 강판의 양면에 주석을 도금한 것으로 특별 극연강의 박판임.
4. 아연도 철판의 규격별 중량은 다음과 같으니 환산에 참고할 것.

0.23 mm = 3.34 kg	0.45 mm = 6.32 kg
0.25 mm = 3.5 kg	0.55 mm = 7.69 kg
0.30 mm = 4 kg	0.70 mm = 9.7 kg
0.33 mm = 4.73 kg	0.91 mm = 12.34 kg
0.35 mm = 5 kg	

5. 철선에는 경강선, 새선연선 등 특수한 용도로 만든 강판 철선을 포함하며 비철금속으로 된 ACSR(알루미늄선)진유선 등은 제외됨.
6. 쇠못에는 철선으로 만든 것은 모두 포함시키나 나사못, 황동못, 나무못 등의 특수못은 제외한다.
7. 철사망이라 함은 철사로 망을 뜬 것을 말하며 가시철망(유자철선, 철조망), 스토프망, 선풍기망, 방충망 등은 제외한다.

8. 강 관

강관의 종류에는 그 제조법 용도 직경의 대소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강관의 지정 단위가 %인바 각 대상 사업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m 를 %로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관의 호칭	m 를 %로 환산하는 법	관의 호칭	m 를 %로 환산하는 법
BS 백관 4	$m \times 1.23 + 1,000 = \%$	BS 흑관 4	$m \times 1.23 + 1,000 = \%$
5	$m \times 1.59 + 1,000 = \%$	BS 흑관 5	$m \times 1.59 + 1,000 = \%$
1	$m \times 2.46 + 1,000 = \%$	BS 흑관 1	$m \times 2.46 + 1,000 = \%$
1+	$m \times 3.17 + 1,000 = \%$	BS 흑관 1+	$m \times 3.17 + 1,000 = \%$
1+	$m \times 3.65 + 1,000 = \%$	BS 흑관 1+	$m \times 3.65 + 1,000 = \%$
2	$m \times 5.17 + 1,000 = \%$	BS 흑관 2	$m \times 5.17 + 1,000 = \%$
2+	$m \times 6.63 + 1,000 = \%$	BS 흑관 2+	$m \times 6.63 + 1,000 = \%$
3	$m \times 8.64 + 1,000 = \%$	3	$m \times 8.64 + 1,000 = \%$
4	$m \times 12.4 + 1,000 = \%$	4	$m \times 12.4 + 1,000 = \%$
KS 백관 4	$m \times 1.25 + 1,000 = \%$	5	$m \times 16.7 + 1,000 = \%$
5	$m \times 1.6 + 1,000 = \%$	6	$m \times 19.8 + 1,000 = \%$
1	$m \times 2.46 + 1,000 = \%$	KS 흑관 4	$m \times 1.25 + 1,000 = \%$
1+	$m \times 3.16 + 1,000 = \%$	5	$m \times 1.6 + 1,000 = \%$
1+	$m \times 3.63 + 1,000 = \%$	1	$m \times 2.46 + 1,000 = \%$
2	$m \times 5.12 + 1,000 = \%$	1+	$m \times 3.16 + 1,000 = \%$
2+	$m \times 6.34 + 1,000 = \%$	1+	$m \times 3.63 + 1,000 = \%$
3	$m \times 8.49 + 1,000 = \%$	2	$m \times 5.12 + 1,000 = \%$
5	$m \times 17.2 + 1,000 = \%$	2+	$m \times 6.34 + 1,000 = \%$
6	$m \times 19.2 + 1,000 = \%$	3	$m \times 8.49 + 1,000 = \%$

관의 호칭	m를 %로 환산하는 법	관의 호칭	m를 %로 환산하는 법
KS 흑관 4	$m \times 12.3 \div 1,000 = \%$	구조관 1a	$m \times 3.6 \div 1,000 = \%$
" 5	$m \times 17.2 \div 1,000 = \%$	" 1b	$m \times 3.63 \div 1,000 = \%$
" 6	$m \times 19.2 \div 1,000 = \%$	" 2	$m \times 5.12 \div 1,000 = \%$
구조관 1	$m \times 2.46 \div 1,000 = \%$	" 3	$m \times 8.49 \div 1,000 = \%$

6119. 기타 일반 도매업

1. 자동차용 스프링에는 시트(의자)용 스프링을 제외하여야 하며 완충장치로서 차체 하부에 부착되는 스프링만 조사하여야 한다.
이에는 평형 스프링과 코일형 스프링이 있다.
2. 자전거는 완제품, 조립품 및 부속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완제품에 조립품을 포함 조사하며 부속품 중 차체는 자전거로 간주하여 조사하여야 하고 자전거용 타이어가 독립된 상품으로 있을 때는 이를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
3. 리어카용 타이어는 자전거용 타이어에서 제외한다.
4. 손목시계, 패종시계, 탁상시계 등은 각각 구분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전자시계는 패종시계에 포함 조사하되 별란으로 조사기록 하고 특수용 시계(잠수기록용 시계, 전기시계) 등은 제외한다.
5. 철제품과 목제품을 구분하여 기입한다.
6. 탁자, 티 테이블 등은 식상에 포함한다.
7. 학생용 책 걸상은 규격란에 반드시 기입한다.
8. 플라스틱 제품은 6116306 플라스틱 식기 및 용기, 6119908 플라스틱 제 필립, 6119906 비닐 장판, 6119907 플라스틱 레저, 6117904 플라스틱

파이프 및 관으로 구분 조사한다.

9. 신문 용지와 백상지는 일반적으로 사업체에서 갱지와 모조지로 호칭되고 있는 바 지정 품목명인 신문용지와 백상지로 보고할 것.
10. 인쇄용지 및 필기용지를 종절지 또는 로루지로 부르는 경향이 있으나 지정 품목 명칭을 사용하여 보고할 것이며 노트는 별개 품목이나 독립해서 보고할 것.
11. 창호지의 지정 단위는 권이며 1권은 2,000매이다.
12. 판지를 마니라 판지, 백판지, 회색판지 등 여러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구분치 말고 이들을 총칭해서 판지로 조사한다.
13. 연필에는 각종 연필을 모두 포함하여 조사하며 색연필도 포함 조사한다. 환산 예를 보면,
1타 = 12자루 12타(打) = 1 Gross = 144자루
14. 스폰지의 지정 단위는 개 이니 사업체에서 병이나 기타의 단위로 쓰고 있더라도 반드시 개로 환산 보고한다. 환산이 불가능 할 때는 규격을 자세히 기입한다.

부록Ⅱ. 재고통계조사 지정품목 분류표

품목 번호	품목명	단위	품목 번호	품목명	단위
6111 농산물 및 음식료품 도매업			6111 902	재제염	kg
			903	된장	•
			904	간장	kg
			905	구루타민 산소다	kg
6111 101	밀가루	kg	906	인공감미료	•
102	전분	•	907	라면	•
6111 401	병등해산물	•	908	분유 및 연유	•
601	쇠빵	천원	909	마아가린	•
602	전빵	•	910	엿	•
603	비스켓	•	911	식용포도당	•
604	설탕과자	•	912	이스트	•
605	점	•	913	사료	•
701	주점	ℓ	914	농산물통조림	•
702	소주	•	915	축산물통조림	•
703	맥주	ℓ	916	물고기 및 해산물통조림	•
704	청주	ℓ	6112 섬유 및 의류 도매업		
801	과실주	•			
802	사이다	•			
803	콜라	•			
804	쥬스	•	6112 101	면사	kg
901	설탕	kg	102	순소모사	•

품목 번호	품목명	단위	품목 번호	품목명	단위
6112 103	순방모사	kg	6112 502	운동화	족
• 104	혼방소모사	•	• 503	고무장화및우화	•
• 105	나이론사	•	• 504	프라스틱신	•
• 106	포리에스텔사	•	• 601	비닐제트링크	개
• 107	아크리릭사	•	• 602	핸드백	•
• 108	재생섬유방적사	•	• 603	가방(학생용포함)	•
• 109	아세테이트사	•	• 901	솜	kg
• 110	혼방합성섬유방적사	•	• 902	소가죽	m
• 111	어망사	•	• 903	화섬사양말	족
• 112	화학섬유연사	•	• 904	마닐라로오프	kg
• 201	면직물	m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6113 전기기기 도매업</p> </div>		
• 202	순본견직물	•			
• 204	순소모직물	•			
• 205	순방모직물	•			
• 206	모혼방직물	•	6113 101	라디오수신기	대
• 207	재생섬유직물	•	" 102	T-VV수상기	"
• 208	순방합성섬유직물	•	" 103	녹음기	"
• 209	혼방합성섬유직물	•	" 104	전기냉장고	"
• 301	이불	매	" 105	선공기	"
• 302	모포	•	" 106	전기스토브	"
• 303	타올	•	" 107	에어콘디셔너	"
• 401	메리야스외의	•	" 108	전축	"
• 501	교무신	족	" 109	제탁기	"
			" 201	전동기	HP

품목번호	품목명	단위	품목번호	품목명	단위
6113 202	변압기	KVA	6114 301	화장비	kg
" 203	고압축전기	"	" 302	세탁비	"
" 204	저압축전기	MF	" 303	세탁용합성세제	"
" 205	전화기	대	" 401	살충제	"
" 206	문세서 (전력용제외)	개	" 402	살균제	"
" 207	저항기 (통신용)	"	" 501	페인트	ℓ
" 208	합성수재절연전선	kg	" 502	와너스	"
" 209	통신및전력용케이블	kg	" 503	애나멜	"
" 210	백열전구	"	" 504	락카	"
" 211	형광전구	"	" 505	염료	kg
" 212	축전지	"	" 901	황산	"
" 213	전전지	"	" 902	염산	"
" 214	소싸트	"	" 903	가성소다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6114 의약품 및 화학제품 등 도매업 </div>			" 905	압축산소	m
6114 101	의약품	천원	" 906	아세틸렌가스	kg
" 201	향수	kg	" 907	카바이트	"
" 202	화장수	"	" 908	그리세린	"
" 203	화장크림	"	" 909	다이아마이트	"
" 204	화장백분	"	" 910	도화선	m
" 205	머릿기름	"	" 911	뇌관	개
" 206	치약 및 치분	"	" 912	성냥	대형 450개 이하
			" 913	인쇄용양크	개 이하
			" 914	휘발유	ℓ

품목번호	품목명	단위	품목번호	품목명	단위
6114 915	항 공 유	kg	6116 102	금 속 관 이 음 쇠	kg
" 916	경 유	"	" 201	석 유 스토브	대
" 917	중 유	"	" 301	알미늄 주물제품	kg
" 918	방 카 C 유	"	" 302	알미늄 프레스 가공 식기 및 용기	"
" 919	등 유	"	" 303	스텐레스 스틸식기	"
" 920	윤 활 유	"	" 304	도 자 식 기	개
" 921	액 화 석 유 가 스 (L.P.G.)	"	" 305	유 리 식 기	개
6115 기계도매업			" 306	프라스틱식기및용기	kg
6115 101	농기구 (경작용도구)	개	" 901	공 장 용 수 공 구	개
" 102	발 동 카	대	" 902	철 삭 공 구	개
" 105	분 무 기	"	" 903	재 봉 틀	대
" 106	동 력 펌프 (양수기)	"	6117 건축재료 도매업		
" 401	각 종 고무 셀 트	1,000 Pcy	6117 101	자 재	m
" 402	기 계 용 가 죽 셀 트	1,000 Pcy	" 102	판 재	"
" 403	발 브	개	" 103	합 판	"
" 404	베 아 링	kg	" 104	하 드 보 드	"
" 501	안 경 테	개	" 201	시 멘 트	%
" 901	고 무 호 스	m	" 202	백 시 멘 트	"
6116 철물 및 가정용 기기도매업			" 203	소 석 회	"
6116 101	발 트 및 낫트	kg	" 301	벽 들 (소성품)	매
			" 501	판 유 리 상자	
			" 901	타 일	m

품 목 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목 번호	품 목 명	단 위
6117 903	석 면 슬 레 이 트	㎡	6119	가 타 일 반 도 매 업	
" 904	프 라 스틱 파 이 프 및 관	kg			
6118 금 속 도 매 업			6119 201	자 전 거	대
6118 101	봉 강 (철근)	%	" 202	자 전 거 용 타 이 어	대
" 202	강 관	"	" 301	자 동 차 용 스프링	개
" 301	강 관	"	" 302	자 동 차 용 피 스톤	개
" 302	주 철 관	"	" 303	자 동 차 용 타 이 어	본
" 303	아 연 도 철 관	"	" 304	자 동 차 용 튜브	"
" 304	석 도 철 관	"	" 305	재 생 타 이 어	"
" 305	구 리 관 및 관	kg	" 401	신 문 용 지	kg
" 306	알 미 늘 관	"	" 402	백 상 지	"
" 901	전 축 용 샷 슈	개	" 403	인쇄용지 및 필기용지	"
" 902	철 선	kg	" 404	크 라 프 트 지	"
" 903	나 동 선	"	" 405	아 트 지	"
" 904	쇠 못	"	" 406	박 업 지	"
" 905	와 이 어 로 향 프	"	" 407	판 지	"
" 906	철 사 봉	"	" 408	창 호 지	kg
" 907	용 접 기 봉	-	" 409	장 관 지	㎡
" 908	형 강	kg	" 410	화 장 지	kg
" 909	전 기 동	kg	" 411	노 트	권
" 910	연 피	"	" 601	교 과 서 및 서 적	"
" 911	아 연 피	"	" 602	잡 지 및 정 기 간 행 물	"

품목 번호	품목명	단위	품목 번호	품목명	단위
6119 701	목제 책상	개	6119 904	만년필	개
" 702	목제 식상	"	" 905	스폰지	개
" 703	목제의자	"	" 906	비닐장판	kg
" 704	철제 책상	"	" 907	프라스틱 레저	"
" 705	철제의자	"	" 908	프라스틱 필립	"
" 706	철제 캐비닛	"	" 909	손목시계	개
" 901	어망	kg	" 910	벽시계 (패종)	"
" 902	연필	파	" 911	탁상시계	"
" 903	볼펜	타	" 912	레코드판	매

부록Ⅲ·도량형 환산표

길이	척 (尺)	정 (町)	리 (里)	미 (米)	촌 (寸)	척 (尺)	마 (馬)	리 (里)
척	1	0.00277	0.00007	0.30303	11.9305	0.994211	0.831403	0.000188
정	360	1	0.02777	109.09	4,294.99	357,916	119,306	0.067784
리	12,960	36	1	3,927.27	154,619	12,884.9	4,394.99	2.44033
미 (m)	3.3	0.009166	0.000254	1	39.3707	3.28089	1.09363	0.000621
촌 (寸)	0.083818	0.000232	0.000006	0.025399	1	0.08333	0.27777	0.000015
마 (馬)	1.00582	0.002753	0.00007	0.304974	12	1	0.33333	0.000189
마 (Yds)	3.01746	0.008381	0.000233	0.914383	36	3	1	0.000568
리	5,1310.73	14,752	0.409,779	1,609.31	63,360	5,280	1,760	1

	돈(噸)	관(貫)	근(斤)	그램(𪛇)	온스(oz)	파운드(lbs)	돈(鎰)	돈(兩)
돈	1	0.001	0.00625	7.75	0.132277	0.008267	0.000003	0.000004
관	1,000	1	6.25	3,750	132,277	8.26732	0.00369	0.004133
근	160	0.16	1	400	21,164.1	1.32237	0.00059	0.000661
그램(𪛇)	0.26666	0.000266	0.001666	1	0.035273	0.002204	0.000009	0.000001
온스(oz)	7.55984	0.007559	0.047249	38.3495	1	0.0625	0.000027	0.000031
파운드(lbs)	120,958	0.120958	0.755988	453,592	16	11	0.000446	0.0005
돈(鎰)	270,946	307,946	1,693.41	11,034,047	35,840	2,240	1	1.12
돈(兩)	241,916	241,916	1,511.97	907,178	32,000	2,000	0.892857	1

	합(合)	승(升)	두(斗)	석(石)	입방미(㎥)	리터(ℓ)	개롱(甬)	개롱(미)
합	1	0.1	1.01	0.001	0.00018	0.18039	0.039682	0.47656
승	10	1	0.1	0.01	0.001803	1.8039	0.396185	0.476567
두	100	10	1	0.1	0.018039	19.039	3.96815	4.76567
석	1,000	100	10	1	0.18039	180.39	39.6815	47.6567
입방미(㎥)	5,543.22	554.352	55.4352	5.54352	1	1,000	219,979	264.1866
리터(ℓ)	5,543.52	0.55435	0.05543	0.005543	0.001	1	0.219975	0.264186
개롱(甬)	25.2006	2.52006	0.252006	0.0252	0.004545	4.54596	1	1.201
개롱(미)	20.9833	2.09833	0.209833	0.209833	0.003785	3.78543	0.832699	1

가. 주요단위해설

1) ppm : 용액중의 물질함량을 표시할 때 중량 백분율을 표시하는 약호이다.

2) d (데니어, Denier) : 450 m의 장사(長糸)로 0.05 g이면 데니어입.

3) $^{\circ}/s$ (번수, 番數) : 전사 1파운드의 길이 즉 4,436,889 야드를 전환인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됨.

$$(1) 4,436,889 / (\text{데니어} \times 840) = \text{면사 번수}$$

$$\therefore \text{데니어} = 5282 / \text{면사 번수}$$

(840야드는 1 $^{\circ}/s$ 면사의 길이)

$$(2) 4,436,889 / (\text{데니어} \times 560) = \text{소모사 번수}$$

$$\therefore \text{데니어} = 7,923 / \text{소모사 번수}$$

(560야드는 1 $^{\circ}/s$ 소모사의 길이)

$$(3) 4,436,889 / (\text{데니어} \times 256) = \text{방모사 번수}$$

$$\therefore \text{데니어} = 17,331.6 / \text{방모사 번수}$$

(256야드는 1 $^{\circ}/s$ 방모사의 길이)

소모사는 영국식으로는 560야드 1파운드의 것을 1번수라 함.

예컨대 32번수 단사(單糸)의 경우는 $1/32^{\circ}/s$.

쌍사(雙糸)의 경우는 $2/32^{\circ}/s$ 로 됨.

4) 추(錘) : 조방기(組紡機), 정방기(精紡機), 연사기(捻糸機) 등 스핀들을 사용하는 기계의 양을 나타냄.

면방* 링 정방기는 1일 16시간 가동으로 20번수를 0.5파운드 정도 생산하는 능력을 가짐. 소모울, 정방기로는 48번수를 0.4파운드로 생산함.

- 5) 배수톤(排水屯) : 배의 수면 밑의 체적과 동일한 체적을 가진 물의 중량 바닷물일 때는 36 t^3 민물일 때는 36 t^3 가 1배수량 톤(公噸)의 크기를 표시하는데 사용된다.
- 6) D/W (Dead weight) : 화물을 만재한 상태에서 선박자체의 무게를 뱀 중량 2,240 파운드를 1중량톤으로 한다.
- 7) G/T (Gross Tonnage) : 배의 용적을 표시하는 단위로 선폭×길이×높이의 t^3 1,000 t^3 를 1 G/T으로 한다.
- 8) 노트 (Knot) : 배가 1시간에 1해리 (= 1,853 m) 를 달리는 속력이다.
- 9) S/ $\frac{1}{8}$ (Square Foot $\frac{1}{8}$ inch) : 합판의 체적을 나타내는 단위로서 1 foot × 1 foot $\frac{1}{8}$ 인치의 체적을 말한다. 이를 m^3 로 환산하면 $0.3048 \text{ m} \times 0.3048 \text{ m} \times 0.0254 \text{ m} \times \frac{1}{8} = 0.00027 \text{ m}^3$ 이다.

[주] 1. 1세.....1치×1치×12자

2. 1석.....180 L

3. 1근.....1.3 Dos

4. 1관.....8.27 "

5. 1안.....409 "

6. 1평.....3.3 m^2

7. 1평.....1.5 평방척

8. 목재.....3분판 1평은 9세

4분판 1평은 12세

5분판 1평은 15세

재고통계조사지침

1978

차 례

1. 조사개요	3
가. 조사목적	3
나. 연혁	3
다. 조사의 법적근거	3
라. 조사의 범위	3
마. 조사내용	3
바. 조사결과보고	3
사. 조사대상 및 단위	4
아. 조사시기	6
자. 조사방법	6
2. 실사 및 면접	7
가. 실사	7
나. 면접	9
3. 조사표류 기입요령	10
가. 일반적인 유의사항	10
나. 항목별 기입요령	10
4. 검토 및 제출	14
가. 검토	14
나. 제출	14

5. 재고통제조사 지정품목 분류표	16
부록 I. 문제점 및 유의사항	23
부록 II. 도량형 환산표	38
부록 III. 주요단위 해설	41

1. 조사 개요

가. 조사목적

이 조사는 국내의 주요물자에 대한 보유량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경기 예측, 물가정책 및 물자수급 등의 계획 수립 또는 평가 자료를 제공함에 있다.

나. 연혁

1973.11월 재고통제과 신설로 74.1월부터 유통부문(도매업 부문)의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왔으며 75.8월 조사통제국 직제개편으로 상업통제과에서 흡수, 실시하고 있다.

다. 조사의 법적근거

이 조사는 통계법(법률 제 980호 개정법률 제 1215호)에 의하여 지정 통계 제 26호로 지정된 통계이다.

라. 조사범위

한국표준 산업분류 61도매중 611 일반도매업체중에서 법인 및 종업원 5인이상인 개인 사업체

마. 조사내용

이 조사는 지정된 도매업체의 취급 상품중 매월 지정된 품목에 대한 구입량, 출하량, 재고량과 종업원수 등을 조사한다.

바. 조사결과 보고

- 1) 물량통계표 작성

업종별, 품목별, 지역별 등의 물량통제표를 매월 작성 이용기관
에 송부.

2) 지수작성

물량통제 자료를 기초로 업종 및 품목별 판매업자 구입, 출하
및 재고지수 작성

사. 조사대상 및 단위

1) 조사대상

이 조사의 산업상의 조사 범위는 한국 표준 산업분류에 의한
일반 도매업이며 조사 대상 사업체는 일반 도매업체중에서 지정된 사업체
이다.

각 조사원이 담당할 조사 대상 사업체는 각 조사구별 사업체 명부에
명시되어 있으며 별도 지시에 의하여 보완 한다.

※ 산업 분류상 도매와 소매업의 구분

가) 도매업

(i) 도매업이란 주로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i) 소매업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ii) 광공업, 운수통신업, 관공서, 학교, 병원 및 기타 산업용 사
용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iii) 광업 및 제조업체가 다른 장소에서 자기제품을 도매하는
경우

※ 제조와 판매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회사나 출장소등은 관리 또
는 주된 산업인 광업 및 제조업으로 분류하므로 도매업에 포함
하지 않는다.

※ 개인 또는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상품매매의 중개나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단 본 조사에서는 제외됨)

(2) 도매업에 포함되는 사업체의 중요한 형태는 다음과 같다.

i) 도매상 : 일반도매상, 산업용매공업, 도매를 주로하는 상사회사, 광공업회사의 도매사업소

ii) 하청제조도매상 : 스스로는 상품을 만들지 않고 자기 소유의 원재료를 하청공장 등에 지급해서 제품을 만들게 한후 이를 자기 명의로 도매하는 사업체

iii) 대리상, 중개상 : 주로 수수료를 받고 상품매매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는 사업체 (단 본 조사에서는 제외됨)
그러나 대리점의 명칭을 가지고 실제로 상품의 대리업무는 하지않고 별개의 경영으로 도매를 하는 경우는 일반도매업으로 취급한다.

iv) 무역상, 무역중개상 (오파상) :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을 사업으로 하는 경우와 중개를 사업으로 하는 경우 (단 본 조사에서는 제외됨)

나) 소매업

소매업은 주로 개인용 가정용 소비를 위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조사단위

조사의 단위는 개개의 사업체 (점포)이다. 여기서 사업체란 "상품의 매매가 영업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개개의 물리적 장소"를 말하며 하나의 구획을 차지하고 있는 장소이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별도로 취급한다.

가) 동일구내에 둘 이상의 사업체가 있을 때에는 경영주가 같은 사람인 경우는 하나의 단위로 취급하지만 경영주가 다르면 별개의 사업체로 취급한다. 여기서 동일구내라 함은 일반적으로 울타리 같은 것을 가진 장소로 관계자 이외에는 자유로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장소를 말한다. 동일구내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임금 및 경영장부가 같은 경우에만 하나의 사업체로 본다.

나) 가까운 거리의 두개이상의 장소에서 경영을 하고 있을지라도 임금이나 경영장부가 같은 경우는 하나의 사업체로 본다.

이때 가까운 거리란 나란히 있거나 길 건너 마주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극히 좁은 범위로 한정한다.

야. 조사시기

조사의 기준 시점은 매월 말이며 조사의 기준기간은 그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1개월로 한다.

자. 조사방법

면접식 타계주의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사업체는 우편 조사한다.

2. 실사 및 면접

가. 실사

1) 조사원은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개개의 사업체에 대하여 사업주 및 판매책임자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체의 업종에 대한 특성, 동향 및 종업원수를 파악하고 조사에 임해야 한다.

2) 조사원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담당조사구내의 지정사업체를 순방하여 조사표의 기입을 완료하도록 할 것이며 응답자의 부재등 제 사유로 인하여 조사표를 작성치 못하였거나 조사표 기입상에 잘못이 발견된 사업체는 10~12일까지 사이에 재 방문하여 조사표의 작성을 완료토록 한다.

3) 조사원은 별도 배부된 「조사기록부」에 다음 조사를 위하여 참고가 될 사항을 기록하여 두어야 하며 이 조사기록부와 기타 사항을 참고로 하여 조사의 누락이나 오기 또는 잘못된 조사가 없이 조사표가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4) 관할 구역내에 신규사업체 및 사업체 이동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다음 요령에 의거 반드시 조사표 적요란에 명시함과 아울러 별도의 「변동사항 보고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가) 응답불응 사업체

조사대상 사업체가 비협조적이거나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는 조사의 목적과 자료의 효율성을 이해 시키고 비밀이 보장되는 점을 강조하여 재속 상대방의 협조를 촉구하여야 하며 2, 3차 방문시에도 불응할 경우는 지도원을 경유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불확실한 신고를 하는 사업체

사업주나 대리인이 불확실한 신고를 하거나 허위응답을 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업체의 규모나 종업원수 업종 및 전월사항을 참고하여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협조를 구하여야 하며 계속 불확실하게 응답할때는 조사원은 지도원에게 보고하고 지도원은 중앙에 보고한다.

다) 폐업, 전업, 휴업 사업체

폐업 및 휴업 사업체에 대하여는 지도원 확인서를 첨부 보고하고 폐업 및 휴업일자, 폐업 및 휴업 사유등을 적요란에 기입하고 별도 치수가 없는한 계속 조사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라) 이전사업체

조사대상 사업체가 이전하였을 경우에는 이웃이나 동사무소에 문의하는 등 최선의 방법에 의하여 그 이전지를 찾아내도록 하여야 하며 조사표상에는 새로 이전된 곳의 소재지 전화번호등 모든 변경사항을 기입하고 적요란에 "이전"이라 표시한다.

i) 담당조사구내로 이전된 경우에는 계속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ii) 자기가 담당하는 조사구 외로 사업체가 이전하였을 경우에는 그 달에 한하여 조사표를 작성 제출한다.

마) 명칭변경사업체

조사대상 사업체가 명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조사표상에 변경후 명칭을 기입하고 적요란에는 "명칭변경"이라 표시하여 제출할 것이며 사업체 명부도 변경된 내용을 수정 보완한다.

바) 신규사업체

i) 색출대상 사업체

관할 조사구내에 재고통계조사 대상품목 취급업체로서 조사대상 사업체 명부에 누락된 법인 도매업체나 종업원 5인 이상의 개인 도매업체가 발견될 시에는 "신규사업체 색출 보고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ii) 조사원은 분기별로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세무서에 등록된 신규 도매업체를 작성, 중앙에 제출한다.

iii) 예비실사: 신규 색출된 사업체에 대한 예비실사지시를 받은 해당 조사원은 예비실사를 완료하고 재고통계조사 예비조사보고서를 중앙에 제출한다.

iv) 추가대상 사업체

추가대상 사업체에 대한 실사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사업체를 조사대상 사업체 명부에 추가하여 매월 조사를 실시한다.

나. 면접

본 조사는 사업체의 비밀 사항인 월증판매량, 구입량, 월말 재고량등을 조사하게 되므로 사업주의 협조를 얻기가 어려워 조사상 애로가 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조사대상처를 방문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특히 유의하여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1) 조사원은 대상사업체를 방문하여 사업주 또는 실무자와의 면접을 요청할 때에는 단정한 용모와 품행을 유지하고 응답자에게 좋은 인상을 주도록 해야 하며 정중한 태도로 자기 소개를 먼저한 다음에 조사원증을 제시한다.

2) 조사내용은 각 사업체 및 개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므로 방문객이나 손님이 있을 때는 그 자리에서 질문하여도 좋은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3) 그자리에서 질문하여도 좋을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동시에 본 조사는 지정통계로서 통계법에 의하여 대상 사업체는 신고의무가 있으며 비밀이 엄수된다는 것을 잘 설명하여야 한다.

4) 조사표에 기입될 내용의외의 질문을 하거나 응답이 애매한 경우 유도 질문을 해서는 안된다.

5) 조사내용은 타업체와 이해 관계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비밀을 타에게 절대 누설 해서는 안된다.

6) 전월대비 물량변동이 심한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그 원인을 질문하여 적요란에 기록한다.

3. 조사표류 기입요령

가. 일반적인 유의사항

1) 지정된 품목이 계절에 따라 취급실적이 없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별도의 지시가 없는한 조사표를 작성 제출한다. 단 사업체에서 앞으로 취급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경우 그 내용을 자세히 보고하여 조사중지를 받을 수 있다.

2) 대상사업체에서 기 대상품목외에 새로운 지정품목을 취급할 시는 이것도 추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3) 폐업 및 휴업의 경우에도 중앙에서 별도의 지시가 없는한 조사표를 계속 작성, 제출해야 한다.

나. 항목별 기입요령

1) 조사구 및 사업체 번호

담당 사업체 명부에 부여된 조사구 번호와 사업체 번호를 별도 지시가 없는한 고정시켜 기입한다.

2) 사업체명 및 소재지

가) 사업체명이라 함은 사업체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말하며 이는 사업체의 구체적인 명칭을 기입한다.

나) 사업체의 소재지는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실제 장소를 말하며 시도의 명칭부터 지번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기입한다.

다) 사업체명 및 대표자명은 정자로 바르게 기입하여야 한다.

라) 전화번호란을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며 누락시켜서는 안된다.

3) 조직형태

해당란에 0표한다.

(이때 법인은 등기부에 법인 등기가 된 업체를 말한다.)

4) 품목번호 및 품목명

품목번호란에는 "지정품목분류표" 좌측에 있는 숫자를 기입한다.

5) 단위 및 규격

각 품목의 규격은 지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품목의 규격을 그대로 적으면 된다. 그러나 동일 명칭의 품목이라도 규격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은 규격별로 구분하여 기입하고 여러가지 규격품을 단일규격으로 환산 가능할 때에는 단일규격으로 환산하여 기입한다. 각 품목의 단위는 "지정품목분류표"에 지정된 단위를 사용하며 그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단위와 상이할 때는 지정된 단위로 환산하여 기입한다.

6) 월초 재고량 (전월말 재고량)

그달의 초일에 사업체에서 보유하였던 상품의 재고량 즉 전월에서 이월된 재고량을 말한다. 따라서 전월에 조사보고된 조사표상의 월말재고량과 금월의 월초재고량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7) 월중 구입량

그달중에 외부로부터 현금 또는 외상으로 구입한 량과 타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량을 말한다. (하청제조 도매상의 경우는 위탁제품량)

8) 월중 출하량 (판매량등)

그달중에 실제로 그 사업체의 현물관리를 떠난 부분의 총량을 말한다. 즉 가) 외부에 판매한 것 (외상판매 포함)

나) 견본 또는 선물로서 증정한 것.

다) 그 사업체에서 사무용 또는 급여용으로 출고한 것 등의 합계량을 말한다. 따라서 월말까지 출하하기로 계약된 경우라도 상품이 인도(출고)되지 않았으면 출하로 보지 않는다.

9) 과부족 보정량

그달중에 화재, 도난등의 재난에 의하여 결손처분된·량을 말하며 판매한 제품중 반송 등에 의하여 발생한 증감량도 이에 포함된다. 증감은 「+」와 「-」의 부호로 표시하여 적요란에 반드시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10) 월말재고량

본 월말재고량은 재고 통계조사의 핵심조사 항목이므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월말 재고량이란 그달의 말일에 그 사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체의 상품 보유량을 말하며 여기에는 이미 판매되었으나 미출고된 부분도 포함된다. 따라서 자기소유 상품이던 타인소유 수탁품 미출고분등·상품이 상품대장(또는 물품대장 현물대장등)에 기재된 일체의 상품을 포함하며 대장이 없는 업체는 현물재고 위주로 파악한다.

한편 상품을 자기 창고 이외의 타인창고(영업창고등)에 보관하고 있을 때에도 이를 전부 포함시켜야 한다.

단, 조사 기준일 현재 수송도중에 있는 것은 도착지에서 파악한다.

11) 종업원

가) 자영업주 및 부급가족 종사자

“자영업주”란 사업체의 주인으로서 급여를 받지 않으면서 실제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부급가족 종사자"란 자영업주와 가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업체의 업무에 부급으로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주당 24시간 이상 종사한 자에 한함)

조직형태가 개인인 경우 반드시 부급가족 종사자가 1인 이상 존재함을 명심해야 한다.

나) 상용고용원

"상용고용원"이라 함은 일정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정 급여를 지급받고 고용된 자를 말하며 아래의 경우도 포함한다.

i) 법인 사업체에서 일정한 급여를 받는役員(예: 사장, 이사, 감사 등)

그러나 이익 배당만 받는 주주는 제외한다.

ii) 자영업주의 가족으로 일정한 급여를 받는 자.

iii) 일정 급여 또는 판매 수수료를 받는 의무사원 판매원 및 배달원

다) 임시고용원

"임시고용원"이라 함은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급여를 받고 임시 또는 일일로 고용된 자를 말한다.

라) 해당사항이 없으면 조사표의 종업원수란에 0을 기입한다.

12) 적요란

가) 상품 재고량이 전월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증가 또는 감소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증감요인을 밝혀 기입하여야 한다.

나) 휴업, 폐업, 이전, 소재불명 등의 유고내용을 자세히 기입한다.

4. 검토 및 제출

가. 검토

접수된 조사표가 질의 조회나 재조사 지시를 받지 않도록 반드시 다음 내용을 철저히 검토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 (1) 조사기준일 (년 월분) 소사구 및 사업체 번호 등의 기입 누락 여부
- (2) 품목명 및 품목번호가 “지정품목 분류표”에 지정된 대로 기입되었나와 사업체별 지정상품 누락여부
- (3) 전월말 재고 (이미 제출된 조사표에 기재된 것)와 금월초 재고의 일치 여부
- (4) 「 $\text{월초재고량} + \text{월중구입량} - \text{출하량} + \text{과부족보정량} = \text{월말재고량}$ 」의 성립 여부
- (5) 조사된 숫자의 증감이 전월과 비교하여 심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적요란에 기입하여야 한다.
- (6) 기타 조직형태의 기입여부, 산업분류의 기입여부

나. 제출

- (1) 매 실사월의 조사표를 제출함에 있어서는 조사표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5매 내지 10매씩 분할하여 제출하되 늦어도 그달의 20일

까지의 담당조사포 전부가 지도원에게 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 (2) 지도원은 이를 접수되는 대로 일괄 취합하여 중앙에 송부되며 담당구내 조사포 전부를 25일까지 중앙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기타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조사포 제출이 늦어지면 지연 사유서를 조사원은 지도원에게, 지도원은 중앙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재고통계조사 지정품목 분류표

품목 번호	품목명	단위	품목 번호	품목명	단위
6111 농산물 및 음식료품 도매업			6111 902	재제염	kg
			• 903	된장	•
6111 101			• 904	간장	kg
			• 905	구루타민 산소다	kg
• 102	밀가루분	kg	• 906	인공감미료	•
6111 401	병등해산물	•	• 907	라면	•
• 401	식빵	천원	• 908	분유 및 연유	•
• 402	건빵	•	• 909	마아가린	•
• 403	비스켓	•	• 910	엿	•
• 404	설빵과자	•	• 911	식용포도당	•
• 405	점	•	• 912	이스트	•
• 701	주점	•	• 913	사료	•
• 702	소주	•	• 914	농산물통조림	•
• 703	맥주	•	• 915	축산물통조림	•
• 704	청주	•	• 916	물고기및해산물통조림	•
• 801	과실주	•	6112 섬유 및 의류 도매업		
• 802	사이다	•			
• 803	콜라	•	6112 101	면사	kg
• 804	주스	•	• 102	순소모사	•
• 901	설탕	kg			

품목번호	품목명	단위	품목번호	품목명	단위
6112 103	순방모사	kg	6112 502	운 등 화	족
• 104	혼방소모사	•	• 503	고무장화및우화	•
• 105	나 이 른 사	•	• 504	프 라 스 틱 신	•
• 106	포티에스텔사	•	• 601	비닐자 트림크	개
• 107	아 크 리 리 사	•	• 602	헬 드 백	•
• 108	재생섬유방직사	•	• 603	가방 (학생용포함)	•
• 109	아 새 테 이 트 사	•	• 901	숨	kg
• 110	혼방합성섬유방직사	•	• 902	소 가 족	•
• 111	어 망 사	•	• 903	화 섬 사 양 말	족
• 112	화 학 섬 유 연 사	•	• 904	마 닐 라 로 오프	kg
• 201	면 직 물	•	6113 전기기기 도매업		
• 202	순 본 견 직 물	•	6113 101	라 피 오 수 신 기	대
• 204	순 소 모 직 물	•	• 102	T . V 수 상 기	•
• 205	순 방 모 직 물	•	• 103	녹 음 기	•
• 206	모 혼 방 직 물	•	• 104	전 기 빙 장 고	•
• 207	재 생 섬 유 직 물	•	• 105	산 공 기	•
• 208	순 방 합 성 섬 유 직 물	•	• 106	전 기 스토트	•
• 209	혼 방 합 성 섬 유 직 물	•	• 107	에 어 콘 디 서 너	•
• 301	이 불	대	• 108	전 축	•
• 302	모 포	•	• 109	세 탁 계	•
• 303	타 울	•	• 201	전 동 기	•
• 401	메 티 아 스 의 의	•			
• 501	교 무 신	족			

품목 번호	품목명	단위	품목 번호	품목명	단위
6113 202	변압기	KVA	6114 301	화장비	kg
" 203	고압추전기	"	" 302	세탁비누	"
" 204	저압추전기	MP	" 303	세탁용합성세제	"
" 205	전화기	대	" 401	살충제	"
" 206	콘덴서 (전력용제외)	개	" 402	살균제	"
" 207	저항기 (통신용)	"	" 501	페인트	"
" 208	합성수재결연전선	kg	" 502	와너스	"
" 209	통신및전력용케이블	kg	" 503	에나멜	"
" 210	백열전구	"	" 504	락카	"
" 211	형광전구	"	" 505	염료	kg
" 212	추전지	"	" 901	황산	"
" 213	전전지	"	" 902	염산	"
" 214	소세트	"	" 903	가성소다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 6114 의약품 및 화학 제품도매업 </div>			" 905	암축산소	m
6114 101	의약품	천원	" 906	아세틸렌가스	kg
" 201	향수	kg	" 907	카바이트	"
" 202	화장수	"	" 908	그리세린	"
" 203	화장크림	"	" 909	다이아마이트	"
" 204	화장백분	"	" 910	도화선	m
" 205	머릿기름	"	" 911	뇌관	개
" 206	치약 및 치분	"	" 912	성냥	대형 450 개피
			" 913	인쇄용잉크	kg
			" 914	휘발유	kg

품목번호	품목명	단위	품목번호	품목명	단위
6114 915	항공유	kg	6116 102	금속판이음쇠	kg
" 916	경유	"	" 201	석유스토프	대
" 917	충유	"	" 301	알미늄주물제품	kg
" 918	방카C유	"	" 302	알미늄프레스가공식기 및 용기	"
" 919	등유	"	" 303	스텐레스 스틸식기	"
" 920	윤활유	"	" 304	도자식기	개
" 921	액화석유가스 (C.P.G)	"	" 305	유리식기	개
6115 기계도매업			" 306	프라스틱식기 및 용기	kg
6115 101	농기구 (경작용도구)	개	" 901	공장용수공구	개
" 102	발동기	대	" 902	철삭공구	개
" 105	분무기	"	" 903	재봉틀	대
" 106	동력펌프 (양수기)	"	6117 건축재료도매업		
" 401	각종 고무엘트	1,000 pc y	6117 101	각	제
" 402	기계용가죽엘트	1,000 pc y	" 102	판	제
" 403	발브	개	" 103	합판	"
" 404	배아람	kg	" 104	하드보드	"
" 501	안경대	개	" 201	시멘트	트
" 901	고무호스	m	" 202	백시멘트	트
6116 철물 및 가정용 기기도매업			" 203	소석회	"
6116 101	볼트 및 너트	kg	" 301	벽돌 (소성품)	대
			" 501	판유	리상자
			" 901	타	일

품목 번호	품목명	단위	품목 번호	품목명	단위
6117 903	석면 슬레이트	m ²	6119	가타일 반 도매업	
" 904	프라스틱파이프및관	kg			
6118 금속도매업					
6118 101	봉 강(철근)	%	6119 201	자 전 거	대
" 202	강 관	"	" 202	자전거용타이어	본
" 301	강 판	"	" 301	자동차용스프링	개
" 302	주 철 판	"	" 302	자동차용피스톤	개
" 303	아연도철판	"	" 303	자동차용타이어	본
" 304	석도철판	"	" 304	자동차용류브	"
" 305	구리판및판	kg	" 305	재생타이어	"
" 306	알미늄판	"	" 401	산문용지	kg
" 901	건축용사	개	" 402	백상지	"
" 902	철선	kg	" 403	인쇄용지 및 필기용지	"
" 903	나동선	"	" 404	크라프트지	"
" 904	쇠못	"	" 405	아트지	"
" 905	와이어트프	"	" 406	박엽지	"
" 906	철사망	"	" 407	판지	"
" 907	용접봉	-	" 408	창호지	권 2,000
" 908	형강	%	" 409	감판지	m ²
" 909	전기등	kg	" 440	화장지	kg
" 910	연괴	"	" 441	노트	권
" 911	아연괴	"	" 601	교과서 및 서적	"
			" 602	잡지 및 정기간행물	"

품목 번호	품목명	단위	품목 번호	품목명	단위
6119 701	목재 적재상	개	6119 904	반년 필	개
" 702	목재 적재상	"	" 905	스톤 필	"
" 703	목재 의자	"	" 906	비닐 창판	"
" 704	철재 적재상	"	" 907	프라스타래저	"
" 705	철재 의자	"	" 908	프라스타필립	"
" 706	철재 캐비닛	"	" 909	손목시계	개
" 901	어망	개	" 910	벽시계 (패종)	"
" 902	연필	마	" 911	탁상시계	"
" 903	물펜	타	" 912	매트 판	매

부 록 I . 문제점 및 유의사항

6111 농산물 및 식품료품 도매업

1. 밀가루의 지정단위는 "포대"가 아니고 "kg"이다.
1 포대당 용량이 24kg, 22kg, 10kg, 3kg, 1kg 등 다양한 바 반드시 kg으로 환산보고할 것이며 민수용 뿐만 아니라 관수용도 포함 조사 한다.
2. 식빵, 건빵, 비스킷, 껌, 설탕, 과자의 지정단위는 조사의 편의상 금액으로 조사한다. 이때 금액의 기준은 구입량, 출하량, 세고량, 모두 구입 가격으로 조사해야 하며 조사단위는 "천원"으로 보고한다.
3. 설탕과자에는 캔디, 드롭프스, 캐러멜, 젤리, 예하스, 종합선물(각종포함), 초코렛 등이 포함된다. 단 스낵류(새우깡, 고구마깡, 양파깡) 강정유과, 다식, 정과 등은 제외한다.
4. 분유 및 연유에 청정유나 시유(목장우유)를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청정유라 함은 원유를 냉각시킨 다음 저유물 거쳐 여과시킨것을 말하며, 시유는 생우유를 살균처리한 원상 그대로의 우유이며, 연유는 생우유를 탈수 농축시킨 것으로 시유와 구별되며, 분유는 완전 탈수시킨 분말된 것이다.
5. 해산물 통조림, 축산물 통조림(쇠고기등) 농산물 통조림(과일통조림) 등은 각각 구분하여 조사한다.
6. 냉동 해산물에 냉장이나 빙장을 포함 시켜서는 안된다. 냉동 해산물은 일반적으로 -20°C 이하의 저온으로 급냉시켜 해산물 자체를 얼게하여 냉장창고에 보관하는 것이며 냉장은 냉동을 시키지 않고 냉장창고에 보관되는 것이다. 또 빙장은 해산물과 얼음을 혼

- 합하여 부피(변질)를 방지하는 것이다.
7. 통조림과 병동 해산물의 지정 단위는 "kg"이므로 관(Can)또는 상자(C/S)로 보고 해서는 안된다.
 8. 식빵에는 전방도 포함해야 한다.
 9. 된장에는 춘장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춘장은 중화요리에 사용하는 검은 빛깔이다.
 10. 엿에는 물엿도 포함되며 단위는 kg으로 보고 한다.
 11. 마가린에는 쇼팅도 포함되며 버터는 제외한다.
 12. 이스트는 생 이스트와 건조이스트(Dry-yeast)가 있는데 이를 모두 포함 조사한다.
 13. 재계염에는 정계염도 포함 조사한다. (단 천일염은 제외한다)
 14. 구루타민 산소다와 인공감미료는 별개의 품목이다. 구루타민 산소다는 미원이나 미풍 등을 말하며 인공감미료에는 당원, 사카린 등이 포함된다.
 15. 라면에는 쇠고기 라면, 짜장면, 육계장라면, 해장국 라면, 시락면 등이 포함되고 기름에 튀기지 않은 냉면, 하이면과 스낵류인 라면빵, 쏘파이 등은 제외된다.
 16. 소주에는 포도주, 인삼주 및 과일주 등은 포함시키지 말 것이며, 과일주는 별개의 품목으로 조사하되 포도주, 빻주, 인삼주, 로주, 교량주, 매실주 등이 포함된다.
 17. 청량음료는 사이다, 콜라 외에 환타, 오란씨, 미린다 등 기타 음료수는 주스에 포함하여 조사할 것.
 18. 소주, 주정, 청주, 맥주, 사이다, 콜라, 주스의 지정 단위는 ℓ이다. 그러므로 사업체에서 "상자" 혹은 "병"으로 응답할 경우에는

이를 l 로 환산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1 l = 1,000 ml (1,000 cc)$

예

1. 소주

가. 소주 2홉들이 (360 ml)

1상자는 40병이므로 $360 ml(cc) \times 40 병 = 14,400 ml = 14.4 l$ 임.

나. 소주 4홉들이 (640 ml)

1상자는 24병이므로 $640 ml \times 24 병 = 15,360 ml = 15.36 l$ 임.

2. 맥주

가. 맥주 대형 (640 ml)

1상자는 24병이므로 $15,360 ml = 15.36 l$ 임.

나. 맥주 중형 (500 ml)

1상자 = 20병 = $10,000 ml = 10 l$ 임.

다. 맥주 소형 (343 ml)

1상자 = 24병 = $8,232 ml = 8.232 l$ 임.

3. 청주

가. 청주 대형 (1.8 l)

1상자 = 10병 = $18,000 ml = 18 l$ 임.

나. 청주 중형 (640 ml)

1상자 = 25병 = $16,000 ml = 16 l$ 임.

다. 청주 소형 (620 ml)

1상자 = 25병 = $15,500 ml = 15.5 l$ 임.

4. 콜라, 사이다, 환타, 오란제

콜라, 사이다, 환타, 오란제는 제품에 따라 1병당 용량이 190 ml, 236 ml, 340 ml, 770 ml, 둘이가 있고 1상자당 12병, 둘이와 24병 둘이로 다양하나 환산에 착오 없도록 유의할 것.

6112 섬유 및 의류도매업

1. 혼방합성섬유방적사(화학섬유방적사)는 섬유화학 공정을 통하여 나프탈렌 원료로 생성된 일체의 섬유 즉, 재생섬유, 반합성섬유를 제외한 섬유로 된 Fiber와 Filament 및 일체의 화학섬유가 방적할수 있도록 제공정을 완료한 실(糸)의 상태를 말한다.
2. 순소모사: 비교적 길고 잘 간추려진 섬유로서 짧은 섬유를 제거한 실이다. 이때 짧은 섬유는 순방모사가 된다.
3. 순소모직물: 순소모사로 짠 직물, 고급지로서 신사복, 숙녀복에 사용한다.
4. 순방모사: 장섬유를 간추리고 난 나머지 단섬유를 칭하며 합성섬유사가 10% 정도 포함된 것도 순방모사로 조사한다.
5. 순방모직물: 순방모사로 짠 직물, 저급지로서 모포, 겨울용 오버, 홈스푹에 사용한다.
6. 모혼방직물: 모직물과 타(직물)이 혼방되었을 때를 말한다.
7. 혼방합성섬유직물: 2개 이상의 섬유가 혼방되어 제조된 직물중 합성섬유가 50% 이상, 차지하였을 때를 말한다.
(단, 모와 혼방일 때 60%이상, 견과 혼방일 때 70%이상)
8. 각종 화학섬유연사: 2단사 이상을 꼬아 만든 실로서 합사(꼬지 않고 합해놓은 실)와 다르다.

9. 면직물에는 광죽(소참포함), 내광죽, 곡광죽, 당죽, 면범포, 포플린, 용, 면" 지를 포함한다. (단, 끝메은 제외)

10. 섬유제품 중 지정단위가 m²로 되어있는 품목은 사업체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단위가 "Yds" "마" "Roll" 등 다양하므로 반드시 m²로 환산 보고한다.

예 1: 직물폭이 36인치 길이 1yds 는 $0.9144\text{m} \times 0.9144 = 0.8361\text{m}^2$ 가 된다.

11. 지정품목 중 사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별명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순합섬섬유직물: 나이론, 다푸다, Jersey, 양교라, 포리텍스, 케미칼, 트리코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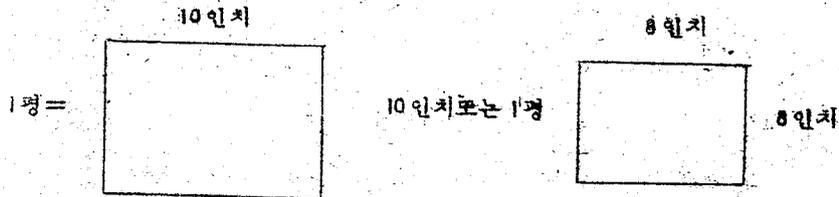
순견본직물: 울치기원단, 시보리원단

재생섬유직물: 인견양단

합섬섬유방적사: Stretch사, Nylon사, Filament 포리에스텔사, 메포린울직사, 카시미론사, 아크리릭사, 中細糸 (단 Fiber는 제외)

12. 소가죽은 원피가 아니고 원피를 가방이나 신발등을 만들기 위하여 일정한 가공단계를 거친 상태를 말한다. 사업체에서 단위를 평(坪) 또는 매(枚)로 사용하더라도 m²로 환산 보고한다.

1평 = 가로 10인치 × 세로 10인치 = 0.0645 m²
 ※ 단위환산법



사방 10 인치 = 0.0645 m^2
1 매 = 30-40 평 (坪)
1 매 = 3.7 m^2 (40 평)
(枚)

사방 8 인치 = 0.0413 m^2
1 매 = 3.3 m^2 (30 평)
(枚)

13. 비닐제 트랭크류의 경우 그 규격이 다양하므로 용적이 792 평방인치 (보통 12 인치 X 11 인치 X 6 인치) 이상의 크기만을 조사하며 학생용 책가방이나 서류가방, 여행용가방은 "가방"으로 조사한다.

이에는 직물제 가방도 포함. 조사한다.

14. 핸드백에는 구슬백, 지갑 등은 제외되며 피혁이나 합성피혁, P, V, C 를 원자재로 만든제품만 포함한다.

15. 타올, 일반세면용타올 (가로 80cm X 세로 33cm 정도)

1매 (= 0.3 m^2) 정도로서 제반타올제품도 포함한다. 단, 시트카바 등 큰 타올을 별도로 보고하되 규격란에 규격을 기입할 것.

16. 화섬사양말: 순면, 순모양말은 제외하고 화섬사 60% 이상의 혼방사로 된 양말은 포함된다. 또한 팬티스타킹 및 스타킹도 화섬사양말에 포함 조사한다.

17. 메리야스 의의 (Sweater 포함) 중 V - Shirts, Nylon 내의 이너랙스, 부라우스, 동내의, 즈랙스 등은 제외한다.

18. 운동화에는 훈련화 (통일화), 노동화 등은 포함되고 방한화는 제외한다.

19. 플라스틱신에는 개미슈즈, 샌탈, 스리퍼 등이 포함된다.

6113 전기기기 도매업

1. 전기스토브에는 전기근로를 제외하여 조사한다.

2. 전기냉장고에는 아이스 박스나 냉동기 등은 제외한다.

3. 백열전구는 15 W 이상의 조명용 전구만을 조사할 것이며, 아래와 같은 소형전구는 제외한다.

- 1) 자동차용 전구
- 2) 자전거용 전구
- 3) 장식용 전구
- 4) 두전구
- 5) 영사용 전구
- 6) 사진용 전구
- 7) 항공기용 전구
- 8) 전자계산용 전구
- 9) 기타 특수용 소형전구

4. 형광전구에는 직관 및 환형이 있는바 양자를 포함 조사하되 다음 것은 제외한다.

- 1) 네온싸인
- 2) 가스방전관 및 구
- 3) 헬륨, 알곤가스
- 4) 크세논등 가스방전관

5. 전화기에는 제신 1호인 표준형 전화기뿐만 아니라 수술용인 장식용 전화기등도 조사하되 단, 안터폰이나 무전기 등은 제외한다.

6. 라디오에는 트랜지스터 라디오, 진공관 라디오, 카(ar) 라디오 뿐만 아니라 신개발품인 더 디지털출력라디오도 포함 조사한다.

6114 의약품 및 화학제품 도매업

1. 화장품류를 조사할 때는 단위를 지정단위 "kg"으로 하여야 하며 개(個)라든가 묶음등으로 보고해서는 안된다.
2. 향수는 화장용만 조사하고 식품용 향료는 제외한다.
3. 화장수에는 "밀크로손"을 포함하여서는 안되되 "스킨로손"만 포함하여 조사한다.
4. 화장크림에는 바니싱크림, 쿨도크림, 영양크림등 각종 고품크림을 전부 포함하여 조사한다.
5. 화운메이손은 화장품분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6. 머릿기름에는 포마드와 "헤어오일"(Hair oil)도 포함시켜야 한다.

7. 분말세탁비누는 세탁비누에 포함하며 세탁용 합성세제는 그 형태가 분말이건, 고형이건, 액체가건 모두 합하여 조사한다.
8. 환산(유산), 염산, 가성소다는 지정된 농도로 환산 조사하여야 한다. 즉, 환산에는 98%, 35%, 40% 등이 있는데 98%로 환산 보고하여야 하며 염산은 35%, 100% 등이 있는데 35%로 환산 보고할 것. 가성소다 40%, 46%, 97%, 100% 등이 있는데 100%로 환산 보고할 것.
9. 압축산소는 지정 단위가 미인바(본本)으로 거래될 경우 미로 환산 보고 한다. 1本=7미
10. 아세치렌 가스는 kg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원질 또는 미를 반드시 kg으로 환산 보고할 것.
11. 페인트에는 수성페인트와 유성페인트가 있는 바 모두 포함 조사한다.
12. 염료에는 직접염료, 산성염료, 유화염료, 형광염료등 그 종류가 다양하므로 이를 전부 포함하여 조사한다.
13. 성냥은 대형(450개피 정도임)을 기준으로 하여 조사한다.
14. 휘발유에는 고급휘발유와 보통휘발유가 있는바 구분치 말고 통합하여 조사할 것.
15. 방카 A.B 유는 중유에 포함 조사해야 되며 경질 중유도 중유에 포함 조사한다.
16. 윤활유에는 구리스를 제외할 것이며 윤활유 1Pℓ = 20ℓ 로 환산된다.
17. 액화 석유가스(L.P.G)는 프로판가스와 부탄가스를 통합하여 조사할 것이며

프로판가스 1kg=1.97ℓ
 부탄가스 1kg=1.73ℓ
 로 환산한다.

6115 기계 도매업

1. 발동기는 석유 및 경유발동기만 조사하고 디젤 발동기는 제외한다.
2. 분무기는 농업용 등질식, 어께거리형(배낭형), 자동 및 수동식 분무기와 족담형등 농업용을 조사하며 곤충(파리, 모기)를 제거하기 위한 소형 분무기(가정용 펌프), 페인트용, 세탁소에서 사용하는 스프리건 등은 제외한다.
3. 동력펌프에는 자동식 펌프와 양수기(수리관개용)를 포함 조사하며 수동식 펌프(우물용)는 제외한다.
4. 발브는 건축용, 기계용, 공업용만 포함 조사하고 자동차 부속용 발브 가이드, 엔진발브, 타이어튜브발브 및 수도꼭지는 제외한다.
5. 베어링은 볼베어링, 볼베어링, 스프라스트베어링등 전부를 포함 조사하나 자동차용 메탈베어링, 엔진베어링, 유니버살조인트 등은 제외한다.
6. 농기구(경작용 도구)수공구는 금속제만 조사한다. 삽, 쟁이, 호미 쟁기, 쳐스랑, 곡괭이 등
7. 안경테에는 선글라스테도 포함 조사한다.
8. 고무호스의 지정단위는 m 이니 사업체에서 권으로 보고 하더라도 반드시 m 로 환산하도록 한다.
 $1 \text{ 권} = 50 \text{ 척(尺)} = 15.15 \text{ m}$
9. 각종 고무벨트(V형고무벨트, 평고무벨트, 콘베아벨트)의 지정단위는 1,000 PLY 이다. 그러므로 사업체서 자(尺) 또는 m 로 보고 하더라도 반드시 1,000 PLY 로 환산 보고한다.
 $1 \text{ PLY} = 0.33 \text{ m/PLY}$
1 PLY 는 길이 1자, 폭 1인치, 두께 1.4 mm 이다.
10. 기계용 가죽벨트의 지정단위는 m/PLY 이다.

1 m/PLY = 폭 1 인치 × 두께 1.4 mm × 길이 1 m 이다.

6116 철물 및 가정용 기기 도매업

1. 알루미늄 주물제품(주물을 부어 만든 것)은 알루미늄 프레스 가공식기 및 용기(알루미늄판으로 만든 것)와 별개의 대상품목이니 구별하여 조사한다.
2. 함마, 드라이버는 공장용 수공구에 포함되며 송곳은 제외한다.
3. 석유스토브(난로)는 곤로와 구별되어야 하며, 스토브만을 조사하고 곤로는 제외한다. 단, 전기스토브는 별개 대상 품목이니 구별하여 조사한다.
4. 철삭공구에서 쇠틀날과 종이나 유리 혹은 목공용 칼은 제외한다.
5. 알루미늄 프레스 가공식기 및 용기는 알루미늄 주물제품과 혼동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물제품은 알루미늄피를 녹여 부어서 만든 것으로 보통 두껍지만 깨지는 성질의 것으로 양은솔, 두꺼운 주전자, 바케스 및 랍그릇 등이며 프레스 제품은 깨지기 보다는 찌그러지는 것으로 두께가 얇고 주로 노란칠을 한 것이다.
6. 금속판 이음쇠에서 리벨트는 제외한다.
7. 볼트 및 너트에서 와사와 리벨트를 제외한다.

6117 건축재료 도매업

1. 판유리는 지정 규격인 2 mm 로 환산 보고하여야 한다.
만약 3 mm, 100명, 200 상자를 2 mm로 환산하면
 $200 \times \frac{3}{2} = 300$ 상자로 환산된다.

2. 타일은 일반적으로 사업체에서는 "평"을 쓰고 있으나 이를 지정 단위인 m^2 로 환산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text{ 평} = 3.3 m^2$$

3. 석면스레이트는 일반적으로 사업체에서 단위를 "환산매수"로 사용하고 있으나 지정 단위인 m^2 로 환산보고하여야 한다.

$$\text{환산매수 1매} = 1.1 m^2 \text{임.}$$

환산매수는 모든 종류의 스테트를 소골스레이트(대팔, 용마루)로 환산한 매수인 바 환산매수 1매당 $1.1 m^2$ 를 곱해주면 된다.

4. 벽돌(소성품)은 각종 적벽돌을 전부 포함하여야 하며 취장연와(오지벽돌)도 포함 조사할 것.

5. 합판은 규격이 다양한 바, 다음 요령으로 환산한다.

규격			1매당 m^2	좌기 두께의 1B/F당 m^2
가로(B)	세로(F)	두께(mm)		
4	8	3.2	0.0095232	0.0002976
3	6		0.0053568	
4	8	3.6	0.0010136	0.0003348
3	6		0.0060264	
4	8	4	0.011904	0.000372
3	6		0.006696	
4	8	6	0.017857	0.000558
3	6		0.010044	

6. 각재, 판재, 합판, 하드보드 등은 지정단위가 m^2 인바 才, 매, B/F, S/F 등으로 조사치 말고 m^2 으로 환산 보고할 것.

$$\begin{aligned}
 1 \text{ 才} & \approx 0.00334 \text{ m}^2, & 1 \text{ m}^2 & \approx 300 \text{ 才}, \\
 1 \text{ m}^2 & \approx 300 \text{ 才}, & 1 \text{ B/F} & \approx 0.002359 \text{ m}^2 \\
 1 \text{ m}^2 & = 423.77 \text{ B/F}
 \end{aligned}$$

6118 금속 도매업

1. 봉강에는 철근, 환강, 환철, 각강, 반원강 등이 모두 포함된다.
2. 강판에는 상수도관, 구조관 등이 포함된다.
3. 아연도 철판은 박판에 아연을 도금한 것이며(일명 합석)석도철판을 강판의 양면에 주석을 도금한 것으로 특별 극연강의 박판임.
4. 아연도 철판의 규격별 중량은 다음과 같으니 환산에 참고할 것.

0.23 mm = 3.34 kg	0.45 mm = 6.32 kg
0.25 mm = 3.5 kg	0.55 mm = 7.69 kg
0.30 mm = 4 kg	0.70 mm = 9.7 kg
0.33 mm = 4.73 kg	0.91 mm = 12.34 kg
0.35 mm = 5 kg	

5. 철선에는 경장선, 새선연선 등 특수한 용도로 만든 강한 철선을 포함하며 비철금속으로 된 ACSR(알루미늄선)진유선 등은 제외됨.
6. 쇠못에는 철선으로 만든 것은 모두 포함시키나 나사못, 황동못, 나무못 등의 특수못은 제외한다.
7. 철사망이라 함은 철사로 망을 뜬 것을 말하며 가시철망(유자철선, 철조망), 스토프망, 선뿔기망, 방충망 등은 제외한다.

8. 강 관

강관의 종류에는 그 제조법 용도 직경의 대소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강관의 지정 단위가 %인바 각 대상 사업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m 를 %로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관의 호칭	m 를 %로 환산하는 법	관의 호칭	m 를 %로 환산하는 법
BS 백관 4	$m \times 1.23 \div 1,000 = \%$	BS 흑관 4	$m \times 1.23 \div 1,000 = \%$
• 4	$m \times 1.59 \div 1,000 = \%$	BS 흑관 4	$m \times 1.59 \div 1,000 = \%$
• 1	$m \times 2.46 \div 1,000 = \%$	BS 흑관 1	$m \times 2.46 \div 1,000 = \%$
• 1+	$m \times 3.17 \div 1,000 = \%$	BS 흑관 1+	$m \times 3.17 \div 1,000 = \%$
• 1+	$m \times 3.65 \div 1,000 = \%$	BS 흑관 1+	$m \times 3.65 \div 1,000 = \%$
• 2	$m \times 5.17 \div 1,000 = \%$	BS 흑관 2	$m \times 5.17 \div 1,000 = \%$
• 2+	$m \times 6.63 \div 1,000 = \%$	BS 흑관 2+	$m \times 6.63 \div 1,000 = \%$
• 3	$m \times 8.64 \div 1,000 = \%$	• 3	$m \times 8.64 \div 1,000 = \%$
• 4	$m \times 12.4 \div 1,000 = \%$	• 4	$m \times 12.4 \div 1,000 = \%$
KS 백관 4	$m \times 1.25 \div 1,000 = \%$	• 5	$m \times 16.7 \div 1,000 = \%$
• 4	$m \times 1.6 \div 1,000 = \%$	• 6	$m \times 19.8 \div 1,000 = \%$
• 1	$m \times 2.46 \div 1,000 = \%$	KS 흑관 4	$m \times 1.25 \div 1,000 = \%$
• 1+	$m \times 3.16 \div 1,000 = \%$	• 4	$m \times 1.6 \div 1,000 = \%$
• 1+	$m \times 3.63 \div 1,000 = \%$	• 1	$m \times 2.46 \div 1,000 = \%$
• 2	$m \times 5.12 \div 1,000 = \%$	• 1+	$m \times 3.16 \div 1,000 = \%$
• 2+	$m \times 6.34 \div 1,000 = \%$	• 1+	$m \times 3.63 \div 1,000 = \%$
• 3	$m \times 8.49 \div 1,000 = \%$	• 2	$m \times 5.12 \div 1,000 = \%$
• 5	$m \times 17.2 \div 1,000 = \%$	• 2+	$m \times 6.34 \div 1,000 = \%$
• 6	$m \times 19.2 \div 1,000 = \%$	• 3	$m \times 8.49 \div 1,000 = \%$

관의 호칭	m를 %로 환산하는 법	관의 호칭	m를 %로 환산하는 법
KS 폭관 4	$cm \times 12.3 + 1,000 = \%$	구조관 1a	$cm \times 3.6 + 1,000 = \%$
• 5	$cm \times 17.2 + 1,000 = \%$	• 1b	$cm \times 3.63 + 1,000 = \%$
• 6	$cm \times 19.2 + 1,000 = \%$	• 2	$cm \times 5.12 + 1,000 = \%$
구조관 1	$cm \times 2.46 + 1,000 = \%$	• 3	$cm \times 8.49 + 1,000 = \%$

6119. 기타 일반 도매업

1. 자동차용 스프링에는 사프(의자)용 스프링을 제외하여야 하며 완충장치로서 차체 하부에 부착되는 스프링만 조사하여야 한다.

이에는 명형 스프링과 코일형 스프링이 있다.

2. 자전거는 완제품, 조립품 및 부속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완제품에 조립품을 포함 조사하며 부속품 중 차체는 자전거로 간주하여 조사하여야 하고 자전거용 타이어가 독립된 상품으로 있을 때는 이를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

3. 리어카용 타이어는 자전거용 타이어에서 제외한다.

4. 손목시계, 패종시계, 탁상시계 등은 각각 구분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전자시계는 패종시계에 포함 조사하되 별란으로 조사기록 하고 특수용 시계(잠수기록용 시계, 전기시계) 등은 제외한다.

5. 철제품과 목제품을 구분하여 기입한다.

6. 탁자, 테이블 등 식상에 포함한다.

7. 학생용 책 결상은 규격란에 반드시 기입한다.

8. 프라스틱 제품은 6116306 프라스틱 식기 및 용기, 6119908 프라스틱 제 필립, 6119906 비닐 장판, 6119907 프라스틱 레저, 6117904 프라스틱

- 파이프 및 관으로 구분 조사한다.
9. 신문 용지와 백상지는 일반적으로 사업체에서 경지와 모조지로 조취되고 있는 바 지정 불문명인 신문용지와 백상지로 보고할 것.
 10. 인쇄용지 및 필기용지를 중절지 또는 로루지로 부르는 경향이 있으나 지정 품목 명칭을 사용하여 보고할 것이며, 노트는 별개 품목이나 독립해서 보고할 것.
 11. 창초지의 지정단위는 권이며 1권은 2,000매이다.
 12. 판지를 마니라 판지, 백판지, 회색판지 등 여러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구분치 말고 이들을 추척해서 판지로 조사한다.
 13. 연필에는 각종 연필을 모두 포함하여 조사하여 색연필도 포함 조사한다. 환산 예를 보면,

$$1타 = 12자루 \quad 12타(打) = 1 Gross = 144자루$$
 14. 스폰지의 지정단위는 $\frac{1}{2}$ 이나 사업체에서 평이나 기타의 단위로 쓰고 있더라도 반드시 $\frac{1}{2}$ 로 환산 보고한다. 환산이 불가능 할 때는 규격을 자세히 기입한다.

부록 II. 도량형 환산표

척(尺)	척(町)	리(里)	리(里)	리(米)	촌(寸)	척(尺)	리(里)	리(里)
1	0.00277	0.00007	0.30303	11.9305	0.996211	0.631403	0.000186	
360	1	0.02777	109.09	4,294.99	357,916	119,306	0.067784	
12,960	36	1	3,927.27	154,619	12,684.9	4,394.99	2.44038	
3.3	0.009166	0.000254	1	39.3707	3.28089	1.09363	0.000621	
0.063818	0.000232	0.000006	0.025399	1	0.06333	0.27777	0.000015	
1.00582	0.002753	0.00008	0.304974	12	1	0.33333	0.000189	
3.01746	0.008381	0.000289	0.914383	36	3	1	0.000548	
5,310.73	14.752	0.409.779	1,609.31	63,360	5,280	1,760	1	

	돈(噸)	과(貫)	근(斤)	그램(鎰)	온스(兩)	파운드(lbs)	돈(鎰)	돈(鎰)
돈	1	0.001	0.00625	38.75	0.192277	0.008267	0.000003	0.000004
관	1,000		6.25	3,750	192.277	8.26732	0.00869	0.004193
근	160	0.16		600	21.1641	1.32277	0.00059	0.000661
그램(鎰)	0.26666	0.000266	0.001666	1	0.035273	0.002204	0.000009	0.000001
온스(兩)	7.55984	0.007559	0.047249	38.3493	1	0.0625	0.000027	0.000031
파운드(lbs)	120.958	0.120958	0.755988	453.592	16	11	0.000046	0.0005
돈(鎰)	270.946	307.946	1,693.41	1,014,047	35,840	2,240	1	1.12
돈(鎰)	241.916	241.916	1,511.97	907,178	32,000	2,000	0.892857	1

	홉(合)	승(升)	두(斗)	석(石)	입방미터(坪)	리터(ℓ)	개봉(명)	개봉(미)
홉	1	0.1	1.01	0.001	0.00018	0.18039	0.039682	0.047656
승	10	1	0.1	0.01	0.001803	1.8039	0.396185	0.476567
두	100	10	1	0.1	0.018039	18.039	3.96185	4.76567
석	1,000	100	10	1	0.18039	180.39	39.6185	47.6567
입방미터 (㎥)	5,543.22	554.362	55.4362	5.54362	1	1,000	219,979	264.1866
리터(ℓ)	5,543.52	0.55435	0.05543	0.005543	0.001	1	0.219975	0.264186
개봉(명)	25,2006	2,52006	0.252006	0.0252	0.004545	4,54596	1	1,201
개봉(미)	20,9833	2,09833	0.209833	0.209833	0.003785	3,78543	0.832699	1

부록 III. 주요 단위 해설

1. gr : 용액중의 물질함량을 표시할 때 중량 백분율을 표시하는 약호이다.

2. d (데니어, Denier) : 450 m의 장사(長糸)로 0.05 g이면 데니어임.

3. s (번수, 番數) : 전사 1파운드의 길이 즉 4,436,889 야드를 전환인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됨.

가. $4,436,889 / (\text{데니어} \times 840) = \text{면사 번수}$

∴ 데니어 : 5282 / 면사 번수

(840 야드는 1' s 면사의 길이)

나. $4,436,889 / (\text{데니어} \times 560) = \text{소모사 번수}$

∴ 데니어 = 7,923 / 소모사 번수

(560 야드는 1' s 소모사의 길이)

다. $4,436,889 / (\text{데니어} \times 256) = \text{방모사 번수}$

∴ 데니어 = 17,331.6 / 방모사 번수

(256 야드는 1' s 방모사의 길이)

소모사는 영국식으로는 560 야드 1 파운드의 것을 1 번수라 함.

예컨대 32 번수 단사(單糸)의 경우는 $1/32' s$.

쌍사(雙糸)의 경우는 $2/32' s$ 로 됨.

4. 추(錘) : 조방기(組紡機), 정방기(精紡機), 연사기(捻糸機) 등 스핀들을 사용하는 기계의 양을 나타냄.

면방·링 정방기는 1일 16 시간 가동으로 20 번수를 0.5 파운드 정

도 생산하는 능력은 가정. 소모물, 정방기로는 48 번수를 0.4 파운드

로 생산함.

5. 배수톤 (排水屯) : 배의 수면 밑의 체적과 동일한 체적을 가진 물의 중량 바닷물일 때는 36 t³ 민물일 때는 36 t³ 가 배수량 른 균함의 크기를 표시하는데 사용된다.
6. D/W (Dead weight) : 화물을 만재한 상태에서 선박자체의 무게를 뵤 중량 2,240 파운드를 1 중량톤으로 한다.
7. G/T (Gross Tonnage) : 배의 용적을 표시하는 단위로 선폭×길이×높이의 t³ 1,000 t³ 를 1 G/T으로 한다.
8. 노트 (Knot) : 배가 1시간에 1 해리 (= 1,853 m) 를 달리는 속력
9. S/F₈ (Square Foot $\frac{1}{8}$ inch) : 갑판의 체적을 나타내는 단위로서 1 feet × 1 feet $\frac{1}{8}$ 인치의 체적을 말한다. 이를 m³로 환산하면 $0.3048m \times 0.3048 m \times 0.0254 m \times \frac{1}{8} = 0.00027 m^3$ 이다.

- [주]
1. 1세..... 1치 × 1치 × 12 자
 2. 1석..... 180 L
 3. 1근..... 1.3 Dos
 4. 1관..... 8.27 #
 5. 1압..... 409 #
 6. 1평..... 3.3 m²
 7. 1평..... 1.5 평방척
 8. 목제..... 3 분판 1평은 9세
 4 분판 1평은 12세
 5 분판 1평은 15세

재고통계조사지침서

1979

1 . 조사개요	3
가 . 조사목적	3
나 . 조사의 법적근거	3
다 . 조사의 범위	3
라 . 조사내용	3
마 . 조사결과보고	3
바 . 조사대상 및 단위	4
사 . 조사시기	6
아 . 조사방법	6
2 . 실사 및 면접	7
가 . 실사	7
나 . 면접	9
3 . 조사표류 기입요령	11
가 . 일반적인 유의사항	11
나 . 항목별 기입요령	11
4 . 검토 및 제출	16
가 . 검토	16
나 . 제출	16

5. 재고통제조사 지정품목 분류표	18
부록Ⅰ. 문제점 및 유의사항	20
부록Ⅱ. 도량형 환산표	25
부록Ⅲ. 주요단위 해설	28

1. 조사 개요

가. 조사목적

이 조사는 국내의 주요물자에 대한 보유량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물자수급의 계획 수립 또는 평가 자료를 제공함에 있다.

나. 조사의 법적근거

이 조사는 통계법(법률 제 980 호 개정법률 제 2799 호)에 의하여 지정 통계 제 26 호로 지정된 통계이다.

다. 조사범위

한국표준 산업분류 61도매중 611 일반도매업체중에서 법인 및 종업원 5인이상인 개인 사업체

라. 조사내용

이 조사는 지정된 도매업체의 취급 상품중 매월 지정된 품목에 대한 구입량, 출하량, 재고량과 종업원수 등을 조사한다.

마. 조사결과 보고

1) 물량통계표 작성

업종별, 품목별, 지역별 등의 물량통계표를 매월 작성 이용기관에 송부.

2) 지수작성

물량통계 자료를 기초로 업종 및 품목별 판매업자 구입, 출하 및 재고지수 작성

바. 조사대상 및 단위

1) 조사대상

이 조사의 산업상의 조사 범위는 한국 표준 산업분류에 의한 일반 도매업이며 조사 대상 사업체는 일반 도매업체 중에서 지정된 사업체이다.

각 조사원이 담당할 조사 대상 사업체는 각 조사구별 사업체 명부에 명시되어 있으며 별도 지시에 의하여 보완한다.

※ 산업 분류상 도매와 소매업의 구분

가) 도매업

(1) 도매업이란 주로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소매업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11) 광공업, 운수통신업, 관공서, 학교, 병원 및 기타 산업용 사용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111) 광업 및 제조업체가 다른 장소에서 자기제품을 도매하는 경우

※ 제조와 판매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회사나 출장소등은 관리 또는 주된 산업인 광업 및 제조업으로 분류하므로 도매업에 포함하지 않는다.

※ 개인 또는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상품매매의 중개나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단 본 조사에서는 제외됨)

(2) 도매업에 포함되는 사업체의 중요한 형태는 다음과 같다.

i) 도매상 : 일반도매상, 산업용배급업, 소매를 주로하는 상사회사, 광공업회사의 도매사업소

ii) 하청제조도매상 : 스스로는 상품을 만들지 않고 자기 소유의 원재료를 하청공장 등에 지급해서 제품을 만들게 한후 이를 자기 명의로 도매하는 사업체

iii) 대리상, 중개상 : 주로 수수료를 받고 상품매매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는 사업체(단 본 조사에서는 제외됨)

그러나 대리점의 명칭을 가지고 실체는 상품의 대리업무는 하지않고 별개의 경영으로 도매를 하는 경우는 일반도매업으로 취급한다.

iv) 무역상, 무역중개상(오파상) :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을 사업으로 하는 경우와 중개를 사업으로 하는 경우(단 본 조사에서는 제외됨)

나) 소매업

소매업은 주로 개인용 가정용 소비를 위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조사단위

조사의 단위는 개개의 사업체(점포)이다. 여기서 사업체란 '상

품의 매매가 영업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개개의 물리적 장소^㉑를 말하며 하나의 구획을 차지하고 있는 장소이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별도로 취급한다.

가) 동일구내에 둘 이상의 사업체가 있을 때에는 경영주가 같은 사람인 경우는 하나의 단위로 취급하지만 경영주가 다르면 별개의 사업체로 취급한다. 여기서 동일구내라 함은 일반적으로 울타리 같은 것을 가진 장소로 관계자 이외에는 자유로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장소를 말한다. 동일구내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임금 및 경영장부가 같은 경우에만 하나의 사업체로 본다.

나) 가까운 거리의 두개 이상의 장소에서 경영을 하고 있을지라도 임금이나 경영장부가 같은 경우는 하나의 사업체로 본다.

이때 가까운 거리란 나란히 있거나 길 건너 마주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극히 좁은 범위로 한정한다.

삼. 조사시기

조사의 기준 시점은 대월말이며 조사의 기준기간은 그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1개월로 한다.

다. 조사방법

면접식 타계주의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사업체는 우편 조사한다.

2. 실 사 및 면 접

가. 실 사

1) 조사원은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개개의 사업체에 대하여 사업주 및 판매 책임자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체의 업종에 대한 특성, 동향 및 종업원수를 파악하고 조사에 임해야 한다.

2) 조사원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담당조사구내의 지정사업체를 순방하여 조사표의 기입을 완료하도록 할 것이며 응답자의 부재 등 제 사유로 인하여 조사표를 작성치 못하였거나 조사표 기입상에 잘못이 발견된 사업체는 10~12일까지 사이에 재 방문하여 조사표의 작성을 완료토록 한다.

3) 조사원은 별도 배부된 「조사기록부」에 다음 조사를 위하여 참고가 될 사항을 기록하여 두어야 하며 이 조사기록부와 기타 사항을 참고로 하여 조사의 누락이나 오기 또는 잘못된 조사가 없이 조사표가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4) 관할 구역내에 신규사업체 및 사업체 이동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다음 요령에 의거 반드시 조사표 적요란에 명시함과 아울러 별도의 「변동사항 보고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가) 응답불응 사업체

조사대상 사업체가 비협조적이거나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는 조사의 목적과 자료의 효율성을 이해시키고 비밀이 보장되는 점을 강조하여 계속 상대방의 협조를 촉구하여야 하며 2, 3차 방문시에도 불응할 경

우는 지도원을 경유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불확실한 신고를 하는 사업체

사업주나 대리인이 불확실한 신고를 하거나 허위응답을 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업체의 규모나 종업원수 업종 및 전월사항을 참고하여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협조를 구하여야 하며 계속 불확실하게 응답할 때는 조사원은 지도원에게 보고하고 지도원은 중앙에 보고한다.

다) 폐업, 전업, 휴업 사업체

폐업 및 휴업 사업체에 대하여는 지도원 확인서를 첨부 보고하고 폐업 및 휴업일자, 폐업 및 휴업 사유등을 적요란에 기입하고 별도 지시가 없는한 계속 조사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라) 이전사업체

조사대상 사업체가 이전하였을 경우에는 이웃이나 동사무소에 문의하는등 최선의 방법에 의하여 그 이전지를 찾아내도록 하여야 하며 조사표상에는 새로 이전된 곳의 소재지 전화번호등 모든 변경사항을 기입하고 적요란에 "이전"이라 표시한다.

1) 담당조사구내로 이전된 경우에는 계속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11) 자기가 담당하는 조사구 외로 사업체가 이전하였을 경우에는 그 달에 한하여 조사표를 작성 제출한다.

마) 명칭변경사업체

조사대상 사업체가 명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조사표상에 변경후 명칭을 기입하고 적요란에는 "명칭변경"이라 표시하여 제출할 것이며 사업체 명부도 변경된 내용을 수정 보완한다.

바) 신규사업체

1) 색출대상 사업체

관할 조사구내에 재고통계조사 대상품목 취급업체로서 조사대상 사업체 명부에 누락된 법인 도매업체나 종업원 5인 이상의 개인 도매업체가 발견될 시에는 "신규사업체 색출 보고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1) 조사원은 분기별로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세무서에 등록된 신규 도매업체를 작성, 중앙에 제출한다.

111) 예비실사: 신규 색출된 사업체에 대한 예비실사지시를 받은 해당 조사원은 예비실사를 완료하고 재고통계조사 예비조사보고서를 중앙에 제출한다.

1V) 추가대상 사업체

추가대상 사업체에 대한 실사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사업체를 조사대상 사업체 명부에 추가하여 매월 조사를 실시한다.

나. 면 접

본 조사는 사업체의 비밀 사항인 월중판매량, 구입량, 월말 재고량등을 조사하게 되므로 사업주의 협조를 얻기가 어려워 조사상 애로가 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조사대상처를 방문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특히 유의하여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1) 조사원은 대상사업체를 방문하여 사업주 또는 실무자와의 면접을 요청할 때에는 단정한 용모와 품행을 유지하고 응답자에게 좋은 인상을

주도록해야 하며 정중한 태도로 자기 소개를 먼저한 다음에 신분증을 제시한다.

2) 조사내용은 각 사업체 및 개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므로 방문객이나 손님이 있을 때는 그 자리에서 질문하여도 좋은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3) 그 자리에서 질문하여도 좋을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동시에 본 조사는 지정통제로서 통제법에 의하여 대상 사업체는 신고 의무가 있으며 비밀이 엄수된다는 것을 잘 설명하여야 한다.

4) 조사표에 기입될 내용이외의 질문을 하거나 응답이 애매한 경우 유도 질문을 해서는 안된다.

5) 조사내용은 타업체와 이해 관계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비밀을 타에게 절대 누설 해서는 안된다.

6) 전월대비 물량변동이 심한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그 원인을 질문하여 적요란에 기록한다.

3. 조사표류 기입요령

가. 일반적인 유의사항

1) 지정된 품목이 제철에 따라 취급실적이 없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별도의 지시가 없는한 조사표를 작성 제출한다. 단 사업체에서 앞으로 취급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경우 그 내용을 자세히 보고하여 조사중지를 받을 수 있다.

2) 대상사업체에서 기 대상품목외에 새로운 지정품목을 취급할 시는 이것도 추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3) 폐업 및 휴업의 경우에도 중앙에서 별도의 지시가 없는한 조사표를 계속 작성, 제출해야 한다.

나. 항목별 기입요령

1) 조사구 및 사업체 번호

담당 사업체 명부에 부여된 조사구 번호와 사업체 번호를 별도 지시가 없는한 교정시켜 기입한다.

2) 사업체명 및 소재지

가) 사업체명이라 함은 사업체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말하며 이는 사업체의 구체적인 명칭을 기입한다.

나) 사업체의 소재지는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실제 장소를 말하며 시도의 명칭부터 지번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기입한다.

다) 사업체명 및 대표자명은 정자로 바르게 기입하여야 한다.

라)전화번호란을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며 누락시켜서는 안된다.

3)조직 형태

해당란에 0표한다.

(이때 법인은 등기부에 법인 등기가 된 업체를 말한다.)

4)품목번호 및 품목명

품목번호란에는 "지정품목분류표" 좌측에 있는 숫자를 기입한다.

5)단위 및 규격

각 품목의 규격은 지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품목의 규격을 그대로 적으면 된다. 그러나 동일 명칭의 품목이라도 규격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은 규격별로 구분하여 기입하고 여러가지 규격품을 단일규격으로 환산 가능할 때에는 단일규격으로 환산하여 기입한다. 각 품목의 단위는 "지정품목분류표"에 지정된 단위를 사용하며 그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단위와 상이할 때는 지정된 단위로 환산하여 기입한다.

6)월초 재고량(전월말 재고량)

그달의 초일에 사업체에서 보유하였던 상품의 재고량 즉 전월에서 이월된 재고량을 말한다. 따라서 전월에 조사보고된 조사표상의 월말재고량과 금월의 월초재고량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7)월중 구입량

그 달중에 외부로 부터 현금 또는 외상으로 구입한 양과 타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양을 말한다. (하청제조 도매상의 경우는 위탁제품량)

8)월중 출하량(판매량등)

그 달중에 실제로 그 사업체의 현물관리를 떠난 부분의 총량을

말한다.

즉 가)외부에 판매한 것 (외상판매 포함)

나)점본 또는 선물로서 증정한 것.

다)그 사업체에서 사무용 또는 급여용으로 출고한 것. 등의 합계량을 말한다. 따라서 월말까지 출하하기로 계약된 경우라도 상품이 인도(출고)되지 않았으면 출하로 보지 않는다.

9)과부족 보정량

그 달중에 화재, 도난등의 재난에 의하여 결손처분된 양을 말하며 판매한 제품중 반송 등에 의하여 발생한 증감량도 이에 포함된다. 증감은 「+」와 「-」의 부호로 표시하여 적요란에 반드시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10)월말재고량

본 월말재고량은 재고 통제조사의 핵심조사 항목이므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월말 재고량이란 그달의 말일에 그 사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체의 상품 보유량을 말하며 여기에는 이미 판매되었으나 미출고된 부분도 포함된다. 따라서 자기소유 상품이던 타인소유 수탁품 미출고분등 상품이 상품대장(또는 물품대장, 현품대장등)에 기재된 일체의 상품을 포함하며 대장이 없는 업체는 현물재고 위주로 파악한다.

한편 상품을 자기 창고 이외의 타인창고(영업창고등)에 보관하고 있을 때에도 이를 전부 포함시켜야 한다.

단, 조사 기준일 현재 수송도중에 있는 것은 도착지에서 파악한다.

11) 종업원

가)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

“자영업주”란 사업체의 주인으로서 급여를 받지 않으면서 실제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무급가족 종사자”란 자영업주와 가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업체의 업무에 무급으로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주당 24시간 이상 종사한 자에 한함)

조직형태가 개인인 경우 반드시 무급가족 종사자가 1인 이상 존재함을 명심해야 한다.

나) 상용고용원

“상용고용원”이라 함은 일정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정 급여를 지급받고 고용된 자를 말하며 아래의 경우도 포함한다.

1) 법인 사업체에서 일정한 급여를 받는役員(예: 사장, 이사, 감사등)

그러나 이익 배당만 받는 주주는 제외한다.

11) 자영업주의 가족으로 일정한 급여를 받는 자.

111) 일정 급여 또는 판매 수수료를 받는 의무사원 판매원 및 배달원

다) 임시고용원

“임시고용원”이라 함은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급여를 받고 임시 또는 일일로 고용된 자를 말한다.

라) 해당사항이 없으면 조사표의 종업원수란에 0을 기입한다.

12) 적요란

가) 상품 재고량이 전월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증가 또는 감소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증감요인을 밝혀 기입하여야 한다.

나) 휴업, 폐업, 이전, 소재불명 등의 유고내용을 자세히 기입한다.

4. 검토 및 제출

가. 검 토

접수된 조사표가 질의 조회나 재조사 지시를 받지 않도록 반드시 다음 내용을 철저히 검토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 (1) 조사기준일(년 월분)조사구 및 사업체 번호 등의 기입 누락 여부
- (2) 품목명 및 품목번호가 「지정품목 분류표」에 지정된 대로 기입되었거나 사업체별 지정상품 누락 여부.
- (3) 전월말 재고(이미 제출된 조사표에 기재된 것)와 금월초 재고의 일치 여부
- (4) 「월초재고량+월중구입량-출하량+과부족보정량=월말재고량」의 성립 여부
- (5) 조사된 숫자의 증감이 전월과 비교하여 심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적요란에 기입하여야 한다.
- (6) 기타 조직형태의 기입여부, 산업분류의 기입여부

나. 제 출

- (1) 매 실사일의 조사표를 제출함에 있어서는 조사표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5매 내지 10매씩 분할하여 제출하되 늦어도 그달의 20일까지는 담당조사표 전부가 지도원에게 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 (2) 지도원은 이를 접수되는 대로 일괄 취합하여 중앙에 송부하되 담

당구내 조사표 전부를 25일까지 중앙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기타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조사표 제출이 늦어지면 지연 사유서를 조사원은 지도원에게, 지도원은 중앙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재고통계조사지정품목분류표

품·목 번호	품 목 명	단위	품·목 번호	품 목 명	단위
6111 101	밀 가 루	kg	6113 208	전 력용전선및케이블	kg
" 602	전 빵	천 원	" 209	통신용전선및케이블	"
" 901	설 탕	kg	" 212	축 전 지	개
" 903	된 장	"	" 213	건 전 지	"
" 904	간 장	kg	6114 101	의 약 품	천 원
" 915	축 산물 통조 립	kg	" 206	치 약 및 치 료	kg
" 916	물고기및해산물통조림	"	" 301	화 장 비 누	"
6112 101	면 사	"	" 302	세 탁 비 누	"
" 104	혼 방 소 모 사	"	" 401	살 충 제	"
" 107	아 크 리 렉 사	"	" 501	페 인 트	"
" 201	면 직 물	m	" 901	황 산	"
" 302	모 포	매	" 903	가 성 소 다	"
" 303	타 을	"	" 903	그 리 세 린	"
" 501	고 무 신	족	" 909	다 이 나 마 이 트	"
" 502	운 동 화	"	" 910	초 안 폭 약	"
" 503	고 구 장 화 및 우 화	"	" 914	휘 발 유	kg
" 903	화 섬 사 양 말	"	" 915	항 공 유	"
6113 205	전 화 기	대	" 916	경 유	"

품 목 번 호	품 목 명	단위	품 목 번 호	품 목 명	단위
6114917	중 유	㎏	6119 303	자동차용타이어	본
" 918	방 카 C 유	"	" 401	신 문 용 지	kg
" 919	등 유	"	" 402	백 상 지	"
" 920	윤 활 유	"	" 405	아 트 지	"
" 921	액화석유가스(LPG)	"			
6116903	재 봉 틀	대			
6117101	각 재	m			
" 102	판 재	"			
" 103	합 판	"			
" 201	시 멘 트	%			
" 501	판 유 리	상자			
" 903	석면슬레이트	m ²			
" 904	프라스틱파이프및관	kg			
6118202	강 관	%			
" 303	아 연 도 철 판	"			
" 304	석 도 철 판	"			
" 909	전 기 동	kg			
" 910	연 피	"			
" 911	아 연 피	"			

부록 I . 문제점 및 유의점

1. 밀가루의 지정단위는 포대가 아니고 kg이다.
1포대당 용량이 24kg, 22kg, 10kg, 3kg, 1kg등 다양한바 반드시 kg으로 환산 보고할 것이며 미수용 뿐만 아니라 관수용도 포함 조사한다.
2. 해산물통조림, 축산물통조림(피고기등)은 구분하여 조사한다.
3. 통조림과 냉동해산물의 지정단위는 "kg"이므로 관 또는 상자(C/S)로 보고해서는 안된다.
4. 면직물에는 광목(소창포함), 내광목, 육광목, 당옥, 면범포, 포플린, 양면복지를 포함한다. (단 골멘은 제외한다)
5. 섬유제품중 지정단위가 m로 되어있는 품목은 사업체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단위가 "Yds" "마" "Roll"등 다양하므로 반드시 m로 환산 보고한다.
예 1 : 직물폭이 36인치 길이 1Yds는 $0.9144 \text{ m} \times 0.9144 = 0.8361 \text{ m}^2$ 가 된다.
6. 타올, 일반세균용타올(가로 80cm×세로 33cm정도) 1매 정도로서 제반 타올제품도 포함한다.
7. 전력용 전선 및 케이블과 통신용 전선 및 케이블의 차이는 그 용도에 따라서 구별한다.
8. 전화기에는 체신 1호인 표준형 전화기뿐만 아니라 장식용 전화기등도 조사하되, 단 무전기나 인터폰은 제외한다.

9. 페인트는 수성페인트와 유성페인트를 포함 조사한다.

10. 휘발유에는 고급휘발유와 보통휘발유가 있는바 구분치 말고 통합 조사한다.

11. 병카 A.B유는 증유에 포함조사해야하며 경질증유도 증유에 포함 조사한다.

12. 윤활유에는 구리스를 제외할 것이며 윤활유 1ℓ = 20ℓ로 환산된다.

13. 액화석유가스(L.P.G)는 프로판가스와 부탄가스를 통합하여 조사할 것이며

프로판가스	1kg = 1.97 ℓ	} 로 환산한다.
부탄가스	1kg = 1.73 ℓ	

14. 판유리는 지정규격인 2mm로 환산 보고하여야 한다.

만약 3mm 100명 200상자를 2mm로 환산하면

$$200 \times \frac{3}{2} = 300 \text{ 상자로 된다.}$$

15. 석면스레이트는 일반적으로 사업체에서 단위를 "환산매수"로 사용하고 있으니 지정단위인 m²로 환산 보고하여야 한다.

$$\text{환산매수 1매} = 1.1 \text{ m}^2$$

환산매수는 모든 종류의 스테트를 소플스페트(대골, 용마루)로 환산한 매수인바 환산매수 1매당 1.1 m²를 곱 해주면 된다.

16. 각재, 판재, 합판등은 지정단위가 m²인바 才, 매, B/F, S/F등으로 조사치 말고 m²로 환산 보고할것.

$$1 \text{ 才} = 0.00334 \text{ m}^2 \quad 1 \text{ m}^2 = 300 \text{ 才}$$

$$1 \text{ m}^2 = 300 \text{ 才} \quad 1 \text{ B/F} = 0.002359 \text{ m}^2$$

$$1 m^2 = 423.77 B / F$$

17. 아연도 철판은 박판에 아연을 도금한 것이며 (일명 합석) 석도 철판을 강판의 양면에 주석을 도금한 것으로 특별규연강의 박판임.

18. 아연도 철판의 규격별 중량은 다음과 같으니 환산에 참고할것

$$0.23 \text{ mm} = 3.34 \text{ kg}$$

$$0.45 \text{ mm} = 6.32 \text{ kg}$$

$$0.25 \text{ mm} = 3.5 \text{ kg}$$

$$0.55 \text{ mm} = 7.69 \text{ kg}$$

$$0.30 \text{ mm} = 4 \text{ kg}$$

$$0.70 \text{ mm} = 9.7 \text{ kg}$$

$$0.33 \text{ mm} = 4.73 \text{ kg}$$

$$0.35 \text{ mm} = 5 \text{ kg}$$

$$0.91 \text{ mm} = 12.34 \text{ kg}$$

19. 신문용지와 백상지는 일반적으로 사업체에서 갱지와 모조지로 호칭 되고

있는바 지정 품목명인 신문용지로 백상지를 보고할것.

21. 강 관

강관의 종류에는 그 제조법 용도 직경의 대소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강관의 지정단위가 %인바 각 대상 사업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m"를 "%"로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관의 호칭	m를 %로 환산하는 법	관의 호칭	m를 %로 환산하는 법
BS백관 1/2	$cm \times 1.23 \div 1,000 = \%$	BS백관 2 1/2	$cm \times 6.34 \div 1,000 = \%$
" 3/4	$cm \times 1.59 \div 1,000 = \%$	" 3	$cm \times 8.49 \div 1,000 = \%$
" 1	$cm \times 2.46 \div 1,000 = \%$	" 5	$cm \times 17.2 \div 1,000 = \%$
" 1 1/4	$cm \times 3.17 \div 1,000 = \%$	" 6	$cm \times 19.2 \div 1,000 = \%$
" 1 1/2	$cm \times 3.65 \div 1,000 = \%$	BS흑관 1/2	$cm \times 1.23 \div 1,000 = \%$
" 2	$cm \times 5.17 \div 1,000 = \%$	" 3/4	$cm \times 1.59 \div 1,000 = \%$
" 2 1/2	$cm \times 6.63 \div 1,000 = \%$	" 1	$cm \times 2.46 \div 1,000 = \%$
" 3	$cm \times 8.64 \div 1,000 = \%$	" 1 1/4	$cm \times 3.17 \div 1,000 = \%$
" 4	$cm \times 12.4 \div 1,000 = \%$	" 1 1/2	$cm \times 3.65 \div 1,000 = \%$
BS백관 1/2	$cm \times 1.25 \div 1,000 = \%$	" 2	$cm \times 5.17 \div 1,000 = \%$
" 3/4	$cm \times 1.6 \div 1,000 = \%$	" 2 1/2	$cm \times 6.63 \div 1,000 = \%$
" 1	$cm \times 2.46 \div 1,000 = \%$	" 3	$cm \times 8.64 \div 1,000 = \%$
" 1 1/4	$cm \times 3.16 \div 1,000 = \%$	" 4	$cm \times 12.4 \div 1,000 = \%$
" 1 1/2	$cm \times 3.63 \div 1,000 = \%$	" 5	$cm \times 16.7 \div 1,000 = \%$
" 2	$cm \times 5.12 \div 1,000 = \%$	" 6	$cm \times 19.8 \div 1,000 = \%$

관의 호칭	m를 %로 환산하는 법	관의 호칭	m를 %로 환산하는 법
KB쪽관 1/2	$cm \times 1.25 \div 1,000 = \%$	KB쪽관 4	$cm \times 12.3 \div 1,000 = \%$
" 3/4	$cm \times 1.6 \div 1,000 = \%$	" 5	$cm \times 17.2 \div 1,000 = \%$
" 1	$cm \times 2.46 \div 1,000 = \%$	" 6	$cm \times 19.2 \div 1,000 = \%$
" 1 1/4	$cm \times 3.16 \div 1,000 = \%$	구조관 1	$cm \times 2.46 \div 1,000 = \%$
" 1 1/2	$cm \times 3.63 \div 1,000 = \%$	" 1 1/4	$cm \times 3.6 \div 1,000 = \%$
" 2	$cm \times 5.12 \div 1,000 = \%$	" 1 1/2	$cm \times 3.63 \div 1,000 = \%$
" 2 1/2	$cm \times 6.34 \div 1,000 = \%$	" 2	$cm \times 5.12 \div 1,000 = \%$
" 3	$cm \times 8.49 \div 1,000 = \%$	" 3	$cm \times 8.49 \div 1,000 = \%$

22. 합관은 규격이 다양한 바, 다음 요령으로 환산한다.

규격			1매당 m^2	좌기두께의 18/F당 m^2
가로 (F)	세로 (F)	두께 (mm)		
4	8	3.2	0.009532	0.002976
3	6		0.0053568	
4	8	3.6	0.010136	0.003348
3	6		0.0060264	
4	8	4	0.011904	0.00372
3	6		0.006696	
4	8	6	0.017857	0.00558
3	6		0.010044	

부록 II · 도량형 환산표

길이

	척 (呎)	정 (町)	리 (里)	미 (米)	촌 (吋)	척 (呎)	마 (馬)	리 (里)
척	1	0.00277	0.000077	0.30303	11.9305	0.994211	0.881403	0.000188
정	360	1	0.027777	109.09	4,294.99	357.916	119,306	0.067784
리	12,960	36	1	3,927.27	154,619	12,884.9	4,394.99	2.44033
미 (m)	3.3	0.009166	0.000254	1	39.3707	3.28089	1.09363	0.000621
촌 (in)	0.083818	0.000232	0.000006	0.025399	1	0.08333	0.27777	0.000015
피트 (ft)	1.00582	0.002793	0.00007	0.304974	12	1	0.33333	0.000189
마 (Yds)	3.01746	0.008381	0.000233	0.914383	36	3	1	0.000568
리	5,310.73	14,752	0.409.779	1,609.31	63,360	5,280	1,760	1

	돈 (頓)	관 (貫)	근 (斤)	그람 (g)	온스 (oz)	파운드 (lb)	돈 (鎊)	돈 (噸)
돈	1	0.001	0.00625	3.75	0.132277	0.00267	0.000003	0.000004
관	1,000	1	6.25	3,750	132,277	8.26732	0.00369	0.004133
근	160	0.16	1	600	21,1641	1.32277	0.00059	0.000661
그람 (g)	0.25566	0.000266	0.001666	1	0.035273	0.002204	0.000009	0.000001
온스 (oz)	7.55984	0.007559	0.047249	38,3595	1	0.0625	0.000027	0.000031
파운드 (lb)	120,958	0.120958	0.755988	453,592	16	11	0.000446	0.0005
돈 (鎊)	270,946	307,946	1,633.41	1,014,047	35,840	2,240	1	1.12
돈 (噸)	241,916	241,916	1,511.97	907,178	32,000	2,000	0.892857	1

	홉 (合)	승 (升)	두 (斗)	석 (石)	입방미 (㎥)	리터 (ℓ)	가롱 (영)	개롱 (미)
홉	1	0.1	1.01	0.001	0.00018	0.18039	0.039682	0.475567
승	10	1	10.1	0.01	0.001803	1.8039	0.396185	0.475567
두	100	10	101	0.1	0.018039	18.039	3.96185	4.75567
석	1,000	100	1,010	1	0.18039	180.39	39.6185	47.5567
입방미 (㎥)	5,543.22	554.352	5,543.52	5.54352	1	1,000	219.979	264.1856
리터 (ℓ)	5,543.52	0.55435	0.05543	0.005543	0.001	1	0.219975	0.264186
개롱 (영)	25.2006	2.52006	0.252006	0.0252	0.004545	4.54596	1	0.01
개롱 (미)	20.9833	2.09833	0.209833	0.209833	0.003785	3.78643	0.832699	1

부록 III . 주요단위 해설

1. d (데니어, Denier) : 450 m의 장사(長糸)로 0.05 g이면 데니어임.

2. s (번수, 番數) : 전사 1 파운드의 길이 즉 4,436,889 야드를 전 환인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됨.

가. $4,436,889 / (\text{데니어} \times 840) = \text{면사 번수}$

∴ 데니어 : 5282 / 면사 번수

(840야드는 1' s면사의 길이)

나. $4,436,889 / (\text{데니어} \times 560) = \text{소모사 번수}$

∴ 데니어 = 7,923 / 소모사 번수

(560야드는 1' s소모사의 길이)

다. $4,436,889 / (\text{데니어} \times 256) = \text{방모사 번수}$

∴ 데니어 = 17,331.6 / 방모사 번수

(256야드는 1' s방모사의 길이)

소모사는 영국식으로는 560야드 1 파운드의 것을 1 번수라 함.

예컨대 32 번수 단사(單糸)의 경우는 $1 / 32$ ' s

쌍사(雙糸)의 경우는 $2 / 32$ ' s로 됨.

3. 추(錠) : 조방기(組紡機), 정방기(精紡機), 연사기(捻糸機) 등

스핀들을 사용하는 기계의 양을 나타냄.

재고통계조사표

통계법의 규정에 따라 이 조사표에 기재되는 내용은 통계목적에만 사용하며 그 비밀은 절대 보장된다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조사구 및 사업체번호	—	산업 분류	유고 사항	※
----------------	---	----------	----------	---

(197 년 월분)

사업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소재지	조직형태
			시도 구시군 동읍면 가리동	1.법인 2.개인

일련 번호	품목번호	상품명	규격	단위 ※	월초재고량 (전월말재고량)		월중구입량		월중출하량		과부족 보정량	월말재고량	
					백십만 만	천백십일	백십만 만	천백십일	백십만 만	천백십일		천백십일	백십만 만
1													
2													
3													
4													
5													
6													
7													
8													
9													

종 업 원 수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명	조사일	197 년 월 일
	상용고용원	명	응답자 성명	(인)
	임시고용원	명	조사자 성명	(인)
	제	명	지도구 책임자	(인)

비 고	증감 요인	
	기타	※

- 기입요령
1. 품목번호, 상품명, 단위: 별첨 「지정품목분류표」에 의함.
 2. 월초재고량: 그달 초일에 사업체가 보유한 상품량 (당월초재고량 - 전월말재고량)
 3. 월중구입량: 그달 중에 외부로부터 현금 또는 외상으로 구입한 양 (하청제조 도매상의 경우는 위탁제품량)
 4. 출하량 (판매량 등): ①외부에 판매한 것 (외상 판매 포함) ②건본 또는 선출양 ③사무용 또는 급여용 ④자기소비 (제투입) 용 등으로 출고한 총량

5. 과부족 보정량: 그달 중에 화재, 도난 등의 재난에 의한 결손량 또는 반송 등에 의한 증감량을 말하며 증가(-), 감소(-표시)한 수량을 기입.
6. 월말재고량: 그달의 말일에 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전부 (이미 판매된 상품의 미출고부분도 포함) 즉 사업체의 관리대장에 기재된 일체의 재고량을 말하며 대장이 없는 재고는 현물 재고 위주로 파악함. 단, 운송도중품은 도착지에서만 파악하고 생산자로부터 구입시에는 현물 도착에 불문하고 소유자의 재고로 파악함.

1980

통 계 조 사 지 침

제 4 권

재 고 통계조사
백화점 통계조사

통 계 조 사 지 침

제 4 권

차 례

재고통계조사지침	3
백화점통계조사지침	25

재 고 통 계 조 사

차 례

I. 조사개요	7
1. 조사목적	7
2. 조사의 법적근거	7
3. 조사의 범위	7
4. 조사내용	7
5. 조사결과보고	7
6. 조사대상 및 단위	7
7. 조사시기	8
8. 조사방법	8
II. 조사표 기입요령	9
1. 주의사항	9
2. 항목별 기입요령	9
III. 조사원의 업무	13
1. 실 사	13
2. 검토 및 제출	15
부록1. 재고통계조사 지정품목 분류표	17
부록2. 주요품목별 주의사항	19

I. 조 사 개 요

1. 조사목적

이 조사는 국내의 주요물자에 대한 보유량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물자수급의 계획 수립 및 평가 자료를 제공함에 있다.

2. 조사의 법적근거

이 조사는 통계법(법률 제 980 호 개정법률 제 2799 호)에 의하여 지정통계 제 26 호로 지정된 통계이다.

3. 조사범위

한국표준 산업분류 61 도매업중 611 일반도매업체중에서 법인 및 종업원 5 인이상 개인 사업체로서 59 개 지정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체이다.

4. 조사항목

사업체명 및 소재지 *조직형태, 취급중인 지정품목, 품목별 월중 구입량·출하량·재고량, 월말 종업원 수

5. 조사결과의 이용

가. 물량통계표 작성

업종별, 품목별, 지역별 등의 물량통계표를 매월 작성 이용기관에 송부.

나. 지수작성

물량통계 자료를 기초로 업종 및 품목별 판매업자 구입, 출하 및 재고지수 작성

6. 조사대상 및 단위

가. 조사대상

조사대상 사업체는 일반도매업체중에서 지정된 사업체이며 각 조사원이 담당할 조사대상 사업체는 각 조사구별 사업체 명목에 명시되

있다.

나. 조사단위

조사의 단위는 개개의 사업체(점포)이다. 여기서 사업체란 상품·서비스의 매매가 영업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개개의 물리적 장소를 말하며 하나의 구획을 차지하고 있는 장소이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별도로 취급한다.

(1) 동일구내에 둘 이상의 사업체가 있을 때에는 경영주가 같은 사람인 경우는 하나의 단위로 취급하지만 경영주가 다르면 별개의 사업체로 취급한다. 여기서 동일구내라 함은 일반적으로 울타리 같은 것을 가진 장소로 관계자 이외에는 자유로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장소를 말한다. 동일구내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임금 및 경영장부가 같은 경우에만 하나의 사업체로 본다.

(2) 가까운 거리의 두개 이상의 장소에서 평영을 하고 있을지라도 임금이나 경영장부가 같은 경우는 하나의 사업체로 본다.

이때 가까운 거리란 나란히 있거나 걸건너 마주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극히 좁은 범위로 한정한다.

7. 조사시기

조사의 기준 시점은 매월말이며 조사의 기준기간은 그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1개월로 한다.

8. 조사방법

면접식 타계주의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사업체는 우편 조사한다.

Ⅱ. 조사표 기입요령

1. 주의사항

가. 지정된 품목이 계절에 따라 취급실적이 없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별도의 지시가 없는한 조사표를 작성 제출한다. 단, 사업체에서 앞으로 취급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경우 그 내용을 자세히 보고하여 조사 중지를 받을 수 있다.

나. 대상사업체에서 기 대상품목외에 새로운 지정품목을 취급할 시는 이것도 추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다. 폐업 및 휴업의 경우에도 중앙에서 별도의 지시가 없는한 조사표를 계속 작성, 제출해야 한다.

2. 항목별 기입요령

가. 조사구 및 사업체 번호

담당사업체 명부에 부여된 조사구 번호와 사업체 번호를 별도지시가 없는한 고정시켜 기입한다.

나. 사업체 및 소재지

(1) 사업체명이라 함은 사업체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말하며 이는 사업체의 구체적인 명칭을 기입한다.

(2) 사업체의 소재지는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실제 장소를 말하며 시도의 명칭부터 지번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기입한다.

(3) 사업체명 및 대표자명은 정자로 바르게 기입하여야 한다.

(4) 전화번호란을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며 누락시켜서는 안된다.

다. 조직형태

해당란에 ○표 한다.

(이때 법인은 등기부에 법인 등기가 된 업체를 말한다)

라. 품목번호 및 품류명

품목번호란에는 「지정품목분류표」 좌측에 있는 숫자를 구입한다.

마. 단위 및 규격

각 품목의 규격은 지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품목의 규격을 그대로 적으면 된다. 그러나 동일 명칭의 품목이라도 규격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은 규격별로 구분하여 기입하고 여러가지 규격품을 단일규격으로 환산 가능할 때에는 단일규격으로 환산하여 기입한다. 각 품목의 단위는 「지정품목분류표」에 지정된 단위를 사용하며, 그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단위와 상이할 때는 지정된 단위로 환산하여 기입한다.

바. 월초 재고량(전월말 재고량)

그달의 초일에 사업체에서 보유하였던 상품의 재고량 즉 전월에서 이월된 재고량을 말한다. 따라서 전월에 조사보고된 조사표상의 월말재고량과 금월의 월초재고량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사. 월중 구입량

그 달중의 외부로 부터 현금 또는 외상으로 구입한 양과 타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양을 말한다. <하청제조 도매상의 경우는 위탁제품량>

아. 월중 출하량(판매량등)

그 달중에 실제로 그 사업체의 현물관리를 떠난 부분의 총량을 말한다. 즉,

- (1) 외부에 판매한 것(외상판매 포함)
- (2) 전본 또는 선물로서 증정한 것.
- (3) 그 사업체에서 사무용 또는 급여용으로 출고한 것, 등의 합계량을 말한다. 따라서 월말까지 출하하기로 계약된 경우라도 상품이 인도(출고)되지 않았으면 출하로 보지 않는다.

자. 과부족 보정량

그 달중에 화재, 도난등의 재난에 의하여 결손처분된 양을 말하며 판매한 제품중 반송 등에 의하여 발생한 증감량도 이에 포함된다. 증감은 「+」와 「-」의 부호로 표시하여 적요란에 반드시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차. 월말재고량

본 월말재고량은 재고 통계조사의 핵심조사 항목이므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월말 재고량이란 그 달의 말일에 그 사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체의 상품 보유량을 말하며 여기에는 이미 판매되었으나 미출고된 부분도 포함된다. 따라서 자기소유 상품이던 타인소유 수탁품 미출고분등 상품이 상품대장(또는 물품대장, 현물대장등)에 기재된 일체의 상품을 포함하며 대장이 없는 업체는 현물재고 위주로 파악한다.

한편 상품을 자기 창고 이외의 타인창고(영업창고등)에 보관하고 있을 때에도 이를 전부 포함시켜야 한다.

단, 조사 기준일 현재 수송도중에 있는 것은 도착지에서 파악한다.

카. 종업원

(1)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

▪ 자영업주▪란 사업체의 주인으로서 급여를 받지 않으면서 실제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 무급가족 종사자▪란 자영업주와 가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업체의 업무에 무급으로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주당 24시간 이상 종사한 자에 한함)

조직형태가 개인인 경우 반드시 무급가족 종사자가 1인이상 존재함을 명심해야 한다.

(2) 상용고용원

▪ 상용고용원 ▪ 이라 함은 일정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정 급여를 지급받고 고용된 자를 말하며 아래의 경우도 포함한다.

(가) 법인 사업체에서 일정한 급여를 받는役員

(예: 사장, 이사, 감사등)

그러나 이익 배당만 받는 주주는 제외한다.

(나) 자영업주의 가족으로 일정한 급여를 받는 자.

(다) 일정 급여 또는 판매 수수료를 받는 외무사원 판매원 및 배달원

(3) 임시고용원

▪ 임시고용원 ▪ 이라 함은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급여를 받고 임시 또는 일일로 고용된 자를 말한다.

(4) 해당사항이 없으면 조사표의 종업원수란에 ○을 기입한다.

타. 적요란

(1) 상품재고량이 전월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증가 또는 감소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증감요인을 밝혀 기입하여야 한다.

(2) 휴업, 폐업, 이전, 소재불명 등의 유고내용을 자세히 기입한다.

Ⅲ. 조사원의 업무

1. 실 사

가. 조사원은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개개의 사업체에 대하여 사업주 및 판매책임자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체의 업종에 대한 특성, 동향 및 종업원수를 파악하고 조사에 임해야 한다.

나. 조사원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담당조사구내의 지정사업체를 순방하여 조사표의 기입을 완료하도록 할 것이며 응답자의 부재등 제 사유로 인하여 조사표를 작성치 못하였거나 조사표 기입상에 잘못이 발견된 사업체는 10 - 12일까지 사이에 재 방문하여 조사표의 작성을 완료토록 한다.

다. 조사원은 별도 배부된 「조사기록부」에 다음 조사를 위하여 참고가 될 사항을 기록하여 두어야 하며 이 조사기록부와 기타 사항을 참고로 하여 조사의 누락이나 오기 또는 잘못된 조사가 없이 조사표가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라. 관할 구역내에 신규사업체 및 사업체 이동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다음 요령에 의거 반드시 조사표 적요란에 명시함과 아울러 별도의 「변동사항 보고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응답불응 사업체

조사대상 사업체가 비협조적이거나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는 조사의 목적과 자료의 효율성을 이해시키고 비밀이 보장되는 점을 강조하고 본 조사가 지정통제임을 인식시켜 계속 상대방의 협조를 촉구하여야 한다.

(2) 불확실한 신고를 하는 사업체

사업주나 대리인이 불확실한 신고를 하거나 허위응답을 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업체의 규모나 종업원수 업종 및 전월사항을 참고하여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협조를 구하여야 하며 계속 불확실하게 응답할 때는 조사원은 소장에게 보고하여 같이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폐업, 전업, 휴업 사업체

폐업 및 휴업 사업체에 대하여는 지도원 확인서를 첨부 보고하고 폐업 및 휴업일자, 폐업 및 휴업 사유등을 적요란에 기입하고 별도 지시가 없는한 계속 조사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이전사업체

조사대상 사업체가 이전하였을 경우에는 이웃이나 동사무소에 문의하는등 최선의 방법에 의하여 그 이전지를 찾아내도록 하여야 하며 조사표상에는 새로 이전된 곳의 소재지 전화번호 등 모든 변경사항을 기입하고 적요란에 「이전」이라 표시한다.

(가) 담당조사구내로 이전된 경우에는 계속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나) 자기가 담당하는 조사구 외로 사업체가 이전하였을 경우에는 그 달에 한하여 조사표를 작성 제출한다.

(5) 명칭변경사업체

조사대상 사업체가 명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조사표상에 변경 후 명칭을 기입하고 적요란에는 「명칭변경」이라 표시하여 제출할 것이며 사업체 명부도 변경된 내용을 수정 보완한다.

(6) 신규사업체

(가) 색출대상 사업체 :관할 조사구내에 재고통계조사 대상품목 취급 업체로서 조사대상 사업체 명부에 누락된 법인 도매업체나 종업원 5인 이상의 개인 도매업체가 발견될 시에는 「신규사업체 색출 보고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나) 조사원은 분기별로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세무서에 등록된 신규 도매업체를 작성, 중앙에 제출한다.

(다) 예비실사 : 신규 색출된 사업체에 대한 예비실사지시를 받은 해당 조사원은 예비실사를 완료하고 재고통제조사 예비조사 보고서를 중앙에 제출한다.

(라) 추가대상 사업체 : 추가대상 사업체에 대한 실사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사업체를 조사대상 사업체 명부에 추가하여 매월 조사를 실시한다.

(6) 증감사유

전월대비 물량변동이 심한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그 원인을 질문하여 적요란에 기입하되 통상적인 사유이외의 구체적인 내용을 성실하게 기입한다.

예 : 구입증가로 재고증가(X), 추석수요를 대비한 구입증가(O)

2. 검토 및 제출

가. 검 토

접수된 조사표가 질의 조회나 재조사 지시를 받지 않도록 반드시 다음 내용을 철저히 검토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사기준일(년 월분) 조사구 및 사업체 번호 등의 기입 누락 여부

(2) 품목명 및 품목번호가 「지정품목 분류표」에 지정된 대로 기입되었거나 사업체별 지정상품 누락 여부.

(3) 전월말 재고(이미 제출된 조사표에 기재된 것)와 금월초 재고의 일치 여부

(4) 「월초재고량+월중구입량-출하량+과부족보정량=월말재고량」의 성립 여부

(5) 조사된 숫자의 증감이 전월과 비교하여 심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적요란에 기입하여야 한다.

(6) 기타 조직형태의 기입여부, 산업분류의 기입여부

나. 제출

(1) 매 실사월의 조사표를 제출함에 있어서는 조사표 작성이 완료되는대로 5매 내지 10매씩 분할하여 제출하되 늦어도 그달의 20일까지는 조사표를 전부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소장은 이를 접수되는 대로 일괄 취합하여 중앙에 송부하되 조사표 전부를 25일까지 중앙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조사표 제출이 늦어지면 지연 사유서를 조사원은 소장에게, 소장은 중앙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록 1 >

재고통계조사지정품목분류표

품목 번호	품목명	단위	품목 번호	품목명	단위
6111 101	밀 가 루	kg	6113 208	전력용전선및케이블	kg
" 602	진 빵	천원	" 209	통신용전선및케이블	"
" 901	설 탕	kg	" 212	축 전 지 개	"
" 903	된 장	"	" 213	건 전 지 "	"
" 904	간 장	kl	6114 101	의 약 품	천원
" 915	축산물통조림	kg	" 206	치약 및 치분	kg
" 916	물고기및해산물통조림	"	" 301	화장비누	"
6112 101	면 사	"	" 302	세탁비누	"
" 104	혼방소모사	"	" 401	살충제	"
" 107	아크리릭사	"	" 501	페인트	"
" 201	면직물	m	" 901	황산	kg
" 302	모포매	"	" 903	가성소다	"
" 303	타올	"	" 908	그리세린	"
" 501	고무신	족	" 909	다이 나 마 이 트	"
" 502	운동화	"	" 910	초안폭약	"
" 503	고무장화및우화	"	" 914	휘발유	kl
" 903	화섬사양말	"	" 915	항공유	"
6113 205	천화기	대	" 916	경유	"

품목 번호	품목명	단위	품목 번호	품목명	단위
6114 917	중 유	ℓ	6119 402	백상지	kg
" 918	방카 C 유	"	" 405	아트지	"
" 919	등 유	"			
" 920	운활 유	"			
" 921	액화석유가스(LFG)	"			
6116 903	재봉틀	대			
6117 101	각재	㎏			
" 102	판재	"			
" 103	합판	"			
" 201	시멘트	㉾			
" 501	판유리	상자			
" 903	석면슬레이트	㎏			
" 904	프라스틱파이프	kg			
6118 202	강관	㉾			
" 303	아연도철판	"			
" 304	석도철판	"			
" 909	전기동	kg			
" 910	연괴	"			
" 911	아연괴	"			
6119 303	자동차용타이어	본			
" 401	신문용지	kg			

<부록 2> 주요품목별 주의사항

1. 밀가루의 지정단위는 포대가 아니고 kg이다.

1포대당 용량이 24kg, 22kg, 10kg, 3kg, 1kg 등 다양한바 반드시 kg으로 환산 보고할 것이며 민수용 뿐만 아니라 관수용도 포함 조사한다.

2. 해산물통조림, 축산물통조림(쇠고기등)은 구분하여 조사한다.

3. 통조림과 냉동해산물의 지정단위는 "kg"이므로 관 또는 상자(C/S)로 보고해서는 안된다.

4. 면직물에는 광목(소창포함), 내광목, 옥광목, 당목, 면범포, 포플린, 용면복지를 포함한다. (단 골벤은 제외한다)

5. 섬유제품중 지정단위가 m²로 되어있는 품목은 사업체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단위가 "Yds" "마" "Roll" 등 다양하므로 반드시 m²로 환산 보고한다.

예) : 직물폭이 36인치 길이 1Yds는 $0,9144m \times 0,9144 = 0,8361m^2$ 가 된다.

6. 타올, 일반세면용타올(가로 80cm×세로 33cm정도) 1매 정도로서 제반 타올제품도 포함한다.

7. 전력용 전선 및 케이블과 통신용 전선 및 케이블의 차이는 그 용도에 따라서 구별한다.

8. 전화기에는 체신 1호인 표준형 전화기뿐만 아니라 장식용 전화기등도 조사하되, 단 무전기나 인터폰은 제외한다.

9. 페인트는 수성페인트와 유성페인트를 포함 조사한다.

10. 휘발유에는 고급휘발유와 보통휘발유가 있는바 구분치 말고 통합 조사한다.

11. 방카 A, B 유는 중유에 포함조사해야 하며 경질중유도 중유에 포함 조사한다.

12. 윤활유에는 구리스를 제외할 것이며 윤활유 1 pl = 20 l로 환산된다.

13. 액화석유가스 (L.P.G)는 프로판가스와 부탄가스를 통합하여 조사할 것이며

프로판가스 1 kg = 1.97 l
부탄가스 1 kg = 1.73 l
로 환산한다.

14. 판유리는 지정규격인 2 mm로 환산 보고하여야 한다.

만약 3 mm 100 평 200 상자를 2 mm로 환산하면

$$200 \times \frac{3}{2} = 300 \text{ 상자로 된다.}$$

15. 석면스레이트는 일반적으로 사업체에서 단위를 "환산매수"로 사용하고 있으니 지정단위인 m²로 환산 보고하여야 한다.

$$\text{환산매수 1 매} = 1.1 \text{ m}^2$$

환산매수는 모든 종류의 스테트를 소골스레이트(대골, 용마루)로 환산한 매수인바 환산매수 1매당 1.1 m²를 곱해주면 된다.

16. 각재, 판재, 합판등은 지정단위가 m³인바 才, 매, B/F, S/F 등으로 조사치 말고 m³로 환산 보고할것

$$1 \text{ 才} \approx 0.00334 \text{ m}^3 \quad 1 \text{ m}^3 \approx 300 \text{ 才}$$

$$1 \text{ m}^3 \approx 300 \text{ 才} \quad 1 \text{ B/F} = 0.002359 \text{ m}^3$$

$$1 \text{ m}^3 = 423.77 \text{ B/F}$$

17. 아연도 철판은 박판에 아연을 도금한 것이며(일명 합석) 석도

철판을 강판의 양면에 주석을 도금한 것으로 특별극연강의 박판임

18. 아연도 철판의 규격별 중량은 다음과 같으니 환산에 참고할것

$$0.23 \text{ mm} = 3.34 \text{ kg} \qquad 0.45 \text{ mm} = 6.32 \text{ kg}$$

$$0.25 \text{ mm} = 3.5 \text{ kg} \qquad 0.55 \text{ mm} = 7.69 \text{ kg}$$

$$0.30 \text{ mm} = 4 \text{ kg} \qquad 0.70 \text{ mm} = 9.7 \text{ kg}$$

$$0.33 \text{ mm} = 44.73 \text{ kg} \qquad 0.91 \text{ mm} = 12.34 \text{ kg}$$

$$0.35 \text{ mm} = 5 \text{ kg}$$

19. 신문용지와 백상지는 일반적으로 사업체에서 갱지와 모조지로 호칭되고 있는바 지정 품목명인 신문용지로 백상지를 보고할것

21. 강 판

강판의 종류에는 그 제조법 용도 적경의 대소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강판의 지정단위가 %인바 각 대상 사업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m"를 "%"로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판의 호칭	m를 %로 환산하는법	판의 호칭	m를 %로 환산하는법
BS 백판 $\frac{1}{2}$	$cm \times 1.23 \div 1,000 = \%$	BS 백판 5	$cm \times 17.2 \div 1,000 = \%$
" $\frac{3}{4}$	$cm \times 1.59 \div 1,000 = \%$	" 6	$cm \times 19.2 \div 1,000 = \%$
" 1	$cm \times 2.46 \div 1,000 = \%$	BS 흑판 $\frac{1}{2}$	$cm \times 1.23 \div 1,000 = \%$
" $1\frac{1}{4}$	$cm \times 3.17 \div 1,000 = \%$	" $\frac{3}{4}$	$cm \times 1.59 \div 1,000 = \%$
" $1\frac{1}{2}$	$cm \times 3.65 \div 1,000 = \%$	" 1	$cm \times 2.46 \div 1,000 = \%$
" 2	$cm \times 5.17 \div 1,000 = \%$	" $1\frac{1}{4}$	$cm \times 3.17 \div 1,000 = \%$
" $2\frac{1}{2}$	$cm \times 6.63 \div 1,000 = \%$	" $1\frac{1}{2}$	$cm \times 3.65 \div 1,000 = \%$
" 3	$cm \times 8.64 \div 1,000 = \%$	" 2	$cm \times 5.17 \div 1,000 = \%$
" 4	$cm \times 12.4 \div 1,000 = \%$	" $2\frac{1}{2}$	$cm \times 6.63 \div 1,000 = \%$
KS 백판 $\frac{1}{2}$	$cm \times 1.25 \div 1,000 = \%$	" 3	$cm \times 8.64 \div 1,000 = \%$
" $\frac{3}{4}$	$cm \times 1.6 \div 1,000 = \%$	" 4	$cm \times 12.4 \div 1,000 = \%$
" 1	$cm \times 2.46 \div 1,000 = \%$	" 5	$cm \times 16.7 \div 1,000 = \%$
" $1\frac{1}{4}$	$cm \times 3.16 \div 1,000 = \%$	" 6	$cm \times 19.8 \div 1,000 = \%$
" $1\frac{1}{2}$	$cm \times 3.63 \div 1,000 = \%$	KS 흑판 $\frac{1}{2}$	$cm \times 1.25 \div 1,000 = \%$
" 2	$cm \times 5.12 \div 1,000 = \%$	" $\frac{3}{4}$	$cm \times 1.6 \div 1,000 = \%$
" $2\frac{1}{2}$	$cm \times 6.34 \div 1,000 = \%$	" 1	$cm \times 2.46 \div 1,000 = \%$
" 3	$cm \times 8.49 \div 1,000 = \%$	" $1\frac{1}{4}$	$cm \times 3.16 \div 1,000 = \%$

관의 호칭	m를 %로 환산하는법	관의 호칭	m를 %로 환산하는법
KB혹관 1 $\frac{1}{2}$	cm×3.63 ÷ 1,000 = %	KB혹관 6	cm×19.2 ÷ 1,000 = %
" 2	cm×5.12 ÷ 1,000 = %	구조관 1	cm×2.46 ÷ 1,000 = %
" 2 $\frac{1}{2}$	cm×6.34 ÷ 1,000 = %	" 1 $\frac{1}{4}$	cm×3.6 ÷ 1,000 = %
" 3	cm×8.49 ÷ 1,000 = %	" 1 $\frac{1}{2}$	cm×3.63 ÷ 1,000 = %
" 4	cm×12.3 ÷ 1,000 = %	" 2	cm×5.12 ÷ 1,000 = %
" 5	cm×17.2 ÷ 1,000 = %	" 3	cm×8.49 ÷ 1,000 = %

22. 합판은 규격이 다양한 바, 다음 요령으로 환산한다.

규격			1매당 m ²	좌기두께의 I _s /F당m ²
가로 (mm)	세로 (mm)	두께 (mm)		
4	8	3.2	0.0095232	0.0002976
3	6		0.0053568	
4	8	3.6	0.0010136	0.0003348
3	6		0.0060264	
4	8	4	0.011904	0.000372
3	6		0.006696	
4	8	6	0.017857	0.000558
3	6		0.010044	

(비) 지정통계
제 26 호 재 고 통계 조사

조 사 기 록 부

198

조사구번호

조사담당자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사 업 체 별 조 사 내 용

사업체번호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응답자	
			()	소속	성명

월 별	품목번호	상 품 명	규격	단위	월 초 재 고 량	월 중 구 입 량
--------	------	-------------	----	----	-----------------------	-----------------------

월						
월						
월						
월						
월						

사업체번호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응답자	
			()	소속	성명

월 별	품목번호	상 품 명	규격	단위	월 초 재 고 량	월 중 구 입 량
--------	------	-------------	----	----	-----------------------	-----------------------

월						
월						
월						
월						
월						

사업체번호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응답자	
		1	()	소속	성명

월 별	품목번호	상 품 명	규격	단위	월 초 재 고 량	월 중 구 입 량
--------	------	-------------	----	----	-----------------------	-----------------------

월						
월						
월						
월						
월						

사업체번호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응답자	
			()	소속	성명

월 별	품목번호	상 품 명	규격	단위	월 초 재 고 량	월 중 입 량
--------	------	-------------	----	----	-----------------------	------------------

월						
월						
월						
월						
월						

사업체번호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응답자	
			()	소속	성명

월 별	품목번호	상 품 명	규격	단위	월 초 재 고 량	월 중 구 입 량
--------	------	-------------	----	----	-----------------------	-----------------------

월						
월						
월						
월						
월						

사업체번호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응답자	
			()	소속	성명

월 별	품목번호	상 품 명	규격	단위	월 초 재 고 량	월 중 입 량
--------	------	-------------	----	----	-----------------------	------------------

월						
월						
월						
월						
월						

사업제번호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응답자	
			()	소속	성명

월 별	품목번호	상 품 명	규격	단위	월 초 재 고 량	월 중 구 입 량
--------	------	-------------	----	----	-----------------------	-----------------------

월						
월						
월						
월						
월						

사업체번호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응답자	
			()	소속	성명

월 별	품목번호	상 품 명	규격	단위	월 초 재 고 량	월 중 구 입 량
--------	------	-------------	----	----	-----------------------	-----------------------

월						
월						
월						
월						
월						

사업체번호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응답자	
			()	소속	성명

월 별	품목번호	상 품 명	규격	단위	월 초 재 고 량	월 중 구 입 량
--------	------	-------------	----	----	-----------------------	-----------------------

월						
월						
월						
월						
월						

사업체번호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응답자	
			()	소속	성명

월 별	품목번호	상 품 명	규격	단위	월 초 재 고 량	월 중 구 입 량
--------	------	-------------	----	----	-----------------------	-----------------------

월						
월						
월						
월						
월						

사업체번호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응답자	
			()	소속	성명

월 별	품목번호	상 품 명	규격	단위	월 초 재 고 량	월 중 구 입 량
--------	------	-------------	----	----	-----------------------	-----------------------

월						
월						
월						
월						
월						

사업체번호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응답자	
			()	소속	성명

월 별	품목번호	상 품 명	규격	단위	월 초 재 고 량	월 중 구 입 량
--------	------	-------------	----	----	-----------------------	-----------------------

월						
월						
월						
월						
월						

사업제번호	사업제명	대표자	전화번호	응답자	
			()	소속	성명

월 별	품목번호	상 품 명	규격	단위	월 초 재 고 량	월 중 구 입 량
--------	------	-------------	----	----	-----------------------	-----------------------

월						
월						
월						
월						
월						

사업체번호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응답자	
			()	소속	성명

월 별	품목번호	상 품 명	규격	단위	월 초	월 중
					재고량	구입량

월						
월						
월						
월						
월						

사업체번호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응답자	
			()	소속	성명

월 별	품목번호	상 품 명	규격	단위	월 초 재 고 량	월 중 입 량
--------	------	-------------	----	----	-----------------------	------------------

월						
월						
월						
월						
월						

사업체번호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응답자	
			()	소속	성명

월 별	품목번호	상 품 명	규격	단위	월 초 재 고 량	월 중 입 량
--------	------	-------------	----	----	-----------------------	------------------

월						
월						
월						
월						
월						

사업체번호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응답자	
			()	소속	성명

월 별	품목번호	상 품 명	규격	단위	월 초 재 고 량	월 중 구 입 량
--------	------	-------------	----	----	-----------------------	-----------------------

월						
월						
월						
월						
월						

사업체번호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응답자	
			()	소속	성명

월 별	품목번호	상 품 명	규격	단위	월 초 재 고 량	월 중 구 입 량
--------	------	-------------	----	----	-----------------------	-----------------------

월						

월						

월						

월						

월						

월						

사업체번호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응답자	
			()	소속	성명

월 별	품목번호	상 품 명	규격	단위	월 초 재 고 량	월 중 구 입 량
--------	------	-------------	----	----	-----------------------	-----------------------

월						
월						
월						
월						
월						

사업체번호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응답자	
			()	소속	성명

월 별	품목번호	상 품 명	규격	단위	월 초 재 고 량	월 중 구 입 량
--------	------	-------------	----	----	-----------------------	-----------------------

월						
월						
월						
월						
월						

사업체번호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응답자	
			()	소속	성명

월 별	품목번호	상 품 명	규격	단위	월 초 재 고 량	월 중 구 입 량
--------	------	-------------	----	----	-----------------------	-----------------------

월						
월						
월						
월						
월						

사업체번호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응답자	
			()	소속	성명

월 별	품목번호	상 품 명	규격	단위	월 초 재 고 량	월 중 구 입 량
--------	------	-------------	----	----	-----------------------	-----------------------

월						
월						
월						
월						
월						

사업체번호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응답자	
			()	소속	성명

월 별	품목번호	상 품 명	규격	단위	월 초 재 고 량	월 중 구 입 량
--------	------	-------------	----	----	-----------------------	-----------------------

월						
월						
월						
월						
월						

사업체번호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응답자	
			()	소속	성명

월 별	품목번호	상 품 명	규격	단위	월 초 재 고 량	월 중 입 량
--------	------	-------------	----	----	-----------------------	------------------

월						
월						
월						
월						
월						

사업체번호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응답자	
			()	소속	성명

월 별	품목번호	상 품 명	규격	단위	월 초 재 고 량	월 중 입 량
--------	------	-------------	----	----	-----------------------	------------------

월						
월						
월						
월						
월						

사업체번호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응답자	
			()	소속	성명

월 별	품목번호	상 품 명	규격	단위	월 초 재 고 량	월 중 입 량
--------	------	-------------	----	----	-----------------------	------------------

월						
월						
월						
월						
월						

사업체번호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응답자	
			()	소속	성명

월 별	품목번호	상 품 명	규격	단위	월 초 재 고 량	월 중 구 입 량
--------	------	-------------	----	----	-----------------------	-----------------------

월						
월						
월						
월						
월						

사업체번호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응답자	
			()	소속	성명

월 별	품목번호	상 품 명	규격	단위	월 초 재 고 량	월 중 입 량
--------	------	-------------	----	----	-----------------------	------------------

월						
월						
월						
월						
월						

사업체번호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응답자	
			()	소속	성명

월 별	품목번호	상 품 명	규격	단위	월 초 재 고 량	월 중 구 입 량
--------	------	-------------	----	----	-----------------------	-----------------------

월						
월						
월						
월						
월						

사업체번호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응답자	
			()	소속	성명

월 별	품목번호	상 품 명	규격	단위	월 초 재 고 량	월 중 구 입 량
--------	------	-------------	----	----	-----------------------	-----------------------

월						
월						
월						
월						
월						

사업체번호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응답자	
			()	소속	성명

월 별	품목번호	상 품 명	규격	단위	월 초 재 고 량	월 중 입 량
--------	------	-------------	----	----	-----------------------	------------------

월						
월						
월						
월						
월						

사업체번호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응답자	
			()	소속	성명

월 별	품목번호	상 품 명	규격	단위	월 초 재 고 량	월 중 구 입 량
--------	------	-------------	----	----	-----------------------	-----------------------

월						
월						
월						
월						
월						

사업체번호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응답자	
			()	소속	성명

월 별	품목번호	상 품 명	규격	단위	월 초 재 고 량	월 중 구 입 량
--------	------	-------------	----	----	-----------------------	-----------------------

월						
월						
월						
월						
월						

사업체번호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응답자	
		I	()	소속	성명

월 별	품목번호	상 품 명	규격	단위	월 초 재 고 량	월 중 구 입 량
--------	------	-------------	----	----	-----------------------	-----------------------

월						

월						

월						

월						

월						

월						

사업체번호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응답자	
			()	소속	성명

월 별	품목번호	상 품 명	규격	단위	월 초 재 고 량	월 중 구 입 량
--------	------	-------------	----	----	-----------------------	-----------------------

월						

월						

월						

월						

월						

월						

사업체번호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응답자	
			()	소속	성명

월 별	품목번호	상 품 명	규격	단위	월 초 재 고 량	월 중 구 입 량
--------	------	-------------	----	----	-----------------------	-----------------------

월						
월						
월						
월						
월						

사업제번호	사업제명	대표자	전화번호	응답자	
			()	소속	성명

월 별	품목번호	상 품 명	규격	단위	월 초 재 고 량	월 중 구 입 량
--------	------	-------------	----	----	-----------------------	-----------------------

월						
월						
월						
월						
월						

사업체번호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응답자	
			()	소속	성명

월 별	품목번호	상 품 명	규격	단위	월 초 재 고 량	월 중 구 입 량
--------	------	-------------	----	----	-----------------------	-----------------------

월						
월						
월						
월						
월						

사업체번호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응답자	
			()	소속	성명

월 별	품목번호	상 품 명	규격	단위	월 초 재 고 량	월 중 구 입 량
--------	------	-------------	----	----	-----------------------	-----------------------

월						
월						
월						
월						
월						

사업체번호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응답자	
			()	소속	성명

월 별	품목번호	상 품 명	규격	단위	월 초 재 고 량	월 중 구 입 량
--------	------	-------------	----	----	-----------------------	-----------------------

월						
월						
월						
월						
월						

사업체번호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응답자	
			()	소속	성명

월 별	품목번호	상 품 명	규격	단위	월 초 재 고 량	월 중 구 입 량
--------	------	-------------	----	----	-----------------------	-----------------------

월						

월						

월						

월						

월						

월						

사업체번호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응답자	
		1	()	소속	성명

월 별	품목번호	상 품 명	규격	단위	월 초	월 중
					재고량	구입량

월						
월						
월						
월						
월						

사업체번호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응답자	
		1	()	소속	성명

월 별	품목번호	상 품 명	규격	단위	월 초 재 고 량	월 중 구 입 량
--------	------	-------------	----	----	-----------------------	-----------------------

월						
월						
월						
월						
월						

사업체번호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응답자	
			()	소속	성명

월 별	품목번호	상 품 명	규격	단위	월 초 재 고 량	월 중 구 입 량
--------	------	-------------	----	----	-----------------------	-----------------------

월						

월						

월						

월						

월						

월						

사업체번호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응답자	
			()	소속	성명

월 별	품목번호	상 품 명	규격	단위	월 초 재 고 량	월 중 구 입 량
--------	------	-------------	----	----	-----------------------	-----------------------

월						
월						
월						
월						
월						

사업체번호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응답자	
			()	소속	성명

월 별	품목번호	상 품 명	규격	단위	월 초 재 고 량	월 중 구 입 량
--------	------	-------------	----	----	-----------------------	-----------------------

월						
월						
월						
월						
월						

사업체번호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응답자	
		1	()	소속	성명

월 별	품목번호	상 품 명	규격	단위	월 초 재 고 량	월 중 구 입 량
--------	------	-------------	----	----	-----------------------	-----------------------

월						
월						
월						
월						
월						

사업체번호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응답자	
			()	소속	성명

월 별	품목번호	상 품 명	규격	단위	월 초 재 고 량	월 중 구 입 량
--------	------	-------------	----	----	-----------------------	-----------------------

월						
월						
월						
월						
월						

사업체번호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응답자	
			()	소속	성명

월 별	품목번호	상 품 명	규격	단위	월 초 재 고 량	월 중 구 입 량
--------	------	-------------	----	----	-----------------------	-----------------------

월						

월						

월						

월						

월						

월						

사업체번호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응답자	
			()	소속	성명

월 별	품목번호	상 품 명	규격	단위	월 초 재고량	월 중 구입량

월						

월						

월						

월						

월						

월						

사업체번호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응답자	
		{	()	소속	성명

월 별	품목번호	상 품 명	규격	단위	월 초 재 고 량	월 중 구 입 량
--------	------	-------------	----	----	-----------------------	-----------------------

월						
월						
월						
월						
월						

사업체번호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응답자	
			()	소속	성명

월 별	품목번호	상 품 명	규격	단위	월 초 재 고 량	월 중 구 입 량
--------	------	-------------	----	----	-----------------------	-----------------------

월						
월						
월						
월						
월						

사업체번호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응답자	
			()	소속	성명

월 별	품목번호	상 품 명	규격	단위	월 초 재 고 량	월 중 구 입 량
--------	------	-------------	----	----	-----------------------	-----------------------

월						
월						
월						
월						
월						

사업체번호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응답자	
			()	소속	성명

월 별	품목번호	상 품 명	규격	단위	월	
					초 재 고 량	중 구 입 량

월						
월						
월						
월						
월						

사업체번호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응답자	
			()	소속	성명

월 별	품목번호	상 품 명	규격	단위	월 초	월 중
					재고량	구입량

월						
월						
월						
월						
월						

사업체번호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응답자	
			()	소속	성명

월 별	품목번호	상 품 명	규격	단위	월 초 재 고 량	월 중 구 입 량
--------	------	-------------	----	----	-----------------------	-----------------------

월						

월						

월						

월						

월						

월						

사업체번호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응답자	
			()	소속	성명

월 별	품목번호	상 품 명	규격	단위	월 초 재 고 량	월 중 구 입 량
--------	------	-------------	----	----	-----------------------	-----------------------

월						

월						

월						

월						

월						

월						

사업체번호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응답자	
			()	소속	성명

월 별	품목번호	상 품 명	규격	단위	월 초 재 고 량	월 중 구 입 량
--------	------	-------------	----	----	-----------------------	-----------------------

월						

월						

월						

월						

월						

월						

사업체번호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응답자	
			()	소속	성명

월 별	품목번호	상 품 명	규격	단위	월 초 재 고 량	월 중 구 입 량
--------	------	-------------	----	----	-----------------------	-----------------------

월						
월						
월						
월						
월						

사업체번호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응답자	
			()	소속	성명

월 별	품목번호	상 품 명	규격	단위	월 초 재 고 량	월 중 구 입 량
--------	------	-------------	----	----	-----------------------	-----------------------

월						
월						
월						
월						
월						

사업체번호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응답자	
			()	소속	성명

월 별	품목번호	상 품 명	규격	단위	월 초	월 중
					재고량	구입량

월						

월						

월						

월						

월						

월						

사업체번호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응답자	
			()	소속	성명

월 별	품목번호	상 품 명	규격	단위	월 초 재 고 량	월 중 구 입 량
--------	------	-------------	----	----	-----------------------	-----------------------

월						

월						

월						

월						

월						

월						

사업체번호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응답자	
			()	소속	성명

월 별	품목번호	상 품 명	규격	단위	월 초 재 고 량	월 중 구 입 량
--------	------	-------------	----	----	-----------------------	-----------------------

월						

월						

월						

월						

월						

월						

사업체번호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응답자	
			()	소속	성명

월 별	품목번호	상 품 명	규격	단 위	월 초 재 고 량	월 중 구 입 량
--------	------	-------	----	-----	--------------	--------------

월						
월						
월						
월						
월						

사업체번호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응답자	
			()	소속	성명

월 별	품목번호	상 품 명	규격	단위	월 초 재 고 량	월 중 구 입 량
--------	------	-------------	----	----	-----------------------	-----------------------

월						

월						

월						

월						

월						

월						

사업체번호	사 업 체 명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응 답 자	
			()	소 속	성 명

월 별	품목번호	상 품 명	규격	단위	월 초 재 고 량	월 중 구 입 량
--------	------	-------------	----	----	-----------------------	-----------------------

월						
월						
월						
월						
월						

사업체번호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응답자	
			()	소속	성명

월 별	품목번호	상 품 명	규격	단위	월 초 재 고 량	월 중 구 입 량
--------	------	-------------	----	----	-----------------------	-----------------------

월						
월						
월						
월						
월						

사업체번호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응답자	
			()	소속	성명

월 별	품목번호	상 품 명	규격	단위	월 초		월 중	
					재고량	구입량	구입량	중량

월								
월								
월								
월								
월								

지정 통계 제 26호

재고 통계 조사표

198 년 월분

시 도	
조사표매수	

경제기획원 조사 통계 국

재고통계조사사업체명부

1981년도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서

말

사무소명 서울

조사구 번호	사업체 번호	산업 분류	사업체명	대표 자명	소재지	전화번호	조직형태		종업 원수	지정품목	조사담당자	접수일자												비고			
							법인	개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001	01	6118	삼풍상공사	박영전	종로구관철동 34	27-3489		○	10	강관																	
	02	6114	대성산업(주)	김수근	" " 43-4	75-5671	○		62	휘발유, 등유, 중유																	
	03	6114	남부의료기구부설약품	주문욱	" " 12-23	73-5263		○	7	방카 C 유 양약																	
	04	6119	중보기업(주)	고학민	" 관수동 3-2	27-3947		○	4	아트지																	
002	01	6117	이화유리상사	부창도	종로구교남동 56	72-5285		○	11	판유리																	
	02	6111	중앙판매상사(주)	최기영	" 내자동 215-8	73-3348	○		13	화장비누, 플라스틱 제품, 치약																	
003	01	6114	삼영화학 서울영업소	한해수	종로구인사동 207	73-0194	○		40	의약품																	

사무소명 서울

조사구 번호	사업체 번호	산업 분류	사업체명	대표 자명	소재지	전화번호	조직형태		종업 원수	지정품목	조사담당자	접수일자												비고			
							법인	개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006	01	6112	석산상회	김영애	중구남창동 32	776-1836		○	6	양말																	
	02	6112	태화고무상회	박충일	남대문시장 C동 19호	28-0261		○	11	고무신																	
	03	6112	전방타올	정상모	중구남창동 49	28-0662		○	4	타올																	
007	01	6116	명성물산	이상대	중구남대문로 1가 118	22-0566		○	39	재봉틀																	
	02	6114	대한석유공사	유재홍	" " 2가 10-1	777-0051		○	38	휘발유, 경유, 중유																	
	03	6116	서울저유소 부라더상사	홍은영	" " 1가 118	22-0305		○	49	항공유 재봉틀																	
008	01	6113	(주)금성남대문센타	송호윤	중구남대문로 3가 93	22-2300		○	22	전화기																	
	02	6112	남성고무상사	송봉조	" " 5가 20-48	23-4715		○	9	고무신, 운동화, 고무장화및우화																	
	03	6114	세대산업(주)	권경운	" " 3가 11-3	22-1565		○	11	시멘트																	
	04	6114	구세약품	김명식	" " 4가 3-1	22-5952		○	13	의약품																	
	05	6118	대성철강	최광성	" " 4가 313	266-1881		○	13	아연도철판																	

사무소명 서울

조사구 번호	사업체 번호	산업 분류	사업체명	대표 자명	소재지	전화번호	조직형태		종업 원수	지정품목	조사담당자	접수일자												비고				
							법인	개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009	01	6117	태창공업	김유훈	중구장교동 42	777-3589	○		2	시멘트																		
	02	6113	상호상사	강석중	" "	23-7000		○	6	전기동, 아연과																		
	03	6113	금성코너(주)	김응수	" 무교동1가33-1	777-6116	○		22	전화기																		
	04	6114	삼일사(주)	김원균	" " 32-2	777-6314 ₆	○		95	휘발유, 등유, 경유 B.C유																		
	05	6117	을이상공	신목희	" 을지로2가134-3	266-0086		○	8	판유리																		
010	01	6117	국민학원(재) 사업부	서성택	중구저동 2 가 26	265-3701	○		13	시멘트																		
	02	6114	대한와사	이병화	" 필동 1 가 43-1	266-8101	○		57	L·P·G																		
	03	6111	샘표간장 중앙판매	강형순	" 충무로 4 가 79	266-2621 ₂		○	17	간장, 된장																		
	04	6114	안국상사	안상인	" " 87	266-1274	○		27	윤활유																		
	05	6114	대신석유	신재휴	" " 126-1	265-3115	○		152	유류																		
	06	6114	한일가스	홍순철	" 충무로5가120-10	27-0148 269-0198	○		48	가스																		

사무소명 서울

조사구 번호	사업체 번호	산업 분류	사업체명	대표 자명	소재지	전화번호	조직형태		종업 원수	지정품목	조사담당자	접수일자												비고				
							법인	개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011	01	6118	창진철강(주)	박광일	중구주교동 144-2	266-4451		○	3	강관																		
	02	6116	부국미싱 판매	남정웅	" " 184-2 (동신태양)	265-0312	○		12	미싱																		
	03	6114	조광페인트	윤상준	" 을지로4가313	266-1881		○	6	페인트																		
	04	6118	남북철강	심기석	" " 303-1	266-5658		○	10	아연도철판																		
	05	6118	광덕파이프상사	김영준	" 을지로3가5-16	267-2704		○	5	강관																		
	06	6118	동신철강상사	김효식	" " 33	267-6731		○	3	"																		
012	01	6117	한일홍업(주)	박순태	중구충무로 2가64-5	778-2936		○	5	시멘트																		
013	01	6114	제삼석유(주)	토마스	중구서소문동 12-1	777-1671		○	41	휘발유, 등유, 경유																		
	02	6114	동산유지서울직매소	L.런디 김정관	" " 55-4	778-1152		○	48	B·C유 화장비누, 세탁비누																		
	03	6112	한국제냥공업협동조합	권혁중	" 남대문로5가19-1	793-0234		○		면사																		

사무소명 서울

조사구 번호	사업체 번호	산업 분류	사업체명	대표 자명	소재지	전화번호	조직형태		종업 원수	지정품목	조사담당자	접수일자												비고		
							법인	개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013	04	6112	태성고무상사	강성울	중구남대문로4가20·46	22-4553		○	7	고무신, 운동화 고무장화및우화 강관(파이프)																
	05	6118	국영산업(주)	김동형	" 을지로5가190	27-9921	○		13																	
014	01	6113	대동기공	김영국	중구입정동 11	269-2191		○	8	합성수지, 전연전선 Cable																
	02	6113	진해박데리	이윤상	" " 179	266-9212 ₃	○		11	축전지																
	03	6118	동신철강상사	유자형	" " 263-4	267-2838		○	6	파이프, 강관																
	04	6119	삼양타이어서울센터	최윤학	" " 173	266-9632	○		7	각종타이어, 튜브																
	05	6113	대월전선(주) 서울직매소	박희준	" " 263-1	266-8955 8959	○		6	절연전선, 케이블 전력용케이블																
	06	6118	삼신철관(주)	장길용	" 예관동 70-1	267-7435	○		16	강관																
	07	6113	로켓트상사(주)	유동재	" 쌍림동 151-124	266-5148	○		12	축전지																
	08	6118	세기파이프	최원용	" 산림동 134-2	267-0591	○		5	강관																
	09	6112	서울직물협동조합	강영무	" " 84	265-7240	○		4	면사																

사무소명 서울

조사구 번호	사업체 번호	산업 분류	사업체명	대표 자명	소재지	전화번호	조직형태		종업 원수	지정품목	조사담당자	접수일자												비고				
							법인	개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015	01	6118	대진강관(주)	차용태	용산구동자동 43-71	792-4194 ~5	○		67	강관																		
	02	6118	협성철관(주)	양재석	" " 43-43	792-5439	○		12	"																		
	03	6114	세영페인트(도료)	김두병	" " 35-109	792-3422		○	3	페인트																		
	04	6113	진한전업(주)	차재식	" " 14-24	792-5029	○		7	합성수지절연전선																		
016	01	6114	동해유업(주)	박만엽	용산구한남동 737-28	794-4144	○		67	휘발유, 등유, 경유																		
	02	6111	샘표간장용산직매장	김무일	" 보광동 214-9	793-2440		○	8	간장, 된장																		
	03	6114	홍국상사	이종용	" 이촌동 302-79	793-5571 ~5	○		16	휘발유, 등유, 경유																		
017	01	6117	용금유리상사	유봉옥	용산구한강로 1가 292-1	793-5501		○	11	판유리																		
	02	6119	삼양타이어서울판매(주)	곽우경	" " 2가 312-4	794-1171	○		23	자동차타이어, 축전지																		
	03	6112	삼화고무남대문직매소	김영주	" " 3가 65-399	793-0234	○		4	고무신, 고무장화및 우화, 운동화																		
	04	6117	용산한국합판상사	신영환	" " 3가 40-17	792-0910		○	82	합판																		
	05	6114	중앙석유 Co	한동수	" 한남동 737-28	794-4144	○		190	휘발유, 등유, 경유 D.C유																		

사무소명 서울

조사구 번호	사업체 번호	산업 분류	사업체명	대표 자명	소재지	전화번호	조직형태		종업 원수	지정품목	조사담당자	접수일자												비고		
							법인	개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018	01	6114	삼영산업(주)	박훈영	용산구원효로 2가 1-30	792-3603 5994	○		10	황산																
	02	6114	화덕약품	김규성	"	713-9505	○		24	약품																
	03	6113	금성용산센타	이화섭	" 남영동 18	792-1027 793-5109	○		14	전화기																
	04	6114	조광페인트(주)	양복운	" 서부이촌동 212-35	713-2855 4755	○		67	페인트																
019	01	6111	우신상회	주성해	성동구금호동 4가 1345	53-5726		○	10	설탕, 간장																
020	01	6112	유진모사	허남	중구을지로 6가 북 18	265-2369		○	8	면사																
	02	6112	대광상사	오도영	" " 18-188	269-1364		○	8	아크리락사																
	03	6112	진일상사	강석천	" " 18-37	266-0773		○	4	면사																

사무소명 서울

조사구 번호	사업체 번호	산업 분류	사업체명	대표 자명	소재지	전화번호	조직형태		종업 원수	지정품목	조사담당자	접수일자												비고			
							법인	개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020	04	6117	대풍합판	김재철	중구을지로 5가270-0	267-9506 ~9		○	13	합판																	
	05	6114	서울석유(주)	김태훈	" 장충동1가31-1	29-9141 ~5	○		151	유류																	
	06	6111	농협생산물자사무소	남상천	" 을지로6가18-14	261-6031		○	57	설탕, 세탁비누, 치약, 화장비누																	
021	01	6119	신한상사	이진선	중구수표동 56-15	267-0981		○	5	백상지, 아트지																	
	02	6119	대아문화(주)	주찬수	" " 85-5	260-4871	○		13	백상지, 아트지																	
	03	6113	(주)금성동선판매소	이풍목	" " 56-3	266-1666	○		10	절연전선, 통신및전력용케이블																	
	04	6117	대명상사	전용범	" " 35-6	267-0741 ~2		○	8	시멘트																	
	05	6118	남일금속(주)	남진원	" " 91	267-4221	○		8	강관																	
	06	6111	대한종합식품 서울직매점	김인득	" 을지로3가 296-2	266-1141 ~8	○		30	수산물통조림																	
	07	6118	천덕상사	심홍구	" " 240	266-8877 0209	○		17	아연도철판																	
	08	6118	동신금속	임중순	" 수표동 11-19	266-6491	○		9	강관																	

사무소명 서울

조사구 번호	사업체 번호	산업 분류	사업체명	대표 자명	소재지	전화번호	조직형태		종업 원수	지정품목	조사담당자	접수일자												비고			
							법인	개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025	01	6114	고려가스	곽재근	성동구마장동 766-6	253-5111 ~5	○		54	L.P.G																	
026	01	6114	삼표석유강원산업 망우주유소	신호일	동대문구상봉동 100	433-0573	○		10	등유, 경유, 휘발유 윤활유 의약품																	
	02	6114	동아제약서울지점	강신호	" 면복동 178-4	93-3311	○		85																		
027	01	6117	동국유리판매(주)	안영언	성북구하월곡동 206	95-1235	○		12	판유리																	
	02	6114	동아석유(주)	이종철	" 종암동 3-545	94-4117	○		77	휘발유, 경유; 등유																	
	03	6112	태화고무청량리직매소	손창환	동대문구계기 2동 1030	967-8170	○		11	운동화, 고무신																	
	04	6112	삼화고무직매소	김영주	" " 1051	967-8501	○		8	운동화, 고무신 고무장화 및 우화																	
	05	6112	왕자고무	김석호	" 제기동 486	966-8662	○		25	고무신, 운동화																	
	06	6112	진양화학동부(직)	양규모	" "	966-3995	○		20	신발류																	

사무소명 서울

조사구 번호	사업체 번호	산업 분류	사업체명	대표 자명	소재지	전화번호	조직형태		종업 원수	지정품목	조사담당자	접수일자												비고				
							법인	개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031	04	6117	신기상사	이정남	중구을지로 3가 5-26	267-0523		○	2	시멘트																		
	05	6117	국영유리	최인영	" " " 3가139	26-9071	○		55	판유리																		
032	01	6114	강원산업(삼표석유)	신호일	은평구수색동산 42-1	388-4397	○		86	휘발유, 등유, 경유 B.C유, 윤활유, LPG																		
	02	6111	삼아상사	권인원	" 불광 2동 486-2	388-0397		○	7	설탕, 밀가루																		
033	01	6112	국제고무상사	김영자	마포구아현동 331-8	363-1270		○	6	고무신																		
	02	6114	신한진홍상사	강성신	" " 603-24	362-7608		○	13	국산양주대리점																		
	03	6112	(주)삼화아현직매점	김영주	" " 85-666	362-6867		○	10	고무신																		
	04	6112	말포구아현직매소	정계용	서대문구북아현 1동 154-4	362-0990		○	5	고무신, 운동화																		
	05	6114	세일석유(주)	주광조	" 충정로 3가 368-2	362-6261 ~5		○	116	윤활유, B.C유																		
	06	6117	제일유리판매(주)	이광섭	" 미근동 9-2	75-4518		○	12	판유리																		

사무소명 서울

조사구 번호	사업체 번호	산업 분류	사업체명	대표 자명	소재지	전화번호	조직형태		종업 원수	지정품목	조사담당자	접수일자												비고		
							법인	개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034	01	6117	경향목재공업(주)	김근호	마포구도화동 17-7	33-6388 6377	○		5	목재																
	02	6117	성우실업(주)	박기철	" " 5-6	27-0351	○		5	시멘트																
	03	6119	삼성지업(주)	이중우	중구을지로 3가 63-5	265-5156	○		8	신문용지, 백상지, 아트지																
035	01	6114	효성석유	유제언	마포구서교동 470-18	34-9856	○		24	석유류																
	02	6114	을지상사	송기훈	중구을지로 3가 65	267-2851		○	7	페인트																
	03	6114	제일스레트(주)서울지점	김희철	" " 315-3	26-1201 -3	○		15	페인트																
	04	6118	동명철강(주)	이상은	" " 65-2	27-3215	○		12	석도철관, 강관																
	05	6119	한국타이어판매	김인태	" " 161	267-0721	○		16	자동차용타이어																
	06	6118	신생상회(주)	제연승	" " 5-7	261-4359		○	18	아연도철관																
036	01	6117	영동임업사	최기영	서대문구연희동 326-32	33-4989		○	16	합판																

사무소명 서울

조사구 번호	사업체 번호	산업 분류	사업체명	대표 자명	소재지	전화번호	조직형태		종업 원수	지정품목	조사담당자	접수일자												비고		
							법인	개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037	01	6114	한주항공정비(주)	전명섭	강서구과해동 317-8	66-8913	○		154	항공유																
	02	6114	성유상사	최준연	" 등촌동 484-27	633-1452 1545	○		18	윤활유																
038	01	6112	신성고무	김형만	서대문구홍제 3동 266-61	75-9838	○		24	고무신, 운동화																
	02	6112	진양고무(주)진양홍 제직매소	최은영	" " 229-3	74-7145	○		20	고무신																
	03	6117	범아합판(주)	성하경	" 창천동 503-8	32-7270	○		4	합판																
039	01	6114	세운도료	조하영	영등포구영등포동 177	634-2464				페인트																
	02	6112	신우상사	황영엽	" " "	634-5890	○			타올																
	03	6114	삼화페인트 영등포대리점	김상일	영등포시장 16-29 " 영등포동 4가 68-2	62-3743	○		6	페인트																

사무소명 서울

조사구 번호	사업체 번호	산업 분류	사업체명	대표 자명	소재지	전화번호	조직형태		종업 원수	지정품목	조사담당자	접수일자												비고				
							법인	개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040	01	6114	청원이화학	김 청	종로구종로2가5	73-4250	○		8	화공약품																		
	02	6113	금성가전센타	김종목	" " 22	74-2994	○		13	전화기																		
041	01	6117	용금유리	유봉옥	관악구상도동 181	68-0412		○	7	관유리																		
	02	6114	삼일약품상사	최우준	" " 170-27	827-2904		○	15	양약																		
042	01	6117	대성서울상사	공정식	관악구신림 4동 24구회 1-4호	876-6776		○	10	합판																		
	02	6118	부산강관	김영철	중구봉래 1가 102	22-2731	○		12	강관																		
	03	6118	달성파이프상사	이용태	" " 1-902	28-9843		○	5	강관																		
	04	6118	대양철재	곽창선	" " 13	22-7660		○	17	강관																		
	05	6118	극동비철금속	곽규학	" " 97-2	28-7270		○	7	연피, 아연피, 전기 동																		
	06	6118	신흥상회	이상신	" " 27	22-6088		○	4	연피, 전기동, 아연리																		

사무소명 서울

조사구 번호	사업체 번호	산업 분류	사업체명	대표 자명	소재지	전화번호	조직형태		종업 원수	지정품목	조사담당자	접수일자												비고			
							법인	개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043	01	6112	경기직물공업협동조합	한봉수	종로구연지동 204	763-9904	○		5	면사																	
044	01	6114	정원약품	한응국	종로구종로 3가 52	21-3439	○		48	의약품																	
045	01	6112	대성고무	양금석	종로구종로 5가 90	269-7766	○		11	고무신, 운동화, 장화 고무신, 운동화, 고무장화 및 우화																	
	02	6112	진양화학중부직매소	양규모	" " 90	267-0080	○		23																		
046	01	6113	보원사	박용길	종로구종로 5가 193-15	267-3541		○	9	건전지																	
	02	6114	광주의약품(주)	최정채	" " 90	763-7461	○		26	의약품																	

사무소명 서울

조사구 번호	사업체 번호	산업 분류	사업체명	대표 자명	소재지	전화번호	조직형태		종업 원수	지정품목	조사담당자	접수일자												비고			
							법인	개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047	01	6114	일광약품	송석호	영등포구신길 2동 221-1	827-2112		○	10	양약																	
	02	6117	한국목재	이철권	" 신길 6동 362-7	835-2433		○	10	합판																	
048	01	6113	태흥정밀영업소	윤만복	중로구장사동 1가 192	26-9167 -8	○		16	전화기																	
	02	6113	태창사	정덕원	" 장사동 106	27-6118		○	3	건전지																	
	03	6113	금성전선(주)	민우동	" " 182-2	267-7725		○	6	전화기																	
	04	6113	금성소리사	황기립	" " "	266-2987		○	16	TV,냉장고																	
049	01	6113	호남전기 대리점 제일상사	이동석	중로구 예지동 68	269-1973		○		건전지																	

사무소명 서울

조사구 번호	사업체 번호	산업 분류	사업체명	대표 자명	소재지	전화번호	조직형태		종업 원수	지정품목	조사담당자	접수일자												비고			
							법인	개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053	01	6118	동성파이프 (주)	김철식	영등포구영등포동2가324	634-0419	○		14	강관																	
	02	6119	한국타이어영등포 대리점	이상춘	" "	17 62-5898		○	7	자동차용타이어																	
	03	6113	문화전기사	박형복	" "	324 634-2452		○	4	전선지																	
	04	6114	백제약국(영등포)	김기운	" "	32 62-8601-5		○	66	의약품																	
	05	6117	경부합판상사	이충환	" "	163-2 64-1433-7		○	11	합판																	
	06	6118	세일철강(주)	권대혁	" "	13 62-3144		○	7	아연도철판																	
	07	6114	대한로드라인페인트(주)	한정국	" 영등포동 3가	62-0686		○	10	페인트																	
	08	6118	영풍철강(주)	곽기석	" "	423-50 62-5260		○	15	강관																	
	09	6118	승한철강상사	이종철	" 문래 1가7	62-5204		○	6	아연도철판, 강관																	
054	01	6117	금강스레트(주) 서울영업소	정성구	강남구서초동 85-3	58-2101-5		○	41	석면스레트																	
	02	6117	신원유리상사	이현수	" "	59-5 57-4548		○	7	판유리																	
	03	6119	미양상사	박광석	" "	703 591-3111		○	25	신문용지, 백상지, 아트지																	

사무소명 서울

조사구 번호	사업체 번호	산업 분류	사업체명	대표 자명	소재지	전화번호	조직형태		종업 원수	지정품목	조사담당자	접수일자												비고		
							법인	개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054	04	6114	(주)럭키서울하치장	한천우	강남구서초동 303-1	57-9491	○		19	화장비누, 치약																
	05	6114	세방석유	이영주	" 신사동 485-1	52-2101	○		500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E-C유																
	06	6117	유성프라스틱	김종국	" 학동 92-4	52-7521-4		○	16	프라스틱제품																
055	01	6112	삼화고무천호직매소	김영주	강동구천호동 409-13	478-2332		○	7	고무신, 고무장화및 우화, 운동화																

부 산 통 계 사 무 소

사무소명	부 산
------	-----

조사구 번호	사업체 번호	산업 분류	사업체명	대표 자명	소재지	전화번호	조직형태		종업 원수	지정품목	조사담당자	접 수 일 자												비 고			
							법인	개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01	01	6114	유공영도주유소	장국상	영도구청학동 330	49-1644	○		48	등유, B C 유, 휘발유, 경유, 중유																	
102																											
103	01	6114	영남석유	김운학	진구양정동 35-1	82-0052	○		41	방카 C 유, 휘발유, 경유, 등유																	
	02	6114	세방석유(주) 부산영업소	이영주	동래구연산동 701-1	83-8441	○		36	휘발유, 경유																	
	03	6119	삼양타이어판매(주)	김영규	진구연산동 695-10	83-7011	○		22	자동차타이어																	
	04	6119	한국타이어영남판 매(주)	윤두상	동래구연산동 603	82-9986	○		18	자동차타이어																	
104	01	6114	대한인크페인트(주) 부산출장소	한정대	동래구부곡동 244-3	56-9111	○		35	페인트																	
	02	6117	동양종합상사 부산사무소	이태성	동래구남산동 32-1	56-2463	○		2	시멘트, 스텝트																	

사무소명 부산

조사구 번호	사업체 번호	산업 분류	사업체명	대표 자명	소재지	전화번호	조직형태		종업 원수	지정품목	조사담당자	접수일자												비고				
							법인	개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04	03	6117	제일합판상사	송승훈	동래구온천2동 1427-5	52-3460		○	8	합판																		
	04	6112	(주)태화고무 동래직매소	박병준	동래구수안동333	84-1471		○	8	고무신, 장화, 운동화																		
	05	6114	삼흥공업(주)	이종우	동래구수안동80	52-1019	○		35	L.P.G																		
	06	6112	삼화고무동래직매 소	김영주	동래구칠산동211-15	52-3205	○		7	고무신, 장화, 운동화																		
	07	6118	이화철판판매상사	김선도	동래구명륜동6-3	52-0069		○	10	강판																		
105	01	6117	쌍용세멘트(주)	이덕재	중구중앙동2가49-7	23-5568		○	4	세멘트																		
	02	6118	삼일철강(주)	백용기	" 중앙동1가20	44-2425	○		14	아연도철판																		
	03	6117	호선세멘트사	이홍창	" " 2가24	22-5527	○		8	세멘트																		
	04	6117	(주)성신세멘트	이창제	" " 2가49	43-4411	○		10	세멘트																		
	05	6119	중앙지업사	김용선	" " 2가53	23-3897		○	8	백상지																		
	06	6118	대원상사	이수옥	" " 2가17	44-1521		○	7	연회, 아연괴																		
	07	6114	(주)한진화학 부산직매소	안도현	" " 2가50	22-9922	○		6	페인트																		
	08	6119	두선상사	남유진	" " 2가22	22-8932		○	5	백상지, 아트지																		
	09	6117	(주)홍아상사	윤성욱	" " 4가26	44-0196		○	6	세멘트																		
	10	6111	(주)삼양사 부산사무소	김상하	" " 4가85-8	44-3841		○	35	설탕																		
	11	6117	금강스레트(주) 부산영업소	정상영	" " 4가77-3	44-2527		○	17	석면스레트																		

사무소명	부 산
------	-----

조사구 번호	사업체 번호	산업 분류	사 업 체 명	대표 자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조직형태		종업 원수	지 정 품 목	조사담당자	접 수 일 자												비 고					
							법인	개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05	12	6114	(주) 영진약품 부산영업소	김생기	중구중앙동 4가 80-9	44-1878	○		44	양약																			
	13	6117	(주) 쌍용 판매상사	한수형	" " 2가 24	22-6804		○	8	양약																			
106	01	6114	한독약품 부산사무소	임신권	중구부평동 4가 51	22-4527	○		37	의약품																			
	02	6112	천야침구사	정우천	" " 1가 27	22-2310	○		11	모포																			
	03	6114	국제화공약품상사	노인모	" " 1가 36	23-5561	○		13	황산, 가성소다																			
	04	6119	문창지업사	문정기	" " 1가 12	22-2645		○	10	아트지, 백상지																			
	05	6113	금성천동판매(주)	김경환	" " 1가 34	22-7833	○		18	전력용케이블, 절연전선, 통신용전선케이블																			
	06	6112	삼화고무 남부직매소	강순구	" " 3가 22	23-7003		○	9	우화, 운동화, 고무신																			
	07	6112	태화고무직매소	용영식	" " 2가 86	22-5620		○	9	우화, 운동화, 고무 장화, 고무신																			
107	01	6118	동방파이프상사	김정화	진구전포동 70-5	89-9098		○	8	강관																			
	02	6119	원풍타이어 부산대리점	이익수	" " 667	89-3206		○	10	자동차용타이어																			
	03	6114	한일약품(주) 부산영업소	우재규	" " 36-8	68-8327	○		26	의약품																			

사 무 소 명 부 산

조사구 번호	사업체 번호	산업 분류	사업체명	대표 자명	소재지	전화번호	조직형태		종업 원수	지정품목	조사담당자	집 수 일 자												비 고			
							법인	개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07	04	6117	동명목재직대소	장덕용	동래구거제동1469-5	84-6501		○	4	합판																	
	05	6114	(주)홍국상사 부산지점	이종용	" " 1-1	84-4115	○		42	중유, BC유, 경유, 휘발유, 윤활유																	
	06	6114	천광유리부산영업소	박시준	" " 469	84-5005		○	8	그리세린, 화장비누 세탁비누																	
	07	6114	도일와사공업(주)	김용배	" " 159-2	84-7635		○	30	L.P.G																	
108	01	6112	영일침구	박돌선	중구창선동 (국제시장4공구)	22-2627		○	4	모포																	
	02	6113	합명회사 종일통신산업사	호문상	중구창선동2가39	22-3283	○		4	전화기, 케이블선																	
	03	6113	대창상회	김중곤	" " 27	22-0320		○	5	건전지																	
	04	6114	영동석유부산영업소	박창동	" 광복동1가 35-1	22-6359		○	59	등유, 경유, 휘발유																	
	05	6117	진흥상사	박구야	" 중무동3가13	22-3131		○	9	합판																	
	06	6117	동양상사	이환석	" " 1가15	23-1001		○	7	합판																	
	07	6114	남포주유소	강재만	" " 1가18	23-3053		○	4	경유, 등유, 휘발유																	
	08	6117	대영건재	강기식	" " 2가43	22-9945		○	5	합판																	
	09	6117	풍신건재	윤필중	" " 2가64	22-3371		○	6	스페트, 아연철판, 프라스틱, P.V.합판																	

사무소명 부산

조사구 번호	사업체 번호	산업 분류	사업체명	대표 자명	소재지	전화번호	조직형태		종업 원수	지정품목	조사담당자	접수기일												비고				
							법인	개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09	01	6116	브라더미싱 부산지점	홍순명	중구대청동 3가 25	22-4775	○		8	재봉틀																		
	02	6114	성공상회	이명석	동구범일 5동 252-9	68-7861		○	5	치약, 화장비누 세탁비누																		
	03	6112	(주) 삼화고무 부산직매소	김영주	진구범천동 850	68-3636	○			고무신, 고무장화 운동화																		
	04	6118	국제강관상사	정철	" " 969-20	66-5032		○		강관																		
110	01	6117	부산건업상사	김진구	중구대창동 3가 39	43-2656		○	11	합판, 세멘트																		
	02	6117	성신목재상사	박종철	" " 1가 27	44-6849		○	6	합판																		
	03	6119	삼양타이어 부산대리점	배종환	" " 4가 81	44-7410		○	11	자동차용타이어																		
	04	6117	한국전재상회	한영철	" " 2가 7	43-0643		○	13	합판																		
	05	6114	(주) 한국화학 부산영업소	박이룡	" " 1가 47	43-6984	○		9	다이나마이트 초안, 폭약																		
	06	6117	(주) 한국상사	박성화	" 대교동 1-7	44-4081	○		15	프라스틱, 파이프관																		
	07	6117	(주) 한국스레트 부산영업소	김희철	" " 2가 72	44-4362	○		31	석면스레트, 페인트																		
	08	6117	세명합판상사	서인석	" " 1가 3	44-2389		○	9	합판																		
	09	6117	(주) 동흥실업	손태길	" " 1가 1	44-3331~5	○		8	세멘트																		

사무소명 부 산

조사구 번호	사업체 번호	산업 분류	사업체명	대표 자명	소재지	전화번호	조직형태		종업 원수	지정품목	조사담당자	접 수 일 자												비 고			
							법인	개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11	01	6117	(주) 동양양회판매	이재웅	중구동광동 3가 11	22-3966		○	7	세멘트																	
	02	6112	(주) 삼화고무 중구직매소	김영규	" " 1가 4	23-2237	○		6	고무신, 장화 및 우화 운동화																	
	03	6117	한국세멘트상사	김종규	" " 3가 3	22-1661		○	5	세멘트																	
	04	6117	대성상사(주)	정순지	" " 3가 30	23-0366		○	6	"																	
	05	6118	(주) 동신사	이태철	" " 1가 5	22-1333		○	5	"																	
	06	6112	대일직물상사	장만건	" 신장동 3가 23	22-7845		○	5	면직물																	
	07	6114	조광페인트	강용찬	" 남포동 1가 17	22-4402		○	6	페인트																	
112	01	6117	극동유리상회	이상보	동구범일동 831	68-3351		○	12	판유리																	
	02	6112	동양고무(주) 부산직매소	현승훈	" " 830	68-1884	○		10	고무신, 장화, 운동화																	
	03	6112	부산고무상사	양석환	" " 380	68-2426		○	13	고무신, 장화, 운동화																	
	04	6117	동명합판 범일직매점	이진문	" " 834	68-0933		○	8	합판																	
	05	6114	동화약품 부산직매장	이윤석	" " 861	68-8419	○		24	의약(서울본사조사)																	
	06	6112	태화고무 범일직매소	박한준	" " 325	68-4775		○	13	고무신, 장화, 운동화																	
	07	6114	(주) 대양산업	정재문	" " 252	68-5561	○		83	등유, 경유, 휘발유																	
	08	6114	(주) 한국가스산업	고광욱	" " 830	69-3131 ₅	○		47	L.P.G																	
	09	6114	(주) 부산석유	김용석	" " 830	69-7985	○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BC유, 윤활유, 액화가스																	

사무소명 부산

조사구 번호	사업체 번호	산업 분류	사업체명	대표 자명	소재지	전화번호	조직형태		종업 원수	지정품목	조사담당자	접수일자												비고	
							법인	개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13	01	6111	(주) 대한종합식품 부산출장소	이종찬	남구우암동 35-1	68-0543	○		16	해산물통조림, 수산물통조림 합판 합판 합판															
	02	6117	동명목재대연직매소	이강수	" 대연동 174	68-2340		○	6																
	03	6117	삼진목재상사	이수홍	" " 175-2	66-2726		○	7																
	04	6117	대연목재상사	김성경	" " 136-10	66-2098		○	16																
114	01	6112	(주) 남양나이론	김재식	서구동대신동 1-334	43-0072	○		26	화섬사양말															
	02	6117	진일목재	조우일	" 괴정동 485-1	29-7733		○	16	각재, 판재, 합판															
	03	6114	신화약품	전만택	" 초장동 1가 28	23-4054		○	66	의약품															

사무소명 부산

조사구 번호	사업체 번호	사업 산류	사업체명	대표 자명	소재지	전화번호	조직형태		종업 원수	지정품목	조사담당자	접수일자												비고				
							법인	개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15	01	6114	애경유지공업(주) 부산대리점	박종수	동래구회동동 153-12	54-4651 ~2	○		21	화장비누, 세탁비누																		
116	01	6118	해덕철강(주)	황인환	진구부전동 257-5	65-0113~4	○		22	강판																		
	02	6114	대영상회	권영중	" " 575	69-6013		○	8	세탁비누, 화장비누 치약, 치분																		
	03	6111	제일제당공업(주)	경주현	" " 537-9	66-5121	○		32	설탕, 밀가루																		
	04	6118	대영파이프상사	박태일	" " 522	66-6470		○	10	강판																		
	05	6114	부일석유(주)	황영호	" " 140	89-9555	○		16	휘발유, 경유, 등유, 운환유																		
	06	6117	명신전재사	유택규	" " 341-57	89-4212		○	13	합판																		
	07	6117	로타리유리	김형길	" " 262	89-4657		○	7	관유리																		
	08	6114	제일상회	이상기	" " 346	89-3431		○	8	화장비누, 세탁비누																		
	09	6116	드레스미싱 부산총판	이동윤	" " 159-3	67-4200		○	5	재봉틀																		
117	01	6114	광신석유(주)	최찰	동구초량 5동 1162	45-4805	○		108	중유, BC유, 운환유, 액화가스																		
	02	6114	삼성제약공업(주) 부산출장소	유본준	" " 1154	45-4171	○		32	의약품																		

경 기 통 계 사 무 소

사무소명 경 기

조사구 번호	사업체 번호	산업 분류	사업체명	대표 자명	소재지	전화번호	조직형태		종업 원수	지정품목	조사담당자	접수일자												비고		
							법인	개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1	01	6111	대한제분성남출장소	김기연	성남시태평동 3432	2-1031	○		3	밀가루	송영남															
202	01	6111	대한제분의정부출장소	이의열	의정부시의정부 1동	2-3442	○		3	밀가루	김상환															
203	01	6112	(주)삼화고무수원 직매소	김영주	수원시팔달로 2가 42-10	5-7121	○		6	고무신, 운동화 고무장화 및 우화																
	02	6112	국제고무상사	이균형	" " 1가 10-3	5-6231		○	10	고무신, 운동화 고무장화 및 우화																
	03	6117	공영물산(주)	신현태	" 영동 35	5-6281	○		4	시멘트																
	04	6113	고원상회	고운원	" 영동 8-240	5-7995		○	9	진전지																
	05	6114	보건약국	김병순	" 팔달로 3가 28	5-7695		○	34	양 약																
	06	6114	제일페인트	이워섭	" 팔달로 3가 30-4	5-6886		○	4	페인트																
	07	6114	인영약품(주)	김인영	" 매교동 77-71	2-7811	○		38	양 약																
	08	6119	한국타이어수원대리점	남창우	" 북수동 127	5-3772		○	7	자동차타이어																

사무소명 경 기

조사구 번호	사업체 번호	산업 분류	사업체명	대표 자명	소재지	전화번호	조직형태		종업 원수	지정품목	조사담당자	접 수 일 자												비 고			
							법인	개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4	01	6117	광신유리상사	김영화	평택군평택읍평택리 64-15	2-2556		○	5	판유리																	
	02	6117	(주)평택시멘트	김유창	평택군평택읍평택리 185	2-3957	○		6	시멘트																	
205	01	6114	세일석유(주) 부곡저유소	주광조	시흥군의왕읍삼리 428-2	부곡 150-1		○	17	윤활유																	
206	01	6114	건설화학공업(주)	황학구	시흥군포읍당정리 284	안양 2-4341		○	147	페인트																	
207	01	6111	이천상사(주)	손승역	이천군이천읍창전리 370	2050		○	15	설탕, 소맥분																	

인 천 통 계 사 무 소

강 원 통 계 사 무 소

사무소명 강 원

조사구 번호	사업체 번호	산업 분류	사업체명	대표 자명	소재지	전화번호	조직형태		종업 원수	지정품목	조사담당자	접수일자												비고					
							법인	개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303	06	6117	강릉유리점	황의조	강릉시임당동 74	2-8822		○	8	판유리																			
	07	6113	전우사	김진남	" 금학동 62-4	2-2952		○	3	전전지																			
	08	6114	안국상사강릉출장소	안상인	" 교동 149-2	2-3287	○		5	운활유																			
	09	6114	서린약품	성기영	" 옥천동 284-7	2-1133~7		○	29	의약품, 살충제																			
304	01	6111	해도사	오약백	동해시목호동 95	2489		○	7	밀가루																			
	02	6114	한국화약(주) 목호영업소	이병홍	동해시망상동산 24	2898 2897	○		10	다이나마이트 초안폭약																			
305	01	6114	한국화약(주) 황지영업소	엄기희	삼척군황지읍황지리 235	2410	○		9	다이나마이트																			

사주소명	강원
------	----

조사구 번호	사업체 번호	산업 분류	사업체명	대표 자명	소재지	전화번호	조직형태		종업 원수	지정품목	조사담당자	접수일자												비고			
							법인	개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306	01	6114	홍국상사(주)	손진관	영월군영월읍덕포리	영월2738	○		5	휘발유, 경유 방카C유, 등유 설탕																	
	02	6111	영월주유소 미원상사	민완식	" " 영흥리 948	2425	○		9																		
307	01	6111	홍익사	이달현	홍천군홍천읍신장대 리 10-49	2439	○		3	밀가루																	

총 부 통 계 사 무 소

사무소명 : 8 북

조사구 번호	사업체 번호	산업 분류	사업체명	대표 자명	소재지	전화번호	조직형태		종업 원수	지정품목	조사담당자	집수일자												비고					
							법인	개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402	01	6114	동원석유 충주영업소	김산영	충주시 달천동 29-2	3059	○		5	휘발유, 경유, B.C 유, 등유, 중유																			
	02	6114	충북석유 "	김준철	" " 56-1	3067	○		6	휘발유, 경유, 등유 B.C유																			
	03	6117	삼양상회	송복영	" 성서동 202	4191		○	4	아연도철관, 시멘트																			
	04	6114	경동약품	최근명	" 충의동 114-10	3614		○	12	의약품																			
	05	6111	럭키상사	이승철	" " 75	3260		○	4	밀가루																			
	06	6112	충주합동고무상사	김운학	" 충인동 10	6280 4372		○	9	고무신, 고무장화 및 우화, 운동화																			
	07	6114	충주농약사	방영석	" 역전동 645	2467		○	5	살충제																			
	08	6113	달성상회	서병삼	" 충인동 82	3416		○	3	건전지																			
	09	6111	봉아제분충주출장소	김상복	" 봉방동 36-7	3830		○	5	밀가루																			
403	01	6114	대성석유	박기서	제천시 명동 199	2158 2041		○	24	휘발유, 경유, B.C 유, 등유																			
	02	6114	한국화약제천영업소 (주)	홍용기	" " 20	2044		○	7	다이아마이트																			
	03	6117	서일건설(주)	임대현	" " 중앙로 1가 45	2009		○	8	시멘트, 판유리																			
	04	6114	안국상사제천출장소	안상인	" " 중앙로 2가 151	3035		○	6	윤활유																			

총 남 통 계 사 부 소

사무소명 | 충 남

조사구 번호	사업체 번호	산업 분류	사업체명	대표 자명	소재지	전화번호	조직형태		종업 원수	지정품목	조사담당자	접수일자												비고				
							법인	개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501	01	6114	한발약품상사	송인명	대전시 중구선화동 36	3-3000		○	22	의약품																		
	02	6114	세방석유대전 영업소	이영수	" " " 135-2	2-4131	○		28	휘발유, 석유, 경유 C유																		
	03	6111	제일제당 대전 판매부	경주현	" " 은행동 104-302	3-4423	○		25	설탕, 밀가루																		
	04	6114	충남광유합자회사	박광빈	" " " 104	2-0502	○		12	휘발유, 등유, 경유 방카C유, 윤활유																		
	05	6114	한일약품(주) 대전영업소	우대규	" " " 170-1	2-4135	○		29	의약품																		
	06	6114	안국상사대전영업소	안상인	" " 용두동 120-1	2-9870	○		20	윤활유																		
	07	6114	동아제약(주) 대전지점	이중원	" " " 146-8	6-6001	○		44	의약품																		
502	01	6114	대신가스공업(주)	강용원	대전시 중구오류동 214-2	44-2992	○		10	액화석유가스																		
	02	6114	일신약업사	차덕준	" 동구중동 23	2-1948	○		10	의약품																		
	03	6112	왕자고무상사	임차웅	" " " 17	2-1251	○		15	고무신, 운동화, 장화 및 우화																		
	04	6112	동양고무상사	김선립	" " " 28-1	2-3289	○		13	"																		
	05	6114	평화유지공업(주) 대전직매장	김만홍	" " " 10	2-0305	○		6	세탁비누																		
	06	6119	세대지업사	윤명충	" " " 9	6-8143	○		7	신문용지, 백상지																		
	07	6117	한국건재상사	이은표	" " " 8-16	6-7355	○		14	합판																		
	08	6111	대한상사	오영환	" " " 46-1	2-7097	○		6	설탕, 소맥분																		
	09	6113	평남전업사	최선수	" " " 93-2	2-0759	○		4	건전지																		

사무소명 충 남

조사구 번호	사업체 번호	산업 분류	사업체명	대표 자명	소재지	전화번호	조직형태		종업 원수	지정품목	조사담당자	접수일자												비고			
							법인	개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504	01	6117	(합)충남유리상사	박재상	대전시 중구대흥동	2-0217	○		9	판유리																	
	02	6114	한발석유(주)	권중환	" " "	2-5440	○		15	휘발유, 경유, 방C유, 등유																	
	03	6117	태영시멘트상사	권태영	" " "	2-9839		○	7	시멘트																	
	04	6114	경동석유(주)	최두석	" " "	2-2989	○		36	휘발유, 등유, 경유 윤활유																	
	05	6119	극동타이어상사	한희동	" " "	2-0244		○	10	자동차용타이어																	
	06	6111	대한제분(주)	장성환	" " "	2-4031	○		3	밀가루																	
	07	6114	대전출장소 대전약품상사	신의순	" 동구대동	2-1358		○	26	의약품																	
	08	6114	동화약품대전출장소	김홍기	" " "	2-3001	○		34	"																	
	09	6112	(주)삼화대전직매소	박두봉	" " 정동	2-6681	○		6	고무신, 운동화, 장화 및 우화																	
	10	6111	대한종합식품(주) 대전영업소	이종찬	" " "	2-7843	○		13	축산물통조림, 물고기 및 해산물통조림																	
	11	6112	제일고무상사	강완기	" " "	2-6845		○	7	고무신, 운동화, 장화 및 우화																	
	12	6114	대한석유공사 대전저유소	김복구	대덕군 동면신상리	6-8663	○		20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방카C유, 윤활유																	
	13	6114	영진약품(주) 대전영업소	김성기	대전시가양동	72-2131	○		35	의약품																	

사무소명	충 남
------	-----

조사구 번호	사업체 번호	산업 분류	사업체명	대표 자명	소재지	전화번호	조직형태		종업 원수	지정품목	조사담당자	접수일자												비고				
							법인	개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505	01	6119	명창지업사	정명철	대전시 동구인동 32-19	2-0388		○	11	신문용지, 백상지, 아트지																		
	02	6117	한국합판(주) 대전대리점	김호길	" "	2-7437		○	4	각재, 판재																		
	03	6117	(주)금강대전지점	정상영	" "	2-2319	○		12	석면 스페트																		
	04	6114	신진약품상사	이춘자	" "	2-6675		○	16	의약품																		
	05	6118	천광상사	정옥진	" "	3-7398		○	6	시멘트, 스페트, 강관, 아연도철관																		
	06	6118	천광철강(주)	정규동	" "	2-6382	○		8	강관, 아연도철관																		
506	01	6114	충도까스(주)	민현식	대전시 동구삼성동 343-8	72-5225	○		7	액화 석유가스																		
	02	6114	대웅제약(주) 대전사무소	윤영환	" "	72-5633	○		16	의약품																		
	03	6119	삼양타이어 대전판매(주)	홍민언	" "	72-1471	○		13	자동차용타이어																		
507																												

사무소명 | 충남

조사구 번호	사업체 번호	산업 분류	사업체명	대표 자명	소재지	전화번호	조직형태		종업 원수	지정품목	조사담당자	접수일자												비고					
							법인	개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508	01	6117	삼창목재상사	장규섭	대전시 동구오정동 270-1	72-0291		○	8	각재, 합판																			
509	01	6112	삼화고무천안대리점	김영주	천안시 대흥동 249	2-3788	○		6	고무신, 운동화, 장화 및 우화																			
	02	6114	한국화약천안영업소	이해룡	" " 62-8	2-3500	○		5	다이나마이트, 초안 폭약																			
	03	6112	태화고무천안대리점	이오범	" 사직동 56	2-3320		○	7	고무신, 운동화, 장화 및 우화																			
	04	6114	범한농약상사	전지명	" 대흥동 20-4	2-2104		○	6	살충제																			
	05	6112	경남고무상회	이기성	" 영성동 90	2-2451		○	8	고무신, 운동화, 장화 및 우화																			
	06	6117	동광유리상사	권처신	" 구성동 314	2-3661		○	10	판유리																			
510	01	6112	신일고무상사	방효홍	공주군공주읍산성동 182	2849		○		고무신, 운동화, 장화 및 우화																			

사무소명 흥 남

조사구 번호	사업체 번호	산업 분류	사업체명	대표 자명	소재지	전화번호	조직형태		종업 원수	지정품목	조사담당자	접수일자												비고		
							법인	개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511	01	6112	예산누비상회	양재만	예산군예산읍예산리 495	242		○	8	모포																
512	01	6114	우영석유(주) 홍성지점	박영화	홍성군홍성읍고암리 446-1	2340		○	15	휘발유, 경유, 등유, 방카C유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방카C유																
	02	6114	부동석유주식회사	노정우	홍성군광천읍광천리 185-22	92		○	25																	
513	03	6114	대동상회	신일수	보령군대천읍대천리 197	2223		○	3	세탁비누, 화장비누																

전 부 통 계 사 무 소

사무소명	전 북
------	-----

조사구 번호	사업체 번호	산업 분류	사 업 체 명	대표 자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조직형태		종업 원수	지 정 품 목	조사담당자	접 수 일 자						비 고
							법인	개인										
607	01	6114	주식회사 남양석유 남원영업소	안성호	남원군남원읍하정리	2756	○		9	각종유류	장 해 규							
	02	6117		동양건설	하의현	" " 동중리	2419		○	6	시멘트	"						
	03	6112	한양상회	조중형	" " 금리	2157		○	5	밀가루	"							
	04	6112	국제고부	차정훈	" " 쌍교리	2736		○	7	고무신, 운동화	"							
	05	6112	태화고부	송남수	" " 금리	4007		○	8	고부장화 및 우화	"							
	06	6114	대풍농원	김만봉	" " 금리	2055		○	3	살충제	"							

전 남 통 계 사 무 소

사무소명 전 남

조사구 번호	사업체 번호	산업 분류	사업체명	대표 자명	소재지	전화번호	조직형태		종업 원수	지정품목	조사담당자	접수일자												비고		
							법인	개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701	01	6119	삼양타이어호남판매 주식회사	이중현	광주시 동구충장로 5 가 18	33-5078	○		18	자동차용타이어, 운 활유	김정식															
	02	6113	호남밭데리	전진영	" " 68	33-5369		○	5	축전지	"															
	03	6112	남영나이론충장직매 점	조창호	" " 9	33-8560	○		13	화섬사양말	"															
	04	6112	송월타올	이일수	" " 86	33-4631		○	5	타 올	"															
	05	6112	태화상회	정길현	" " 92-3	33-3356		○	7	타올, 화섬사양말	"															
	06	6112	오성상회	장광순	" " 95-2	33-0893		○	11	화섬사양말	"															
	07	6118	우일파이프상사	강팔남	" 수계동 105-1	34-2455		○	5	강 관	"															
	08	6112	삼창사	김인효	" " 5-14	33-7915		○	7	아크리릭사	"															
	09	6112	한일상사	최봉호	" 충장로 5가 22- 7	33-7788		○	5	모 포	"															
	10	6114	동화가스	이봉준	" " 1가 8	2-9525		○	14	액화석유가스	"															
702	01	6112	동양고무광주직매소	박순배	광주시 동구불로동 38-93	33-7789		○	7	고무신, 운동화, 고 무장화 및 우화	서영훈															
	02	6117	우진상사	김희곤	" " 178	33-7771		○	3	시멘트	"															
	03	6112	태화고무광주직매소	양복귀	" 서구구동 4	8-3221		○	7	고무신, 운동화, 장 화 및 우화	"															
	04	6117	상우상사합자회사	이재국	" 동구금남로 4가	34-2331		○	4	시멘트	"															
	05	6111	제일제당공업주식회 사대전판매부광주판 매과	정주현	" " 1가 1	2-0460		○	15	설탕, 밀가루	"															

사무소명 전 남

조사구 번호	사업체 번호	산업 분류	사업체명	대표 자명	소재지	전화번호	조직형태		종업 원수	지정품목	조사담당자	접수일자												비고			
							법인	개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703	01	6111	동협중앙회전라남도 지부	김만희	광주시 동구대의동 58	55-4106	○		8	설탕, 화장품, 세 탁비누, 연치약및 치분	박신욱																
	02	6111	대한종합식품광주영 업소	원종환	" " 81-5	2-2418	○		12	물고기 및 해산물 통조림	"																
704	01	6114	안국상사	안상인	광주시 북구 북동 109-3	56-7211	○		16	윤활유	남청현																
	02	6114	성전의약품	김중기	" " 유동129-15	56-6530	○		30	의약품	"																
	03	6119	한국타이어광주직매 점	장선곤	" " 북동 301	33-9369	○		3	자동차용타이어	"																
	04	6112	삼화고무광주직매소	김영주	" " 북동 1-9	34-5528	○		6	고무신, 운동화, 고 무장화 및 우화	"																

사무소명 전 남

조사구 번호	사업체 번호	산업 분류	사업체명	대표 자명	소재지	전화번호	조직상태		종업 원수	지정품목	조사담당자	접수일자												비고		
							법인	개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705	01	6114	대창석유주식회사	조광표	광주시서구월산동 55-7	33-5167	○		34	휘발유, 경유, 중유, 등유	박용태															
	02	6117	한국상사	황학표	" " 1동 9	33-3422		○	4	시멘트, 슬레이트	"															
	03	6114	농광석유주식회사	주종석	" " 75	33-7111		○	17	유류	"															
706	01	6112	담양고무신상회	국석섭	광주시동구계림동 386	2-1779		○	15	고무신, 운동화, 고 무장화 및 우화	김장욱															
	02	6114	삼성제약광주지점	전규방	" " 505-953	55-9638 9594		○	20	의약품	"															
	03	6114	유한양행	조권순	" " 동명동 175-5	7-0147		○	34	의약품	"															
707	01	6114	백제약품	김기운	광주시동구대인동 316-16	2-7671		○	73	의약품	문장원															
	02	6117	합동건재사	김인호	" " 182	2-7087		○	6	합판	"															
	03	6114	남일건재사	박길수	" " 180	2-6361		○	4	페인트	"															
	04	6117	광일건재사	정재용	" " 49-3	33-1000		○	7	합판, 페인트	"															
	05	6114	대한화공	진영태	" " 79	34-1545		○	5	황산	"															
	06	6119	삼호판매	박재범	" " 32-21	34-6151		○	12	자동차용타이어	"															

사무소명 전 남

조사구 번호	사업체 번호	산업 분류	사업체명	대표 자명	소재지	전화번호	조직형태		종업 원수	지정품목	조사담당자	접수일자												비고	
							법인	개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707	07	6118	부산파이프	김상우	광주시 동구대인동 46	34-1900		○	10	강관	문장원														
	08	6114	대성약품	최기영	" " 금남로5가 91	33-5181-7	○		49	의약품	"														
	09	6111	한미상사	백유인	" " 19	33-3102	○		22	설탕, 밀가루	"														
	10	6114	농화석유	신태호	" " 153	33-9031-4	○		94	휘발유, 경유, 중유 박카C유, 등유	"														
709	01	6114	남선가스합자회사	김태용	광주시 동구용산동297	2-0702	○		11	LPG	이한규														
710	01	6117	대성합판	정병기	광주시 서구신안동6-2	55-1187	○		9	합판	김귀동														
	02	6117	금강스페트	홍승로	" " 4-1	55-1507		○	14	석면슬레이트	"														
	03	6119	동신타이어	김진홍	" " 109-3	55-1065	○		7	자동차용타이어	"														

사무소명 전 남

조사구 번호	사업체 번호	산업 분류	사업체명	대표 자명	소재지	전화번호	조직형태		종업 원수	지정품목	조사담당자	접수일자												비고		
							법인	개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712	01	6111	만국상사	박옥신	광주시 북구 중흥동	55-5911		○	20	간장	송문강															
	02	6117	전남판유리상사	김정희	" " 675-1	55-2362	○		10	판유리	"															
	03	6117	한국목제상사	최세운	" " 648-7			○	8	각재, 판재, 합판	"															
	04	6119	한국타이어	최용진	" " 700-8	55-2124		○	9	자동차용타이어	"															
	05	6114	동화약품	김병진	" " 664-17	55-1271		○	17	의약품	"															
	06	6117	한국스레트	박인규	" " 708-3	55-0065		○	22	석면슬레이트, 페인 트	"															
	07	6114	명화유지	김만근	" " 690-5	55-1028		○	4	화장비누, 세탁비누	"															
	08	6113	건전지센타	나건조	" 동향동 595-8	55-2862		○	7	건전지	"															
713	01	6119	중앙지물	장갑상	목포시대안동 5	2-0342		○	7	신문용지, 백상지, 아트지	이상철															
	02	6117	태평상사	김재정	" 삼학동 2동 2	2-1777		○	11	각재, 판재, 합판, 시멘트, 석면슬레이트	"															
	03	6112	서울이불	김창용	" 죽동 4	2-4702		○	7	모포	"															

사무소명 전 남

조사구 번호	사업체 번호	산업 분류	사업체명	대표 자명	소재지	전화번호	조직형태		종업 원수	지정품목	조사담당자	접수일자												비고	
							법인	개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714	01	6117	백사장전재	김성대	목포시영해동 2가 2	2-4957		○	3	합판	배춘석														
	02	6112	삼화고무	김영주	" 보광동 2가 7	2-1556	○		5	고무신, 운동화, 고무장갑 및 우화	"														
	03	6117	동양물산주식회사	조선희	" 동경동 1-160	2-3688	○		7	시멘트, 밀가루	"														
	04	6118	태천상회	정태기	" 무안군 11	2-0152		○	7	프라스틱파이프	"														
	05	6117	한성상사	조강기	" 보광동 2가 3-7	2-2706		○	9	시멘트, 석면, 슬레이트, 아연도철판	"														
	06	6112	만월고무상회	서정기	" 행복동 1가 2	2-0185		○	2	고무신, 운동화, 고무장갑 및 우화	"														
	07	6114	대창석유	서기중	" 해안동 3-8	2-3202		○	12	휘발유, 경유, 등유	"														
	08	6117	동화상사	양계수	" 보광동 1가 3-7	2-0485		○	11	방카 C유, 중유	"														
	09	6117	목포관유리조합	최창희	" 호남동 1-637	2-2375		○	9	시멘트, 석면슬레이트, 밀가루	"														
	10	6114	백재약국	김기운	" 남교동 105	2-5181		○	53	의약품	"														
715	01	6114	동화석유(주)목포지점	박창만	목포시용당동 1016	5-1955		○	19	휘발유, 경유, 중유 방카 C유, 등유, 윤활유	박병일														
716	01	6114	천일약국	유치현	여수시중앙동 34	2-2360		○	17	의약품	윤승철														

사무소명 전 남

조사구 번호	사업체 번호	산업 분류	사업체명	대표 자명	소재지	전화번호	조직형태		종업 원수	지정품목	조사담당자	접수일자												비고		
							법인	개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717	01	6117	여수전재주식회사	김종길	여수시종화동 611	2-8153	○		14	시멘트	김성환															
	02	6112	삼화고무	오승언	" 교동 591	2-3597	○		5	고무신, 운동화, 고무장화 및 우화	"															
	03	6117	동명합판	김종석	" " 286-9	2-2743		○	5	합판	"															
	04	6114	백화상회	김태주	" " 506	2-2697		○	6	치약, 타올	"															
718	01	6117	신진상사	양행열	순천시남내동 8-2	2-3059		○	3	프라스틱파이프 및 관	윤상울															
719	01	6118	삼흥철강	전창진	순천시장천동 42	2-2916		○	4	아연도철판	전영태															
	02	6114	동화석유순천지점	신병우	순천시덕암동188-20	2-3849		○	22	휘발유, 경유, 방카 C유, 중유, 등유	"															

사무소명 전 남

조사구 번호	사업체 번호	산업 분류	사업체명	대표 자명	소재지	전화번호	조직형태		종업 원수	지정품목	조사담당자	접수일자												비고		
							법인	개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723	01	6114	동화석유	손창순	강진군강진읍평동 230-2	309	○		16	휘발유, 경유, 등유	박현수															
	02	6114	대창석유	오세천	" " 성동리 217	325	○		13	" "	"															

사무소명 제주

조사구 번호	사업체 번호	산업 분류	사업체명	대표 자명	소재지	전화번호	조직형태		종업 원수	지정품목	조사담당자	접수일자												비고	
							법인	개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X01	01	6112	(주)삼화제주직매소	김영주	제주시전입동 1430-10	2-3677	○		5	고무신, 운동화, 고무장갑 및 우화	강춘관														
	02	6114	법포신발 삼화석유	홍동식	" 1도 2동 1146-18	2-4348 2207		○	29	휘발유, 경유, 중유	"														
	03	6114	삼남석유	장시영	" 2도 1동 1359	2-3873		○	23	휘발유, 경유, 등유	"														
	04	6117	대흥건설사	김연상	" 1도 2동 1197	2-2636 3877		○	9	방카C유 시멘트, 판유리	"														
	05	6118	중앙파이프상사	김한규	" " 1동 1298	2-4773		○	4	강관	"														
	06	6113	금성제주코너	김시자	" " " 145	2-5896		○	9	전화기, 건전지	"														
	07	6113	금성제주센타	고두천	" 3도 1동 77	2-2620		○	9	" "	"														
	08	6119	한국타이어	이창호	" 2도 2동 1256-12	2-3434		○	5	자동차용타이어	"														
	09	6117	국일건설사	김원하	" " 1동 1248-4	2-3038		○	6	각재, 판재	"														
	10	6114	조일약국	김기준	" 1도 1동 147	3-0111		○	36	의약품	"														
X02	01	6118	제주철강상사	신명식	제주시전입동 1310-14	2-4877		○	3	강관	이기선														
	02	6117	홍아건설사	김희상	" 1도 2동 615	2-5095		○	5	시멘트	"														

경 북 통 계 사 무 소

사무소명	경 북
------	-----

조사구 번호	사업체 번호	산업 분류	사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조직형태		종업 원수	지 점 품 목	조사담당자	접 수 일 자												비 고			
							법인	개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801	21	6114	평화유지대구직매장	이한수	대구시 중구인교동 190	23-5235 22-2135	○		8	세탁비누, 화장비누	배민규																
	22	6112	대일고무상사	최남규	" " 대신동 106	22-8735		○	12	고무신, 운동화 고무장화 및 우화	"																
	23	6114	동산약국	하병제	" " " 103	22-3675		○	16	의약품	"																
	24	6112	신한상사	이덕교	" " " 115-3	22-2583		○		타올	"																
	25	6112	전아상사	김석현	" " " 115	23-6011		○		모포	"																
	26	6111	제일제당대구판매소	김인규	" " " 225	44-2738		○		설탕, 밀가루	"																
802	01	6112	동양고무직매소	현광세	대구시 중구시장북로 19-2	22-0985	○		11	고무신, 운동화 고무장화 및 우화	최종걸																
	02	6112	한일고무상회	서태교	" " " 1-11	22-1836		○	5	"	"																
	03	6119	한국타이어대구대리점	김봉섭	" " " 1-11	22-8035 9955		○	7	자동차용타이어	"																
	04	6112	삼화고무서대구직매소	김영주	" " 인교동 243-1	23-2804		○		고무신, 운동화 고무장화 및 우화	"																
	05	6111	대한종합식품(주) 대구직매점	이종찬	" 북구칠성동2가 302-105	46-2881		○	12	축산물통조림, 물고기 및 해산물통조림	"																
	06	6114	한일약품대구영업소	우대규	" 수성구범어동 3가2-7	73-3442		○	18	의약품	"																
	07	6111	성진물산(주)	전순식	" 중구수창동 35	22-9012		○	6	소맥분, 설탕	"																
	08	6114	의약품판매대행사	윤병걸	" " 봉산동 34-9	45-4770		○	11	의약품	"																
	09	6112	삼화고무동대구직매점	김영주	" " " 27	45-3758 4051		○	6	고구신, 운동화 고무장화 및 우화	"																

사무소명	성 북
------	-----

조사구 번호	사업체 번호	산업 분류	사업체명	대표 자명	소재지	전화번호	조직형태		종업 원수	지정품목	조사담당자	접수일자												비고	
							법인	개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804	01	6114	동아제약대구지점	심승일	대구시동구신천동 5구 295-8	72-7511		○	60	의약품	조영환														
	02	6114	동화약품공업(주)	김홍기	" " 4구 358	72-4376	○		23	의약품	"														
805	01	6114	대한석유공사 대구저유소	이병직	대구시동구검사동 908-2	92-3891 92-1734	○		53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방카C유	오광훈														
	02	6114	경북가스	장인호	" " 효목동 646	72-3343		○	16	가스	"														
806	01	6111	농협생활물자 대구사무소	정기오	대구시 북구대현동 332-3	92-4401	○		9	설량	김정수														

사무소명 경 북

조사구 번호	사업체 번호	산업 분류	사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조직형태		종업 원수	지 정 품 목	조사담당자	접 수 일 자												비 고			
							법인	개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807	01	6117	삼양목재	정대형	대구시중구남산동 693-8	45-5058		○	9	각재, 합판	권홍준																
808	01	6119	금호타이어 영남판매(주)	배영섭	대구시북구원대동 3가 76-1	32-8701 ~4		○	15	자동차타이어	김완석																
809	01	6117	신광목재상사	정원용	경북경주시황오동 19-2	2-3237		○	8	각재, 판재, 합판	최원대																
810	01	6112	(주)삼화고무포항직 매장	김영주	경북포항시죽도동 147-6	2-4070		○	6	고무신, 운동화 고무장화 및 우화	유연창																
	02	6114	한일석유포항지점	김영석	" " 항구동 97-9	2-3110		○	17	휘발유, 경유, 등유 방카C유	"																
	03	6114	경북광유	서진구	" " "	2-2361		○	35	"	"																
	04	6111	(주)동도상사	이상무	" " 남빈동 989-73	2-2756		○	19	밀가루, 설탕, 비누 통조림	"																

사무소명	경 북
------	-----

조사구 번호	사업체 번호	산업 분류	사업체명	대표 자명	소재지	전화번호	조직형태		종업 원수	지정품목	조사담당자	접 수 일 자												비 고		
							법인	개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810	05	6117	태창목재	박효철	경북포항시죽도 2 동 48-7	2-2177		○	9	각재, 판재, 합판	유연창															
	06	6117	대림목재	정해승	" " "	2-4177		○	12	"	"															
	07	6117	대성목재	박장열	" " "	2-2831		○	6	"	"															
	08	6117	세광유리상사	김영모	" " 남빈동 537	2-2958		○	5	관유리	"															
	09	6114	현대사주	고영관	" " 동빈 2 가 140-5	2-6334	○		33	경유, 증유, B.C유	"															
	10	6114	청십자약국	박노정	" " 삼원동 499-9	2-7278		○	20	의약품	"															
811	01	6114	대성산업안동영업소	김수근	경북안동시용산동 1432	2-2923	○		24	휘발유, 경유, 등유 방카C유	권영태															
	02	6112	범표신발직매점	김영주	" " 서부동 149	2-2527	○		5	고무신, 운동화 고무장화 및 우화	"															
	03	6117	태백전재사	권숙영	" " 안흥동 312-5	2-2702		○	5	시멘트, 합판	"															
	04	6114	대원석유주	백순원	" " 옥야동 297-31	2-3019	○		14	휘발유, 경유, 등유	"															
	05	6117	천리전재사	박재구	" " 천리동 216	2-2777		○	6	시멘트, 합판, 스레이트	"															

사무소명	경 북
------	-----

조사구 번호	사업체 번호	산업 분류	사업체명	대표 자명	소재지	전화번호	조직형태		종업 원수	지정품목	조사담당자	접수일자												비고		
							법인	개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812	01	6114	홍구석유	서주원	경북영주시휴천3동 374-1	2-2492	○		11	휘발유, 경유, 등유 B.C유	박종원															
	02	6112	삼화고무영주직매점	김영주	" " 영주1동 31-10	2-2464	○		5	고무신, 운동화 고무장화 및 우화	"															
	03	6117	대창시멘트	양재봉	" " 하망3동 344-18	2-2744		○	4	시멘트	"															
	04	6111	합동상사	김옥순	" " 하망3동 321	2-2565		○	5	밀가루	"															
813	01	6114	경북광유(주) 점촌영업소	이재승	경북문경군점촌읍 37-3	2927		○	13	휘발유, 경유, 등유	김우호															
	02	6114	한국화약Co 점촌영업소	장원배	" " " 27-14	2314		○	9	다이 나이트	"															

마 산 통 계 사 무 소

사무소명 마 산

조사구 번호	사업체 번호	산업 분류	사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조직형태		종업 원수	지 정 품 목	조사담당자	접 수 일 자												비 고			
							법인	개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901	19	6114	남영석유판매(주)	이정석	창원서내동 452-1	2-4131~2	○		50	휘발유, 경유, 등유 방카C유																	
902	01	6114	서울상회	양원철	진해시송학동 40번지	2-2229		○	2	비 누																	
903	01	6114	해동광유(주)	김재민	충무시항남동 147-17	3351	○		20	휘발유, 경유, 중유 등유, 윤활유																	
	02	6114	협동석유(주)	윤병열	" 서호동 177-380	5538	○		13	경유, 중유, 등유, 윤 활유																	
904	01	6112	동양고무진주판매소	김국자	진주시장대동 94의 9	2-4858		○	7	고무신, 운동화, 장화																	
	02	6112	삼화고무진주판매소	정결조	" " 129의 7	2-2921	○		5	고무신, 운동화, 장화																	
	03	6114	진주광유사	오극원	" 상평동 310의 7	3-1951	○		14	휘발유, 경유, 방카 C유, 등유																	

